

N A T I O N A L
H U M A N R I G H T S
C O M M I S S I O N O F T H E
R E P U B L I C O F K O R E A
A N N U A L R E P O R T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연 간 보 고 서

2 0 0 9



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인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역동성이 있습니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정립된 과정이나 지금도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이나 그동안 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국민의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권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진전되고 있으며, 보편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가고 있는, 살아 숨 쉬는 역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온 길도 이런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우리 위원회는 어느 해보다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조직축소로 이어진 것은 큰 시련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없지 않았지만 인권옹호기구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위원회에 부여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이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고, 무엇보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숙명임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은 우리 위원회가 어떤 의미에서 새 출발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변화된 국내외 인권환경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외

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원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6년 처음 수립한 3개년 중기전략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임무와 비전을 감안하여 지향하거나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침과 운영원칙 등 실행체계를 포괄한 것입니다.

연간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정리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어제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되새겨봅니다. 우리 위원회도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냉정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찾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1부 | 총론 15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39

제1절 개요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59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60
4. 인권상황 실태조사 61
5.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65
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74
7. 기타 주요 사업 76

제3절 평가 84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88

1. 인권 상담 89
2. 진정 접수 92
3. 인권순회상담 실시 93

- 4. 면전진정 처리 94
- 5. 안내 및 민원 처리 95
- 제3절 평가 97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99

제1절 개요 9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00

-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100
- 2. 검찰·경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114
-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4
- 4.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39
- 5.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44
- 6. 기타 기관(지자체, 학교 등)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46
- 7.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최 148

제3절 평가 151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53

제1절 개요 15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55

-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55
-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57
-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66
-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169
-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76
-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82



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88
8. 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89
9.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90
10.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95
11.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98
12.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0
13.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3
14.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207
15. 간담회·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217
1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225
제3절 평가	227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231
제1절 개요	23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33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233
2.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241
3. 인권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52
제3절 평가	259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261
제1절 개요	26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62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262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268

-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75
- 제3절 평가 280

제7장 인권사무소 활동 281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281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82
-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285
- 3. 인권교육 286
- 4. 교류협력사업 288
- 5. 홍보 291
- 6. 평가 294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295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96
-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298
- 3. 교육·교류 협력사업 300
- 4. 홍보 305
- 5. 평가 308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309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10
-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312
- 3. 인권교육 312
- 4. 교류협력사업 314
- 5. 홍보 315
- 6.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중점 대상(분야)별 성과 316
- 7. 평가 318



| 3부 | 특별사업 319

제1장 북한인권 개선 321

1. 추진 배경 및 목적 321
2. 주요 추진 경과 322
3. 주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326
4. 평가 327

제2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329

1.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및 필요성 329
2.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 과정 330
3.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 333
4.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336
5. 향후 과제 337

| 부록 | 339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341
2.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345
3. 조직 및 정원 352
4. 예산 353
5. 위원회 활동일지 356
6. 위원회 발간자료 379
7. 보도자료 382
8. 한눈에 보는 2009년 인권위 388

| 표 목차 |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1
[표 2-1-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59
[표 2-1-3]	정보인권에 대한 인지 응답비율	61
[표 2-1-4]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	65
[표 2-2-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현황	88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89
[표 2-2-3]	연도별 침해기관별 상담 사례	90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91
[표 2-2-5]	기타 상담 유형	92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92
[표 2-2-7]	연도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95
[표 2-2-8]	접수 경로별 /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96
[표 2-2-9]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96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01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03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104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56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56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58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권고 현황	159
[표 2-4-5]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217
[표 2-4-6]	2009년 성차별전문위원회 운영실적	225
[표 2-4-7]	2009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운영실적	226
[표 2-4-8]	2009년 고용차별전문위원회 운영실적	227
[표 2-5-1]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과정 현황	235
[표 2-5-2]	인권교육실천 시범연구학교 종합발표대회 참가학교	239



[표 2-5-3]	2009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41
[표 2-5-4]	사이버 인권교육 연도별 현황	243
[표 2-5-5]	2009년 사이버 인권교육 증가율	243
[표 2-5-6]	연도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244
[표 2-5-7]	2009년 방문프로그램 증가율	244
[표 2-5-8]	해외기관, 단체 방문프로그램 현황	244
[표 2-5-9]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245
[표 2-5-10]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현황	245
[표 2-5-11]	다문화 인권교육 현황	246
[표 2-5-12]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교육일정	247
[표 2-5-13]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프로그램	248
[표 2-5-14]	2009년 10대 인권보도	249
[표 2-5-15]	기업인권 교육 일정	250
[표 2-5-16]	노숙인 인권교육 일정	251
[표 2-5-17]	영화 속 인권 들여다보기 시민강좌	252
[표 2-5-18]	국내 극장배급 및 공동체 상영 실적	253
[표 2-5-19]	인권문화 콘텐츠 보급 실적	253
[표 2-5-20]	교육과정 개편 인권문화 콘텐츠 활용 실적	254
[표 2-5-21]	인권교육 및 홍보목적 간접보급 결과	254
[표 2-5-22]	해외 배급 실적	254
[표 2-5-23]	인권논문 및 인권실천 우수사례 수상작	256
[표 2-5-24]	인권에세이 수상작	257
[표 2-6-1]	2009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265
[표 2-6-2]	2009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67
[표 2-6-3]	2009년 <인권> 주요 내용	278
[표 2-7-1]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282
[표 2-7-2]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84

[표 2-7-3] 부산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처리 현황	284
[표 2-7-4] 부산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현황	285
[표 2-7-5] 부산인권사무소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7
[표 2-7-6] 부산인권사무소 주요 내용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7
[표 2-7-7] 부산인권사무소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7
[표 2-7-8] 부산울산경남 시민 인권영상 공모전 수상작	294
[표 2-7-9]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상담 네트워크 개최 현황	296
[표 2-7-10]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97
[표 2-7-11]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298
[표 2-7-12]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건수	299
[표 2-7-13]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건수	300
[표 2-7-14] 광주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진정권 보장 활동	300
[표 2-7-15]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 진행 현황	302
[표 2-7-16] 광주인권사무소 실태조사 현황	305
[표 2-7-17] 광주인권사무소 결혼이주여성 사진전 현황	306
[표 2-7-18]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영상 공모전 수상작	307
[표 2-7-19] 대구인권사무소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310
[표 2-7-20] 대구인권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311

| 그래프 목차 |

[그래프 2-2-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 / 안내 증감 추이	89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102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103
[그래프 3-2-1] 2008년 기준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329
[그래프 3-2-2]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진정접수 현황	330

1부

총론



총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출범 8주년인 2009년 위원회는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 2009년 4월 6일 직제가 축소 개정되어 정원이 44명 감축되었고, 당초 팀제 운영에서 대국대과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업무 조정 및 통합으로 대규모 인사이동과 배치 that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내외의 인권환경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당초 설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진정사건은 전년 대비 5%가 늘었으나 차질 없이 처리하였으며 그중 인용사건이 전년대비 23.9% 증가하여 권리구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위원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09년 대내외 환경과 의미

정부 주도에 의한 조직개편은 국내외 인권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으며 위원회 출범 후 최대 위기 요인이 되었다. 위원회 독립성 논란 및 조직 축소의 고충속에 관련 국가기관들이 인권 업무에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권 시민사회가 제기한 전반적 자유권 후퇴 주장 및 사회권에 대한 우려는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2009년은 어느 해보다 많은 인권 현안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응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역할의 중요성과 과제가 부각되었다. 제4대 위원장이 조직 축소 개편 및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의장국 선출 관련 등의 문제로 중도 사퇴하고 현 제5대 위원장이 취임하여 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도모하였다. 새로 출범한 지도부는 위원회 조직 축소와 위원회의 위상 하락 등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장국 후보 진출을 중도 포기하여 국내의 인권 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유엔 등 국제인권 사회의 국내 인권에 대한 관심과 공유, 자유권 역할의 증대, 사회권 분야 인권 수요 증가 등의 인권 현안과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본연의 역할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적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위원회의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2009년 사업의 구조와 내용

위원회는 2006~2008년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3년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3년간 위원회가 집중해서 수행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외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중기 전략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는 사명 아래 위원회의 기본적 업무 영역의 일반 진정사건 처리 등 상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반사업 외에, 위원회의 사업·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주요 사업을 배치하고 특별사업을 별도로 두어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

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5대 전략목표는 △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아동·노인 인권 향상 △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 다문화 사회의 인권 보장 △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등이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나타내는 성과목표와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특별사업으로는 △ 북한인권 개선 △ 정신장



애인 국가보고서 작성(2008년 계속사업)을 설정하였다.

기본적 업무 영역의 일반사업

인권친화적 정책 기반 강화

2009년은 인권정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경험한 해로서 그동안의 업무 관행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위원회는 인권 관련 법 제정 및 시행과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의 인권 옹호단체, 관련 학자 및 연구자, 이해 당사자, 피해자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활성화, 입법과정 모니터링 강화, 인권 관련 재판 시 의견제출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에 주력하였다.

위원회는 사회권전문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도움을 받았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권고안의 내실화를 위하여 5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회의 심포지엄과 15회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9년 한 해 동안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하여 모두 28건의 개선권고와 의견을 표명하였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009년 인권정책 분야 주요 결정으로는 △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제1항(속칭 미네르바 사건) 관련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 「군인사법」 제 47조의2(속칭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2009년 정책 업무는 외부 의견 조회 요청과 같은 일상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및 세계적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사회

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 HIV 감염인 등의 보건 취약계층, 강제 철거민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수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5만2,000여 건의 진정과 상담, 안내 및 민원 등을 접수 처리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치이다. 이 중 진정이 6,985건, 상담이 18,765건 그리고 안내와 민원이 26,634건에 달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진정은 2008년의 6,309건에 비교해 676건(약 11%)이 증가했고, 상담은 2008년의 16,301건에 비교해 2,464건(약 15.1%)이 증가하였다. 민원·안내의 경우 2008년과 비교해 3,409건(11.3%)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부터 전화번호 문의 등 단순 안내를 집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은 크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되는데 진정의 경우 인권침해가 5,282건으로 76%, 차별이 1,685건으로 약 24%, 기타 18건으로 약 0.3%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인권침해가 차별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인권침해 관련으로 2009년에 처리한 5,107건의 진정사건은 인용 365건, 기각 1,637건, 이송 78건, 각하 2,973건, 조사중지 54건이다. 인용은 2008년의 308건보다 18.5% 크게 증가하였다. 인용사건 중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26조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합의종결은 2008년의 48건 대비 118건으로 약 145% 급증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구금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 진정사건 대비 각 38.3% 및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



어 올해에도 사전 예방적 권리구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인, 외국인, 군, 경찰, 교정 등 총 7개 권역의 관련 시설 총 30개 기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8개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에 대한 시정 보완 기능을 수행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은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학생·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순회상담을 통해 확보된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과 이슈별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상담을 매개로 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형성의 기초를 닦았다. 인권침해 분야의 주요 결정으로는 △ (주)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 중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권고 △ 경찰서 유치장 임산부의 보호조치 미흡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 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신상 노출 관련 학교교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등이 있다.

차별사건의 경우 위원회에서 처리한 1,660건의 진정사건은 권고 78건, 조정 1건, 합의종결 85건, 기각 589건, 이송 9건, 조사중지 18건, 각하 880건이다. 특히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이 대폭 증가하여 711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모집·채용 영역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나이에 의한 차별사건이 전년 대비 125% 증가(63건→142건)하였다. 진정사건의 처리 면에서도 2008년에 비해 22%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합의종결 및 조사 중 해결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의 효과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차별 분야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 고용차별전문위원회, 성차별전문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12회에 걸친 간담회와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9년 차별시정 분야 주

요 결정으로는 △ 남성 가사전업자 신용카드 발급 제한에 대한 시정 권고 △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지급 차별 시정 권고 △ 여고생 임신 사유로 자퇴강요 관련 시정 권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2009년 진정사건 접수는 양적으로 증대했고 그 내용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위원회 조직이 개편 및 축소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정사건의 처리는 6,787건(기타사건 20건 포함)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용사건은 529건으로 전년 427건 대비 23.9% 증가하여 권리구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다만,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 이후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기관 등의 권고 이행 기관과의 상호 소통 강화와 협력·협의 채널 가동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인권교육 확산 및 인권문화 콘텐츠 제작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특성화와 전문화 및 인권교육 실행 기반 구축을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2008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충청북도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구성, 강사 선정, 교육자료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행정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군대 분야 인권교육, 인권정책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력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4개과(인권교육과, 인권정책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와 국방부 인권담당관 및 육·해·공군 인권과로 구성된 '군대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권친화적인 군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교육의 전문성·체계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상설·독립적인 교육 장소를 확보하여 충북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인권교육센터에서 직접 또는 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총 300회 23,672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 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교육은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심화), 장애차별 예방, 성차별예방 등 4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60회 13,5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이 위원회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인권과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자 실시한 방문프로그램에 초·중·고·대학 등의 학교와 경찰, 시민 등 총 109회 3,043명이 참여해,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이외에도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다문화 인권교육, 교원 인권 감수성 향상 직무연수교육, 언론인 인권교육, 기업 인권교육, 영화 속 인권 들여다보기 시민강좌 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교육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위원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하여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을 알리는 데 힘썼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해 문화적인 접근방법으로 개발된 인권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요청에 따른 보급 및 기획 보급을 추진하였다. 특히 검정교과서 개발자료로 위원회 콘텐츠가 활용되어 총 5종 160,056부의 교과서에 채택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위원회는 조직 축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인권단체 및 기관과 교류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의 업무계획 수립과정에서 예년처럼 인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분야별, 영역별로 인권단체와 인권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위원회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132개의 사업을 접수하였고 이 중 장애인, 다문화·난민·이주민, 아동·청소년, 새터민, 비정규직,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 인권단체들의 참여 및 협력사업 선정 비율을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여 지역 인권단체들의 인권활동 확장 및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 및 협력을 위해 위원장 등의 행사참석·축사·면담, 명의 후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교류활동을 벌였다. 또한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이 인권현장을 총 10회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에도 국제인권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국내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권제도(UPR, 유엔인권조약기구 등)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2007년부터 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직을 수임하고 있으며, 2009년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14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서 재선출되어 2012년까지 승인소위 대표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APF 포럼이사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초안발의한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UPR 이행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위원회의 리더십과 정책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역내 공통 현안인 이주자 인권문제를 다룰 공동의 협력 틀을 제안하여, 'APF 이주인권에 관한 실무그룹(APF Working Group on Migration)'이 창설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위원회의 2009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사업(2009 Annual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Officers of NIs)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를 송출하는 아태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태국,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각 1명씩(중견관리자 및 실무자급)을 초청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소개하였다. 초청된 연수 참가자들 간에 자국 인권기구의 조직, 제도, 주요 사업, 인권보호 및 조사 관련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하고 공동의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국 초청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라크 인권부 및 인권업무 종사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한 달간 '이라크인권정책개발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 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의 개념, 역사 등을 개괄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외적 발전 및 기능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시 공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권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2004년과 2007년 각각 APF 의장국, 2007~2009년 ICC 부의장국 수입 등을 통해 국제인권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대시켜왔다. 위원회의 국내외적 인지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설립과정, 역할,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위원회에 방문하는 국제 인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은 위원회의 인권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외국의 법무·외교·복지

분야 공무원단의 방문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 캄보디아 사법 법제개혁위원회 고위급 대표단, 몽골 국회의원단, 영국 외무성 인권담당과장 등이 연구 시찰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선진적 제도 및 진취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만 2009년 위원회 조직 축소 및 국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후보 진출을 중도 포기하여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위원회는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권고, 활동 등에 대해 15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한 기획보도는 인권 현안과 쟁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였다. 우선 방송의 경우 장애인 인권 다큐를 총 16차례에 걸쳐 제작하여 방영(MBC 희망나눔 무지개)되도록 했고, 라디오방송을 통한 주간인권브리핑(1.1.~4.25)이 이루어졌다. 신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년(세계일보 5회), 고용허가제 5년(세계일보 3회), 비주택거주민 실태조사(한국일보 4회) 등의 기획보도를 공동 추진했다. 이와 같은 기획보도는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인권개선의 올바른 길을 열어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격주마다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는 위원회에서 펼친 사업과 인권 현안 등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매체로 국내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3만8,000여 명의 정책고객에게 발송됐다. 아울러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 총 12회의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알렸다. 2009년 발행한 6권의 <인권> 잡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소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된 인권문제, 국내외 인권 현안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 조직 역량 강화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개별 구성원의 업무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직원교육 강화,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인권상담 및 사건조사 등 진정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조사관 학교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위원회 직원의 인권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00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다루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009년 연초부터 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부(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독립성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직제령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정으로 인해 기구가 축소되고 정원이 21% 감축되는 등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 직제 개정으로 인해 위원회가 기존 팀제에서 대국대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통합·분리 및 이에 따른 직원 재배치, 초과인원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이 생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화와 차질 없는 업무수행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 직제령 개정에 따라 규칙, 훈령, 예규 등 위원회 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위원회 성과 제고에 역점을 둔 성과평가시스템의 평가틀을 마련하고 연 1회 하던 성과평가를 2회 실시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역 인권사무소의 합리적 운영

2009년 4월 위원회 직제 개편 시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 조사권이 각 인권사무소에 분장되고 조사관이 증원 배치되어 지역민들의 권리구제 접근성 향상과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역 인권사무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3개 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순회 인권상담, 구금 및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와 더불어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 홍보, 지역기관 및 단체와 협력 활동을 강화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교통공사와 ‘인권신장 및 인권테마역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지하철역 1개소에 ‘인권상설 전시관’을 조성·운영하고, 인권영상공모전,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연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작성된 조례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및 시의원 정책간담회 진행, 인권조례 선행사례 연수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가 제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과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웹 블로그에 ‘인권기자단’들이 생활 주변의 인권 이슈 게재, ‘시민인권영상제작단’의 제작 영상 등록, 아동청소년 인권사진 공모전 개최 등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위원회 5대 전략목표 증점사업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자유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보호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근간으로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필수적 과제이다. 이에 위원회는 ‘자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 정보인권 증진 등의 내용으로 성과목표를 정하였다.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를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 군 교도소, 군 정신과병원, 구금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방문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하여 인권취약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군 정신과 병원을 최초로 조사하여 군대 부적응 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시도와 군의 관심 제고 등으로 군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미네르바 사건) 등 인권 현안에 대해 시의 적절한 대응과 사형제 폐지와 같은 유엔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및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제인권기구 등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관련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 설득 등 후속 조치가 요청된다. 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CCTV 관련 법제현황 실태조사’, ‘개인정보유통 실태조사’,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초안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원회의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 등을 감안할 때 정책 및 기획조사 업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과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아동·노인인권 향상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꾸준히 지적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의 개선과 경쟁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위원회는 ‘아동·노인 인권향상’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 학생인권 개선 △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 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과목표를 정하였다.

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준칙들을 참조하고 전국 초·중·고교의 1%인 120개교의 학칙 샘플에 대한 기획조사, 생

활규정 개선 우수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 '학교인권교육협의회' 협의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학교교육 과정의 인권친화적 교과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서 학생/교사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교과서 인권찾기'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초·중·고교 교과서 안에서 친인권/반인권 사례들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사례들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권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못한 25개 사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삭제토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해 실종아동법 개정안, 친권 및 후견인 규정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의견표명, 아동인권 지표 토론회, 아동급식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위원회의 스포츠 인권사업으로 시민참여형 '스포츠 인권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전문가·시민사회 및 관련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스포츠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YMCA, 성폭력상담소 등)하였다. 특히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스포츠 인권에 관한 흥미롭고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 인권의식이 확산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위원회가 기동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여 조사부서와 정책부서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노인인권 사업을 위해 '노인인권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인권의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이 시도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확대 및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 및 빈곤계층의 증가로 경제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가 절실해짐에 따라 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 빈곤계층 인권보장 △ 비정규직 인권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과목표를 정하였다.

위원회의 2009년 사회권 관련 활동은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를 이유로 사회권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동권, 주거권, 이동권, 건강권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다. 위원회는 '비판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위기와 사회권'을 주제로 '사회권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이 악화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심포지엄에 유엔사회권규약 위원이 참여하는 등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와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위원회는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비주택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출소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강보험 체납세대 접근권 보장 권고, 강제철거 거주민 인권보호 권고, 재개발 세입자 보호 관련 의견 표명, 노숙인 범죄예방 권고, 사내 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다문화 가정의 증가,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다문화 정책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인권친화적인 다

문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위원회는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 다문화 가정의 아동인권 보장 등을 성과목표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원회의 조직 및 인원 축소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성과 도출이 타 전략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위원회는 이주인권PT를 구성·운영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프로세스의 이행 강화를 위해 몽골인권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인권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는 성과가 있었다.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사례 조사와 이주노동자 자녀 출생등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한국인 배우자 면접조사,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토론회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개최, 다문화 사회와 인종차별 공청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주여성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등 법제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을 하는 성과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차별시정 기능은 위원회의 설립 근거이자 중요한 책무로,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다양한 차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 차별금지법 제정 △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개선 △ 장애인 차별 개선 △ 여성인권 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과목표를 정하였다.

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성과목표는 대내외 여건상 모니터링 및 간담회 수준



으로 추진되어 특별한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집·채용에서 고용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책자 발간 등으로 고용차별 금지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한 홍보·상담, 판단 기준 정리 및 조사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법 시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동 법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계획을 차단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 편의제공 판단기준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장애인 교육권 및 웹접근성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인권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국내 첫 조사로서 의의가 있으며 전문가 및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시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상황 파악,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책활동을 통하여 북한인권의 개선·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위원회는 국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책협의를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에 구성된 '북한인권포럼'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 토론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소통의 확대 및 관련 정책의 역량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모색하였다.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의견표명 및 논평으로는 △ 월북자로 분류된 000 사건에 대한 재조사 촉구 의견 표명 △ 개성공단 억류자의 석방 촉구 관련 논평 △ 임진강 수해 관련 논평 등이 있다.

특히 위원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와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인권 영문 홈페이지에 북한인권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주요 관심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2008년 계속사업)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 겪는 자기결정권 박탈, 치료 과정에서 알권리 제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선진국 대비 높은 비자의 및 장기 입원을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신보건·법률·의학 분야 전문가,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 관계자 및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7회), 연구위원회(13회), 토론회(4회), 전문가 간담회(20여 차례)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한 내용은 △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 △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지역사회 중



십의 정신장애인 치료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등이다. 위원회는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책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작성 이후 기자 설명회, 국가보고서 발표회, 부산·광주·대구지역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권고 결정문을 대통령실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홍보 활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다.

평가와 전망

2009년 위원회는 변화된 국내외 인권환경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중기전략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을 수립하여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했다. 그러나 조직 축소 등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도전과 시련을 거치며 위원회에 많은 교훈과 현안과제를 안겨준 한 해였다.

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첫해인 2009년에는 대내외 인권환경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시작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부분도 있다. 또한 위원회 사업활동이 미진하여 '인권가치에 대한 확산 강화 부족', '독립적 인권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부족', '국가기관과의 상호 소통·협력 미흡', '위원회 권고의 불수용에 대한 이행점검·관리 등 권고의 실효성 확보 부족', '인권침해 공권력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미비', 'NAP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 미흡', '이주인권 강화 미흡',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 대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난 8년의 공과에 대

한 종합적인 정리와 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인권기구의 위상 제고와 인권증진'의 전략목표를 향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조약 및 조약기구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으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적 가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인권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기관, 국회 및 정당, 언론기관,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기관과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조사·구제 기능과 함께 교육 및 홍보, 협력사업에 역점을 두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및 조직과 예산의 독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많이 신장되었지만 인권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인권 시민사회의 자유권 분야의 후퇴 주장 및 사회권에 대한 우려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소리라고 하겠다. 또한 위원회의 조직 및 인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확대 시행되어 위원회 업무 영역과 진정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맞추어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노력이 요구된다.

위원회의 존재 기반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권 이슈를 적극 개발하고 업무 수행 시에도 진정인 등의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 인권선진사회의 구현에 노력할 것이다.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제 1 장 인권 관련 법·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제 2 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제 5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제 6 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제 7 장 인권사무소 활동



제 1 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개별 진정사건 조사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를 직접 구제하고 있으나, 관련 법상 위원회의 조사권은 헌법 제10조부터 22조까지의 기본권 침해 사안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하여 인권위가 전혀 개입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제23조)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진정사건의 조사나 직권조사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4조).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등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제29조)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제12조)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5조).

2009년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인권 영역 전반에 대해 법, 정책,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빈곤계층의

인권문제 해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적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여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제출), 사형제, 군부대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사건(『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인권과 스포츠 분야의 인권문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이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추진,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과 북한인권 개선 및 증진 방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스포츠 분야 인권 개선 사업의 3년차를 맞이하여 시민참여형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을 발족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에 기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안) 제정,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스포츠 지도자,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스포츠 분야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정책(National Strategy for Sports and Human Rights) 수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다.

2009년 위원회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국가인권기구에 부여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독자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표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 용	의결 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1	통신비밀 보호법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한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영업의 자유, 국민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위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함	1. 22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법률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 도입하더라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하여야 함	2. 5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검토중
3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 사이버모욕죄도 국회 문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동 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함	2. 5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4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2. 12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불수용
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철우 의원,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일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2. 19	국회의장, 국회정보위원장	검토중
6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에 명시된 질병관리본부장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권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3. 19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불수용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 용	의결 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7	공익근무요원 두 발제 한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공익근무요원의 두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 제한은 가능함	4. 16	병무청장	수용
8	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납북자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23	제주해양경찰서장	수용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에 강제되거되지 않는 사유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함	4. 30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불수용
10	비정규직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5. 21	국회의장	검토중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은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채취 규정 도입 이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문채취 대상 치매노인의 선정 기준 및 적용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4	국회의장	검토중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상수의원안 외 5개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려 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관련 조항, 복면 등의 착용 금지 및 처벌 관련 조항, 통고만에 의한 영상촬영 관련 조항, 소음규제 강화 관련 조항, 형벌 강화 관련 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4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검토중
13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해야 함	6. 8	국토해양부장관	불수용
14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의견표명	AIDS환자의 치료에 푸제온은 필수적인 약품이고 다른 공급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취약한 AIDS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도 부합함	6. 15	특허청장	불수용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 용	의결 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15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서울특별시)에 대한 의견표명	동 대책은 노숙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다 심화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8. 27	서울특별시장	수용
16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함	9. 3	노동부	검토중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에서 권리 측면을 강조하는 규정을 친권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친권자 및 후견인 지정 관련 기간 도과 통보 시스템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하며, 아동인권 존중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견청취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하향하며 직접 의사표명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나 전문가를 통한 아동 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나 후견인 감독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9. 9	법무부	검토중
18	「주재관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령안 제3조의2에서 주재관 업무 수행기간 3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연령의 공무원 경우에도 주재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정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동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 21	외교통상부	수용
19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권고	동 운용기준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새롭게 마련되어야 함	10.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중
20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령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1. 5	행정안전부	일부 수용
21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에 영장주의, 엄격한 검문요건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19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 용	의결 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2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에 정해진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와 기준(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서 "유형별"과 "10만 명 이상"을 삭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됨	11. 19	국회의장	검토중
2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은 공안사범에 대한 정의규정 및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 관련자료를 별도로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하는바 그 표현이 막연하고 중요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과잉제한하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음	11. 26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24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법률안은 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항의 광범위한 위임규정은 CCTV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과, 제7항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방범용 CCTV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과, CCTV의 설치·운영이 보편화되면서 사생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통합관리 시 사후적 관리보다 등록·제거 등과 같은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장치가 필요함	12. 3	국회의장	검토중
25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지침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12.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검토중
26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를 흠결하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해훈의원안과 변재일의원안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 개인소송 저항권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도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 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책 검토가 필요함	12. 24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검토중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27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 중 제1항과 제3항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내용(규정안 제1항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부분과 제3항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12. 24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28	유엔여성차별위원회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1) 법제도와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예산에 대한 기술 미흡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07년도 최종 권고 및 우려에 대한 기술 부족 (3)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비정규직화 및 여성빈곤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제시 부족 (4) 기본적인 성인지 통계 및 취약계층 여성 관련 통계 미흡 (5)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기술 미흡 (6)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에 대한 기술 부족	12. 28	여성부장관	검토중

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의 주요 내용

1) 국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6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 법률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 통고만에 의한 영상촬영 규정, 소음규제 강화 규정, 형벌을 대폭 강화한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11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09년 10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공무원이 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조 제2항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제8조의2 제1항 후단이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3)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12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공안사범이란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2조 제10호 규정과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한다.”는 제5조의3 제1항과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동 조 제2항이,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4) 국회행정안전위원장에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12월 국회행정안전위원장에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가 미비하여 정부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위원 면책특권 관련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5)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현행 비정규직법이 발휘한 긍정적인 효과마저 불식시키고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입법화된 현행 법률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의 연장 이외의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 5월 국회의장에게 노동부가 같은 해 4월 1일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6)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간접고용 형태의 하나인 '사내하도급'이란, 말 그대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즉 수급인)에게 위탁하였으나, 그 작업수행이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데 이러한 사내하도급 방식은 비정규직 관련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사

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그들의 근로조건과 수행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주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 9월 노동부장관에게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들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7)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5월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조회에 따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 등의 지문채취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득이 실종 치매노인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한 지문채취를 인정하더라도 지문채취 대상 치매노인의 기준과 지문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채취 규정의 도입 이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문채취 대상 치매노인의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가 2009년 7월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친권제도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위원



회는 미성년자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들의 의사와 권리도 성년 못지않게 존중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친권자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거소 지정권(제914조)과 '징계권(제915조) 규정을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 의한 직권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후견인 선임 규정은 법원 직권개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보완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 및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기간 도과 통보시스템 등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사 존중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사청취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5세보다 하향 조정하고 직접 의사 전달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친권자에게만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며,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후견인 감독 등 사후관리에 공백이 우려되므로 후견인에 대한 법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원의 후견기능을 높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거나 친족회를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후견 감독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9)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

주거권과 관련된 영역 중에서 인권침해 정도가 특히 심각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강제철거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무리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많은 국가는 이미 부득이하게 강제퇴거를 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강제퇴거와 강제철거에 대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퇴거와 강제철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2008년 후반기부터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부처에 관련 법령과 정책 등을 정비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검토해왔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강제철거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서 강제

철거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이 기본원칙은 △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 공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충분한 사전고지와 사전협상 및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제철거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도록 재개발 관련법을 정비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과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대집행법」을 정비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경찰청장에게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는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체계상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5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로 규정한 조항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시점을 '공람공고일'이 아



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실제 사업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통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후 사업시행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는 공람공고일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라도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공람공고일 이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지만 공고일 당시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당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규정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을 훨씬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존 법원의 판례, 국제규약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11)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 의견표명

위원회는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 거주민 등의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자체 선정한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하여 정보금융대출, 휴대전화 개설, 사업자 등록, 차량 등록 등 주요 신용서비스를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당사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시행된다고 하지만, 신청 시 당사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제한받기를 희망하는 신용서비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주요 서비스사업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서울시 대책에서 제한하기로 하는 신용서비스 이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노숙인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행정기관이 권리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및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노숙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서울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어 2009년 1월 22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법률안 조항에 대하여 첫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제도의 취지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하는 부분에 전기통신 사업자에게만 협조 의무와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이의형량과 명확성, 영장주의에 반하는 등의 위헌성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의무화 부분은 감청 자체가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개인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삭제하여야 하며, 다섯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확인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정 취지에 위배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13)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피해자의 권리 침해 주장에 의한 임시 조치 및 인터넷권리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2009년 2월 5일 국회의장 및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형사처벌 등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친고죄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4)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장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조항은 일반법인 형법보다는 정보통신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맞추어 신설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범죄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2월 19일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불확정 개념은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 감시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송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수집”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범위의 확대 해석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법의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16) 공익근무요원 두발 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병무청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두발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2009년 1월 13일 위원회에 질의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검토 결과 공익근무요원의 두발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복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령에 근거한 일정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며, 복제 규정안 제3조 제5항의 내용이 공익근무요원의 두발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향후 공익근무요원의 두발 제한의 법적 근거인 「병역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병무청장이 ‘용모’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복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17)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되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7년 1월부터 시행해온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2009년 10월 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하여 계속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 역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 중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구금 및 보호시설의 경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술적 조치를 제외한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을 금지하고, 넷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등과 같은 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정부는 2008년 2월 2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중학교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등록 이주아동이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와 제2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법률안 제46조 제2항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외에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도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09년 11월 △ 개정안이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 시에도 체포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할 것 △ 출입국 공무원의 정지, 질문권한 부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유사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준하는 인신보호절차를 신설할 것 △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 출입국 심사 조항 신설은, 이로 인해 획득되는 정보가 그 특성상 개인적 고유성, 불변성 및 영속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신체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이 강한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부작용의 우려가 큰 만큼 삭제할 것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 등 정보제공의



무 조항의 신설은,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향유 주체인 만큼, 현행 출입국심사 절차에 의해 보다 엄격한 심사와 수사기법 등의 개발을 통해 여권의 위·변조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22) AIDS 치료제 푸제온의 강제실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6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 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어왔다.

푸제온은 일부 AIDS 환자들의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제로, 2004년 5월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해당 제약사인 한국로슈에 의해 약가협상이 계속되어왔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4년 이상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다. AIDS 환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AIDS 환자가 한 달에 180만원이 넘는 푸제온의 약값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약품을 공급할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발동해왔기 때문에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을 강제실시한다 해도 반드시 통상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행 특허법에 강제실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제약회사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제실시로 인한 로슈의 실제 경제적 손실이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 국제인권기준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으나 특허청장은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의무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헨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28일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항은 현행 조항에서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인면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산정 시 인터넷언론서비스, 포털서비스, UCC서비스 등의 유형별로 한정되지 않으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서 본인확인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악성 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제도 및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익명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개정 조항은 현행 조항에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하한선마저 삭제하여 어떤 경우에 본인확인제도가 적용될 것인지를 전혀 기능할 수 없어 기본권의 제한 및 행사에 관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현황표

[표 2-1-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연번	권고(의견표명) 제목	의견제출 요지	의결 일자	관련기관	판결현황 (이행현황)
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할 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공간의 특성, 그리고 본 규정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위축 효과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인권침해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출	6. 8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심리 중
2	사형제 폐지 의견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7. 29	헌법재판소장	합헌판결
3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2008헌마638) 사건에 대한 의견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하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9. 14	헌법재판소장	심리 중

나. 의견제출 주요 내용

1)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의견제출

위원회는 2009년 6월 8일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제출

위원회는 2009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008헌가23)과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 즉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목 아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윤리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가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헌법재판소에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2008헌마63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위원회는 2009년 9월 14일 국방부가 2008년 7월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내려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등의 기본권 침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사건 재판부에, 위 지시 등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제7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여성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하여 제7차 국가보고서 초안(이하 '보고서') 작성 후 2009년 12월 7일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첫째, 동 보고서는 법제도와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예산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다. 둘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07년도 권고 및 우려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므로 최종 권고의 이행 및 준수 상황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 비정



규직화 및 여성 빈곤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제시가 부족하다. 넷째, 기본적인 성인지 통계 및 취약계층 여성 관련 통계가 미흡하다. 다섯째,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므로 여성단체와 협력한 구체적 내용 및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인권상황 실태조사

가. 정보인권 관련 법제 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위원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보인권 관련 법안 쟁점사항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번 조사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으로 유형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낮으나 유형별, 이슈별 인식은 높고 사안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정보인권에 대한 인지 응답 비율

분 야	일반적 인지	유형별 인지	쟁점이슈별 인지	인식평균	
정보프라이버시권	2.61	3.04	범죄인 신상공개	3.25	3.10
			탈의실 CCTV	2.9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2.61	3.31	사이버 모욕죄	3.46	3.45
			미네르바 사건	3.43	
정보접근권	2.61	2.70	MS원도 판결	2.02	2.56
			저작권 삼진아웃	3.10	
정보문화향유권	2.61	2.63	아날로그 방송 중단	2.73	3.02
			음란물 유포자 고소	3.31	
일반적 정보인권	2.61	2.92	쟁점이슈 전체 평균	3.03	

정보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52.4%)은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10.1%)에 비

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는 전 영역에 걸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인권 개선은 전반적으로 입법기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나.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유통되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도 확산되는 실정에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상황, 유통경로를 조사·연구하여 정보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12. 22)

이번 조사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망라하였고, 행정, 수사·범죄, 통신, 포털, 이동통신사, 금융, 보건의료, 교육, CCTV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영역 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약 30만 개이며, 그 중 8만여 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되고 있으며, 71종의 서류는 379개 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영역 조사 결과 200만여 건의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이후에도 기간제한 없이 타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301가지 서식과 내용을 담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은 경찰수사 종료 후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민감정보



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었으며, 이통통신사의 경우 1,500개 이상의 위탁 및 제휴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신용정보가 자회사 간에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의 경우 보존 연한이 10년으로 규정된 진료기록부도 대부분 준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2년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는 3,000여 대의 NEIS 서버를 통합하고 학생들의 상·별점제도인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NEIS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영역인 CCTV의 경우 위탁관리 운영으로 경찰관서는 별도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을 감시하는 CCTV의 모니터링을 민간인 모니터 요원이 하고 있으며, 250만 대 이상의 민간부문의 설치 CCTV를 규제하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10년간 보관하고 있으며, 하이패스의 경우도 고객의 위치정보와 거래내역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비주택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9년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하여 우리 사회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인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컨테이너·옴막·판잣집,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 비주택 거주민은 주거설비 및 냉난방 시설 미비, 건강유지의 어려움, 화재 등 재난 위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된 비주택 거주민의 생활 실태에 기초하여 향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종합적인 비주택 거주민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라.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예산업의 구조적 메카니즘 속에서 여성 연예인이 어떻게 성적 접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지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는 현직 여성연기자, 연기학원 여학생, 연예 관련학과 여대생, 연예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52부) 및 심층면접(27개 사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연기자 중 45.3%는 술시중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60.2%는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연예지망생의 경우 술시중을 요구받은 경험은 14.1%,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은 29.8%였다. 성 접대 제의를 받아본 연기자 중 절반 정도(48.4%)가 거부 후 캐스팅이나 광고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3.6%의 연기자가 폭언·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은 다이어트(54.6%)와 성형수술(55.6%)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었다. 연기자 중 64.5%는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을, 67.3%는 몸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경험하였다. 연기자 중 51.4%는 따로 만나지는 요구를 받았으며, 31.5%는 신체 일부를 만지는 피해를 경험하였다.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도 21.5%나 된다. 성폭행/강간 등의 범죄 피해자도 연기자 중 6.5%나 되었다. 이로써 여성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고 J씨 등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연예인의 인권보장 관련 대안으로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 제정, 연예기획사 라이선스 발급, 여성연기자협회 구성과 자구노력 지원, 팬 문화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성적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피해사례와 실태를 밝혀내고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그 실행에 접근한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및 권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마.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기업인권경영 모범 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보고서를 완간하였다. 이 연구 결과, 인권 친화적 경영이 실제 이루어지는지를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지표를 직접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선진적인 외국의 연구소나 국제단체 등에서 개발된 지표는 여럿 있으나 한국 상황에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한 한국적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표는 대분류 8개, 중분류 23개, 소분류 40개에 총 40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3개 업종, 즉 전자, 금융 및 채굴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10개, 14개 및 12개의 부가지표를 따로 선정하였다.

5.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가.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현황 총괄표

[표 2-1-4]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현황

연번	제 목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1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3. 6 / 배움터	2008년에 시행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권개선방안을 모색
2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4. 3 / 배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정부가 2009년 3월 13일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학계 및 노동계 등 각계의 견해를 듣고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
3	2009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6. 19 / 배움터	유엔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4	고용허가제 토론회	7. 30 / 인권교육센터 별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동 제도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5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8. 12 / 배움터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연번	제 목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6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	9. 8 / 인권교육센터 별관	신종인플루엔자A에 대한 인권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
7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의 현주소’ 토론회	9. 17 / 배움터	국제적인 지표로 국제비교를 하여 우리나라 아동인권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인권 지표로서 행복지수 지표의 적용가능성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내 아동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 활용(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 주최)
8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9. 14 / 인권교육센터 별관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기준에 초점을 맞춘 기업경영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모색(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인권재단과 공동주최)
9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9. 3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우리 사회의 인종과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국회 전병헌의원실과 공동 주최)
10	차별금지법 전문가 간담회	11. 3 / 전원위원회 회의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법을 위한 위원회 활동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을 조회
11	구급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1. 28 / 서울교육문화회관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공중보건 의사협의회와 공동 주최)
1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12. 2 / 배움터	여성들의 권리장전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제정 30주년,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제도인 선택의정서 제정 10주년 기념
13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정책토론회	12. 4 / 배움터	청소년 근로자가 처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의 공동 주최)
14	아동급식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12. 8 / 배움터	우리나라 아동급식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
15	비주택 거주민 인권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2. 22 / 배움터	비주택 거주민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

나. 주요 토론회, 간담회 등 내용

1)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2009년 3월 6일 위원회는 2008년에 시행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 수행기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인



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2007년 7월 1일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
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
로는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정규직에 비해 차등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위 실태조사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직제 또
는 직급 신설로 별도의 기준 및 규정을 적용받으며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기존 정규직과 그 격차가 여전
히 크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수준에 가깝고, 사업장 내 복지제도 적용률이나 승진
가능성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혜 비율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에 가깝게 나타났다.

2)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2009년 4월 3일 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정부가 2009년 3월 13일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학계 및 노동계 등 각계의 견해를 듣고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
층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 속에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비정
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권적 고려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극복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
고, 비정규직법과 고용감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상존한 가운데, 비정규
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해보고
자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3)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2009년 6월 위원회는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배움터에서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 고용허가제 토론회

2009년 7월 위원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동 제도하의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향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를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5)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9년 8월 위원회는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노숙인 관련 학자, 전문가, 시설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는, 3,000여 명이상이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미비로 시설 내 강제적 종교행사, 재활쉼터나 의료지원서비스 체계 미확보 등 재활시설이 부족한 노숙인 재활정책의 한계, 쉼터의 소비적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효과적 운영의 한계, 쉼터 종사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한계, 시설의 입·퇴소 규정의 미비로 인한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선택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노숙인 보호시설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로 개별시설 단위 운영규칙의 적절성 확보, 시설에 대한 노숙인 선택권 보장과 정보 제공, 시설의 입·퇴소 관련 규정 정비,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근접성 증진, 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시설운영에서 노숙인의 참여 보장,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합목적성 견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체계 구축, 시설 운영 관련 규칙 정비, 노숙인 시설 인권지침 작성 및 배포 등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노숙인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6)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

위원회는 2009년 9월 8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이하 신종플루)에 대한 인권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 4월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로 신종플루는 국내외에서 많은 감염자와 희생자를 낳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10월 중에 신종플루가 대유행의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어 적절한 전염병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전염병 대처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더 나아가 신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 대한의사협회, 제약회사, 건강권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 책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치료거점 병원 및 약국은 물론 사업장이나 교육현장의 신종플루 대응 혼선, 치료제와 예방백신의 불투명한 수급일정, 점증하는 사회적 불안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전염병 대응기구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정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7)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의 현주소 토론회

2009년 9월 17일 위원회는 국제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하여 우리나라 아동인권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인권 지표의 행복지수 지표 적용가능성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내 아동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의 현주소' 토론회를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박종일 연구원(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염유식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김기현 선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행복의 조건 :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욱(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이경립(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를 통하여 ‘행복지수’라는 기준이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국제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8)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2009년 9월 위원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인권재단과 공동으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기준에 초점을 맞춘 기업경영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한국 사회 문화에서 ‘인권’을 도입한 경영이 가능한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담당자가 직접 방한하여 발제를 하고 개별 기업의 우수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기에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9)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2009년 9월 30일 위원회는 국회 전병헌의원실과 공동으로 우리 사회의 인종과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0) 차별금지법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가 2006년 7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정부는 2007년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7대 국회 논의 도중 회기 종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법을 위한 위원회 활동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3일 인권단체, 학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11월 25일 ~ 11월 27일에는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과정 평가, 차별금지법 입법의 필요성 및 차별금지법과 개별법의 관계, 현재의 입법 환경, 입법 추진방법, 법안의 내용, 지역 시민사회의 입법 활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는 향후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11)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09년 11월 28일 위원회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설립 이래 수용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구금시설 진정 가운데 의료권 및 외부진료권, 수용환경 문제 등 건강권 관련 진정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 번역을 계기로, 국제적 기준에 제시된 원칙을 통해 우리 구금시설 내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 및 건강권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석자들은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만이 아니라 수용시설 및 환경, 운동기회 보장 등 건강결정요소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정책대안 도출에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토대로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용환경의 개선, 구금시설 표준적 진료환경 마련, 전염병 관리, 현황과약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1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09년 12월 2일 위원회는 여성들의 권리장전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협약)이

유엔에서 제정된 지 30년,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제도인 선택의정서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기념 토론회를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신혜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과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CEDAW 협약과 여성인권’, ‘CEDAW 협약과 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국회 여성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담당자들이 부문별 CEDAW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NGO 차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단체 실무자, 법조인, 관련학회 회원, 노동조합 관계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위원회는 국회, 법원, 관련 부처 및 NGO 등 각 주체들이 CEDAW 협약 이행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환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3)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정책토론회

2009년 12월 4일 위원회는 청소년 근로자가 처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제32조 제1호에서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한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 현실에서 청소년 근로자는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전형적인 형태의 파트타임 노동을 해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양하게 지적되어오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바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 이에 인권위는 전문가, 학계, 인권단체 및 관련 정부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4) '아동급식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09년 12월 8일 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급식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관계기관, 인권단체 등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엄기영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학교급식의 무상화 : 국가의 '지원'에서 '의무'로”, 김형모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의 “아동결식의 실태 및 개선방안” 발제와 함께 경남교육청과 속초시청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김선희 사무처장(학교급식네트워크), 김호정 교사(개웅중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실무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동급식에 국가가 적극개입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무료 급식 이용 아동은 2008년 8월 기준 62만여 명(절대빈곤율 5.7%)이고 130만 명(상대적 빈곤율 12.6%) 이상의 아동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절대적 예산 부족과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적절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아동급식 관련 철학과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15) 비주택거주민 인권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9년 12월 22일 위원회는 비주택거주민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주택거주민 가구 수는 약 5만 3000명, 거주민은 약 10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주거 설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가족 해체, 건강, 주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낮은 주거안정성, 높은 주거비 부담, 가족 및 사회와 관계단절,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장애인 비율, 취약한 물리적 주거환경 등 비주택거주민의 일반적 인권상황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는 화재 위험 높고 기반시설이나 주택설비 미비 등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어려움, 잦은 숙박지 이동과 취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숙박시설 거주민의 제약, 사적공간과 휴식공간의 미확보와 취사나 세탁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민의 어려움, 방음·환기·채광 조건이 미비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고시원 거주민의 생활환경 등 유형별 비주택거주민의 어려운 생활환경이 다루어졌다. 또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비주택거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주거권 개념의 적용 강화, 비주택거주민에 대한 주거실태 특수 조사 시행, 임대주택 유형과 특성 재정비, 욕구에 대한 사정과 재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사업 개선,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사업의 범위를 고시원, 여관·여인숙 거주민으로 확대하는 등 유형별 개선방안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다중주택의 최저기준 설정, 비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 개선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파악된 비주택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비주택거주민의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6.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는 2007년 11월 각계 원로급 인사 34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지역 인권의 발전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역 인사 중심의 정책자문위원 4인을 추가 위촉하였다. 2009년 11월 기존 정책자문위원 34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만료된 34명 중 재위촉 수락자 26명과 위원회 추천대상자 11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의 정책자문위원 위촉안을 상정, 심의·의결하여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4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2009년 3월 개최된 회의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 강행방침에 대한 논의 및 성명발표를 하였다.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2010년 정책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유엔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 등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언권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국제인권 분야 전반에 관한 전문가의 연구, 검토 및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08년 7월 조국 인권위원(서울대 법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조약감시기구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국제인권 분야 전문가 9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9년은 특히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다. 사회권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일반분과, 노동권분과, 주거권분과, 건강권분과의 4개 분과로 구성된 사회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올해 사회권전문위원회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 제3차 보고서 심의에 대비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전체 회의는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6월의 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은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고메즈(Ms Maria Virginia Bras Gomes) 위원 등에게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 심의를 위해 채택된 유엔의 쟁점 목록과 관련 있는 한국 사회권 현황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공하였다. 9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 보고서가 주로 검토되었다.

사회권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사회권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권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을 적실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라.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제1기 아동인권전문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8년 제2기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위촉하고, 전문위원회를 총 세 차례 개최하였다. 8월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위촉 및 아동인권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업방향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며, 9월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생인권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2월에 열린 3차 회의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와 함께 개최되어, 정부가 작성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7. 기타 주요사업

가. 스포츠인권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 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10만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선수를 비롯한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는 2007년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시작으로 2008년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고교 학생 운동선수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보고하여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에는 스포츠인권 정책포럼 구성, 해외선진사례 연구,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하였다.

1) 「스포츠인권 정책포럼」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2009년 2월 위원회는 청소년, 여성 등 전문가와 학부모, 지도자 등 현장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정책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인권 관련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학부모, 지도자 등 현장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포럼의 논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 1차 포럼 : 스포츠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2월 24일)
- * 2차 포럼 : 학원스포츠 정책의 인권적 전환 방안 - 체육특기자 제도 및 전국소년체전을 중심으로(4월 24일)
- * 3차 포럼 :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해외사례 보고 및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12월 2일)

2)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안) 수립

위원회는 2009년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스포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영국, 벨기에, 덴마크를 순방하여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과 유럽의 스포츠인권 정책 및 사례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하였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은 발생 가능한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책을 지침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지침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2010년 정책관계자, 시민사회,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확정·보급할 예정이다.

3)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스포츠 분야 정책·제도 개선 활동과 스포츠 인권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발전시켜내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아하!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함께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가이드>, 스포츠 성인권 교육 동영상 및 학습지도안 <똑똑똑 행복한 운동과 만나기>, 10대 스포츠 선수를 위한 인권가이드 <내 인생의 플레이어>, 학생운동선수 인권 실태 보고서 <두려움 없이 운동하고 싶어요>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소속 성교육 전문가 등 50여 명을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체육교사, 코치, 학생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100회, 2,000여 명)을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4) 스포츠 분야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스포츠 분야의 뿌리 깊은 인권침해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스포츠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한국YMCA 연맹과 함께 11~12월에 걸쳐 전국 6개 지역(수원, 인천, 춘천, 대전, 부산, 군산)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문제를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학원 스포츠인권 문제뿐 아니라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스포츠 정책 수립,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권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스포츠 분야의 여성, 장애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스포츠인권 담론이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스포츠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인권 담론이 지역사회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릴레이 토론회와 같은 사업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꾸준히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나. 노인인권 증진사업

2009년 시범 추진한 노인인권 증진사업은 최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에서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였다. 첫째로 인권의제를 선언적 법제도 영역으로부터 구체적 정책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인권'을 국제 기준 및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게 개념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실을 살피는 한편 그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인권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의 임무 수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인권 정책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수의 입장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 노인인권 증진사업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노인인권정책지문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를 대표로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양란주 박사, 우국희 서울기독교대 교수, 최해경 충남대 교수 등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월 1회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세미나에 앞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와 차홍봉 한림대 명예교수도 발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하여 2009년도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인권을 소득, 노동, 건강 및 돌봄, 사회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권리 인식과 보장 실태에 대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대도시에서 65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노인집단 및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노동제도 등 형식적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구색을 갖추었지만 노인들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정책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

요한 권고나 의견표명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79명의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하여 운영하였다. 주로 공직이나 교직, 금융권 은퇴자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1주일에 1일씩 노인요양기관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독거노인 도시락배달봉사,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을 찾아 인권문제를 상담·홍보하면서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취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도 노인인권증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 사회권 심포지엄 개최

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 비판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위기와 사회권'을 주제로 2009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회권 심포지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황'으로 국제인권기준 및 해외 사례, 사회적 안전망 점검, 사회권 관련 예산 분석 등을 검토하였고, 제2부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을 진단하였다.

위원회는 사회권 심포지엄을 통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국가는 사회구성원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경제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용불안정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이 악화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권 심포지엄에는 유엔사회권규약 한국담당 보고관인 고메즈 위원(Ms Maria Virginia Bras Gomes)과 단단(Ms Virginia Bonoan-Dandan) 위원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 사회권보장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2009년 11월 유엔 경제적및사회적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규약이행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라.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국제 심포지엄

위원회는 2009년 9월 30일 배움터에서 관계전문가 50여 명과 함께 3개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을 제목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보인권 국제전문가인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 법대)와 마리 조르주(Marie Georges) 컨설턴트(프랑스 ‘인포네틱스 앤 리버티즈’)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국내 전문가인 염홍렬 교수(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항우 교수(충북대 사회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그린리프 교수는 “정보보호기관의 독립과 권한 : 국제기준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례”라는 제목으로 국제기준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개인정보보호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어떠한지를 정리 제시하였으며 마리 조르주 컨설턴트는 “유럽의 독립적 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역사, 구조 및 기능”의 제목으로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활동해온 역사와 구조 기능을 분석 정리하였다.

염홍렬 교수는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쟁점 및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위 두 발제자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필요요건 기준에 국회사정 법률안이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으며, 이인호 교수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방향설정”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감독기구를 둘러싼 쟁점 정리와 특히 정부안의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를, 이항우 교수는 “개인정보보

호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 유엔 조약기구 활동

2009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인권최고대표사무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후 처음 맞는 동 사회권규약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3명을 초청하여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1년 여 동안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2008년 11월과 2009년 10월에 인권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심의가 개최되는 동안에도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장단을 파견하여 직접 심의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하였다. 관련 활동 일지는 아래와 같다.

- 2008. 3. 10~13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리델(Dr Eibe Riedel) 위원과 고메즈(Ms Maria Virginia Bras Gomes) 위원 초청 특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2008. 11. 8. 회기전 실무그룹(Pre-session Working Group)에 의견서 제출
- 2009. 6. 고메즈 위원과 단단(Ms Virginia Bonoan-Dandan) 위원 초청사업
- 2009. 6. 26 <2009 사회권 심포지엄 : 경제위기와 사회권> 개최
- 2009. 10. 1 최종 종합 의견서 제출
- 2009. 11. 10~14 제네바 출장단 파견 및 홍보 활동

바. 국가인권기구 간 이주인권 양해각서 체결

2008년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및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



구포럼(APF)과 공동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채택된 서울가이드라인은 아시아 이주민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관련 국가인권기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대상국가를 몽골과 인도네시아로 정했다.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와는 7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와는 2010년 1월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에 몽골 출신 이주민이 약 3만여 명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은 2만 6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으며 이 중에는 미등록 상태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양해각서는 양 국가인권위원회 상호간 상대국 출신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류와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국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정책검토 그리고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몽골 및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몽골과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가 노력하고 협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국내에 있는 두 국가의 이주민과 두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분야에서 노력과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도 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내의 다른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계속하여 체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아시아 지역 내의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제3절 평 가

2009년 위원회의 정책업무와 관련된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2006년 1월 팀제 개편과 함께 각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담당했던 정책업무가 2009년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직제개편 이후 다시 인권정책과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정책업무의 속성상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는 것 간에 유불리가 크게 있을 수 없지만 2006년 이후 3년여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안정화에 접어들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외부의 강압에 의하여 추진된 이러한 조직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정책업무는 외부 의견조회 요청과 같은 일상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인권문제에 위원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새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 드라이브가 점차 강해짐과 동시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인 만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상황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에서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 HIV 감염인 등 보건 취약계층, 강제철거민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수행하고 나아가 토론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여론 환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09년부터 3년간 인권증진 행동계획의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전략목표에 정보인권의 증진이 관리과제로 채택되면서 2009년은 기본적인 정보인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보인권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선관위 UCC 규제, 게시판실명제, 사이버모욕죄, CCTV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실시하여 정보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2009년은 정보인권 사업 중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집중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2010년에는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네 가지 영역 모두에 대한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되었다.

2008년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스포츠인권 사업을 위해서도 위원회는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에 기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안) 제정 착수, 학생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스포츠 분야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활동 결과, 2008년 원년 사업이 거시적인 정책권고와 여론 환기에 있었다면 2009년은 좀 더 미세한 영역에서 당사자 및 풀뿌리 일선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스포츠인권 개선사업을 진행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강화' 활동이 결실을 본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사회권 관련 활동은 경제적 위기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사회권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동권, 주거권, 이동권, 건강권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강제철거 거주민, 노숙인, 실종아동, HIV 감염인 등 각 분야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표명과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위원회 사회권 역량의 표출이자 우

리 사회 내의 사회권 인식 확대와 전문적 연구역량이 강화된 결과이다. 특히 유엔 사회적·경제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계기로, 위원회는 사회권 심포지엄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권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국내 사회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은 국제적 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었으며, 위원회가 국가의 사회권 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견인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사회적 현안이었던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등의 문제가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된 사회권적 관점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못한 것은 위원회의 과제이다.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이행이자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를 설득하면서 정부정책이 사회권 이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2009년도 우리 사회 전반에 주요 논란이 되었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신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귀결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재확인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은 위원회 국제인권조약 관련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동 위원회 위원회들을 초청하여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위원들과 국내 학자들, 그리고 인권단체와 직접적인 교류를 증대함으로써 동 유엔 조약기구에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11월에 있었던 심의 결과 동 위원회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최종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제 2 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1절 개 요

2009년 위원회는 대국민 인권 전담 창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상반기에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화통역사 배치, 화상전화기 설치, 상담전화 ARS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상담센터 업무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시도해 야간상담 도입, 루트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진정사건 접수 시 게이트 키핑, 민원 답변방식 개선 등을 단행했다.

상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32시간에 걸쳐 인권전문상담교육을 실시했다. 실무교육으로 연령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등에 관한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인권위원 및 인권전문가 특강을 마련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문상담원 피로 회복을 위한 비폭력 대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인권상담전문위원을 구성했다. 인권상담센터는 접수된 현안과 관련 인권전문상담위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상담 실무에 활용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전파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를 위해 인권상담센터는 2009년 하반기부터 일일 주요사건 및 특이민원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연장선에서 2010년부터 일일리포트를 제작해 내부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월 단위로 상담 및 민원의 주요 경향을 토론하는 상담사례 발표회를 11차례 개최했다.

또한 연말에는 1년간 진행된 상담사례를 위원회의 주요 전략목표를 기초로 분류한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상의 주요 성과목표 등과 연계해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위원회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9년에는 폐쇄병동을 갖춘 88개 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에 대한 시정 보완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출범 이후 진정사건 비중이 가장 높은 구금시설의 경우, 제기된 면전진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한 우편진정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은 주제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다. 독거노인, 장애인, 학생·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순회상담을 통해 확보된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과는 이슈별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상담을 매개로 한 전국 단위 네트워크의 기초를 닦았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009년 한 해 동안 진정사건은 6,985건, 상담 18,765건, 민원·안내 26,634건이 접수되어 2008년보다 진정은 676건(10.7%), 상담은 2,464건(15.1%) 증가했다. 민원·안내의 경우 3,409건(11.3%) 감소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전화번호 문의 등 단순안내를 집계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표 2-2-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 / 안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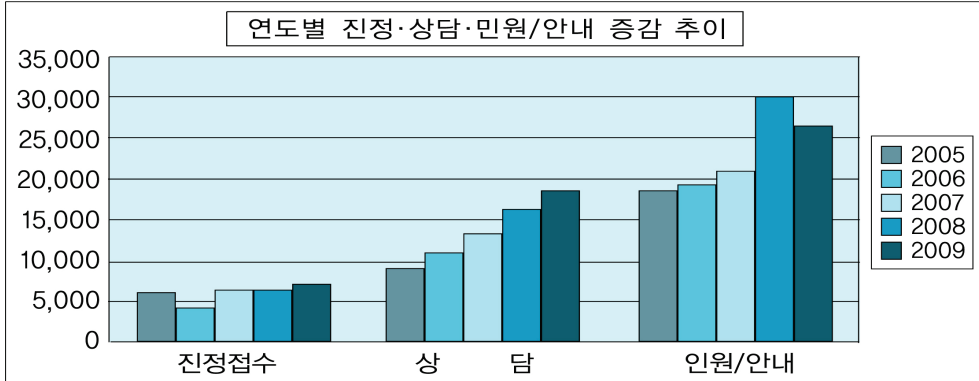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2009	6,985	18,765	26,634	52,384
2008	6,309	16,301	30,043	52,653
2007	6,274	13,388	20,780	40,442
2006	4,187	10,737	19,558	34,482
총 누계	42,148	82,654	148,605	273,407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건수 포함).

[그래프 2-2-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단위 : 건)



1. 인권 상담

가.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09년까지 처리한 상담은 총 72,273건인데 2006년 8,311건, 2007년 10,684건, 2008년 13,042건, 2009년 17,43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인권침해 41.3%, 차별행위 11.0%, 기타 47.7%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간 침해, 입법 관련, 재판 관련, 법률 문의 등이다.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단위 : 건, %)

연도	구분	총 누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총 누계		72,273	100.0	29,860	41.3	7,914	11.0	34,499	47.7
2009		17,433	100.0	6,738	38.7	1,974	11.3	8,721	50.0
2008		13,042	100.0	4,865	37.4	1,414	10.8	6,763	51.8
2007		10,684	100.0	4,428	41.4	1,041	9.7	5,215	48.8
2006		8,311	100.0	3,400	40.9	894	10.8	4,017	48.3

※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등은 제외한 숫자임.

※ 2009년은 '상담 후 진정접수' 도 포함한 것임.

나. 인권침해 상담

2009년 인권침해 상담내용과 관련, 해당기관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까지는 경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나, 2007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 상담이 크게 증가(2007년 1,272건, 2008년 1,826건, 2009년 2,623건)하여 경찰 관련 상담을 앞질렀다.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 정신병원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구제활동 사례가 점차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 또한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표준진정함 보급 및 시설 관계자 교육, 2009년 위원회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효과로 보인다.

이 밖에 촛불시위 등으로 경찰 관련 상담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기관, 검찰, 구금시설,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도 늘었다.

[표 2-2-3] 연도별 침해기관별 상담 사례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3,400	4,428	4,865	6,738
다수인보호시설	664	1,272	1,826	2,623
경찰	1,168	1,210	1,285	1,895
지방자치단체	352	466	499	650
기타 국가기관	510	617	351	562
검찰	264	288	228	272
기타 군사	147	171	184	168
기타 기관	2	119	167	179
구금시설	137	143	163	196
사법기관	83	91	90	114
보호시설	9	8	21	13
군검찰(군대/수사)	15	5	20	41
국정원	20	16	12	9
특별사법경찰	12	15	8	8
입법기관	8	3	6	7
군헌병	4	3	3	1
군구금시설	5	1	1	-
기무사	-	-	1	-

※ 2009년은 '상담 후 진정접수' 도 포함한 것임.



다. 차별행위 상담

2009년 차별 관련 상담의 경우, 장애 관련 상담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의 영향으로 급증하여 806건(40.8%)에 달했다. 2007년까지 가장 많았던 성희롱(성차별 포함)은 453건(23.0%)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나이 차별 상담도 급증해 210건(10.6%)을 기록했다. 이 밖에 사회적 신분 125건(6.3%), 기타 105건(5.3%), 병력 58건(2.9%) 등의 순이다.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894	1,041	1,414	1,974
장애	73	111	565	806
성희롱	298	364	384	402
사회적 신분	118	95	111	125
기타	112	127	92	105
나이	64	66	67	210
병력	44	45	33	58
성별	42	40	28	51
출신국가	23	46	27	46
학벌/학력	10	11	19	30
임신, 출산	23	21	18	25
전과	13	17	15	22
출신지역	9	10	13	18
용모, 신체조건	25	30	12	18
종교	8	13	9	15
가족상황	9	11	8	16
혼인 여부	13	13	5	11
사상, 정치적 의견	4	8	5	10
성적 지향	-	1	2	2
출신민족	4	5	1	1
피부색	-	2	-	1
인종	2	5	-	2

※ 2009년은 '상담 후 진정접수' 도 포함한 것임.

[표 2-2-5] 기타 상담 유형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4,017	5,215	6,763	8,721
국가기관(상담용)	319	301	416	562
기타	798	1,296	1,728	2,532
기타 단체	141	182	287	252
법령제도개선	100	83	133	139
법률문의(상담용)	164	212	403	548
사인간 침해	1,063	1,283	1,684	1,875
위원회 업무불만(상담용)	145	178	382	284
위원회 관련 제안(상담용)	35	40	91	115
위원회 업무 문의(상담용)	357	616	383	874
입법/재판	225	215	266	251
재산권	133	141	209	334
회사	537	668	781	955

※ 2009년은 '상담 후 진정접수' 도 포함한 것임.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42,148건인데 이 중 79%인 33,276건이 인권침해, 16.8%인 7,065건이 차별, 4.3%인 1,807건이 기타 사건이다. 인권침해 사건은 2007년 5,067건 80.8%, 2008년 4,892건 77.5%, 2009년 5,282건 75.6%의 추이를 보였다. 2009년의 경우 2008년 대비 390건(8%) 증가했다. 차별사건은 2007년 1,159건(18.5%), 2008년 1,380건(21.9%), 2009년 1,685건으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305건(22%)이 증가했다.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총 누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연도별	총 누계	42,148	100.0	33,276	79.0	7,065	16.8	1,807	4.3
	2009	6,985	100.0	5,282	75.6	1,685	24.1	18	0.3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8	1,159	18.5	48	0.8
	2006	4,187	100.0	3,334	79.6	824	19.7	29	0.7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3. 인권순회상담 실시

위원회는 2009년 총 6차례에 걸쳐 인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순회상담을 실시했다. 방문지역은 서울(관악구, 종로구, 강북구), 경기(의정부), 인천(부평), 강원 태백 등이다. 상담분야와 주제는 독거 노인, 장애인, 학생·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진폐환자 등으로 위원회의 중장기 인권증진행



동계획 및 2009년 주요 전략사업과 연계돼 있다. 순회상담 지역에서는 문화공연, 다트 퀴즈쇼, 인권영화 상영, 인권 앙케이트, 현장 간담회 등 부대행사도 함께 추진하였다.

4월 실시한 장애인 상담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상담버스를 현장에서 운행했다. 5월 학생·청소년 상담은 문화축제와 연계해 진행했으며, 9월 노인상담에서는 인권강연을 병행 실시했다.

또한 11월 진폐환자 상담은 임시 상담센터 운영과 개별 방문상담을 순차적으로 배치했다. 위원회의 2009년 맞춤형 상담은 MBC TV, 대한민국 정책포털, 문화일보, 강원일보 등에 보도돼 인권순회상담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적재적소에서 순회상담을 기획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이 위원회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의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4. 면전진정 처리

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는 면전진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모두 30,043건으로 이 중 28.8%인 8,615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50%인 14,960건이 상담종결, 21.2%인 6,362건이 신청인에 의한 진정 철회, 106건이 미처리 진행 중이다.

면전진정을 신청하는 시설 수용자 가운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이에 따라 면전진정 접수자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준 뒤 진정을 접수하거나 상담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이 아닌 사안일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접수 전 단계에서 상담종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행정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9년 상담종결 비율은 50%에 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면전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우편진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화상상담을 통해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은 2008년 417건에 비해 무려 285건(68.4%)이 증가해 702건에 달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인권상담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수년간 꾸준히 전국적으로 진행한 진정함 보급과 시설 관계자 교육의 효과로 분석된다.



[표 2-2-7] 연도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전년 이월	신청	종결처리							미처 리	평균 소요일 수
				소개	%	철회	%	진정	%	상담 종결		
총 누계	-	30,043	29,937	100.0	6,362	21.2	8,615	28.8	14,960	50.0	106	-
2009	119	5,009	5,022	100.0	1,096	21.8	1,282	25.5	2,644	52.6	106	9.6일
2008	95	5,465	5,441	100.0	1,024	18.8	1,158	21.3	3,259	59.9	119	9.5일
2007	147	4,854	4,906	100.0	953	19.4	1,249	25.5	2,704	55.1	95	11.6일
2006	206	3,960	4,019	100.0	796	19.8	797	19.8	2,426	60.4	147	13.7일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5. 안내 및 민원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안이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광범위한 의미의 대국민 인권서비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비록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단순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인간 침해,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개인회사에서의 침해, 채무변제와 관련된 문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문의 등이다. 민원의 이용수단을 살펴보면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상담실)이 66.4%로 가장 많고, 우편/FAX 26.8%, 참여마당신문고 5.9% 순이다.

[표 2-2-8] 접수 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도	분류	합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 신문고		기타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총누계		51,129	100.0	13,715	26.8	33,924	66.4	335	0.7	3,029	5.9	126	0.3
2009		9,615	100.0	2,707	28.2	5,769	60.0	30	0.3	1,077	11.2	32	0.3
2008		8,931	100.0	2,310	25.9	5,415	60.6	66	0.7	1,111	12.4	29	0.3
2007		8,843	100.0	2,057	23.3	6,199	70.1	25	0.3	550	6.2	10	0.1
2006		8,151	100.0	2,296	28.2	5,648	69.3	68	0.8	127	1.6	12	0.1

※ 총 누계는 2001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숫자임.

[표 2-2-9]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8,151	8,843	8,931	9,615
조사대상 안내	3,216	2,781	3,271	3,543
진정접수 절차 안내	1,574	1,069	1,321	1,825
진정접수 안내	855	1,894	1,749	1,859
처리종결(회신 무)	818	1,842	1,271	993
질의회신	24	-	-	-
진정내용 보완 요구	30	123	76	105
타 기관 안내	107	34	21	13
법령 등 자료송부	85	124	92	29
공람종결	15	60	131	176
면전진정 안내	36	5	15	20
진정사건 처리 안내	88	75	78	84
민원인 취하	115	126	20	40
타 기관 이송	3	22	21	13
기타	1,185	688	865	915



제3절 평 가

2009년 위원회의 관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는 대체로 무난하게 수행됐다. 전년 대비 업무량이 증가하고 조직정비 과정에서 인원이 축소됐음에도 기본적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인권상담센터의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고객 만족, 효율 강화, 성과 확대'의 관점에서 쇄신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는 위원회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쇄신방안은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에는 우선 야간상담 도입, 접근 루트별 고객만족도 조사, 진정사건 게이트 키핑, 민원 답변 방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국민 접촉 지점에서 모인 인권정보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해 위원회 내부에 전파하는 일일리포트 발행도 1차 쇄신방안과 연계해 착수했다.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화상전화를 설치하고 월요일마다 수화통역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온라인 상담 시스템이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권순회상담은 위원회 전략사업 등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상담네트워크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미진한 점은 상담 결과를 위원회의 정책의제로 확대하지 못한 대목이다.

상하반기 3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권상담 전문교육은 100%에 가까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짜임새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족한 점은 갈수록 업무 하중이 커지고 있는 상담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57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아직까지 개인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전문상담 위원에게 상담 및 민원의 쟁점을 의뢰하고 보충상담을 실시하는 등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확대와 관련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 88개소의 진정함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은 성과다. 이 과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 및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줄곧 진정사건 비중 1위를 달리고 있는 구금시설과 관련,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진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면전진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우편진정 활성화를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009년 위원회의 대국민 창구 기능은 종합적으로 무난하면서도 부족한 지점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 관문으로서 게이트 키핑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3대 기능인 정책 조사 교육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위원회는 향후 인권상담센터의 쇄신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관련 국가기관 및 외부 인권공동체와 소통을 확대하며, 실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30조 제2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8조는 긴급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급식·피복 등의 제공,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권리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서 비롯되는 진정사건이 늘어나면서 점차 진정 내용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2002 ~ 2006년 연평균 접수건수는 3,400여 건이고, 2007~2008년 연평균 접수건수는 5,000여 건이나, 2009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5,282건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구금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 진정사건 대비 각 38.3% 및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취약 분야 인권개선을 위해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수용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NGO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권리 구제 및 보호 활동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9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82건이 접수돼 이전 해보다 390건(8%)이 증가했다. 진정 접수는 2004년 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가 2005년, 2006년에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다시 대폭 증가했고 2008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다시 증가했다. 2009년 종결한 사건 수는 5,107건으로 이



전 해보다 181건(3.4%)이 감소했다.

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009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의 개정으로 정원의 21%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에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은 총 5,107건으로 2008년 5,288건보다 181건(3.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인용처리 건수는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5건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 5건, 징계 권고 5건, 권고 235건, 합의종결 118건, 긴급구제 1건, 조정 1건 등이고, 그밖에 기각 1,637건, 각하 2,973건, 이송 78건, 조사중지 54건이다.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건)

연도	접수	종결	인용								미인용			
			소개	고발 수사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및 합의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초조 사해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2002년	2,833	1,365	29	3	16	2	8	0	0	0	136	26	1,174	0
2003	3,041	3,137	94	9	3	2	57	23	0	0	717	116	2,210	0
2004	4,627	4,931	145	6	2	0	79	54	4	0	1,280	148	3,306	52
2005	4,199	4,132	244	6	6	1	156	73	2	0	1,318	147	2,378	45
2006	3,335	3,250	207	17	2	0	164	23	1	0	932	70	2,020	21
2007	5,067	4,757	239	13	16	0	147	61	2	0	1,215	116	3,152	35
2008	4,892	5,288	308	12	30	2	213	48	1	2	1,644	99	3,177	60
2009	5,282	5,107	365	5	5	1	235	118	0	1	1,637	78	2,973	54
합계	33,276	31,967	1,631	71	80	8	1,059	400	10	3	8,879	800	20,390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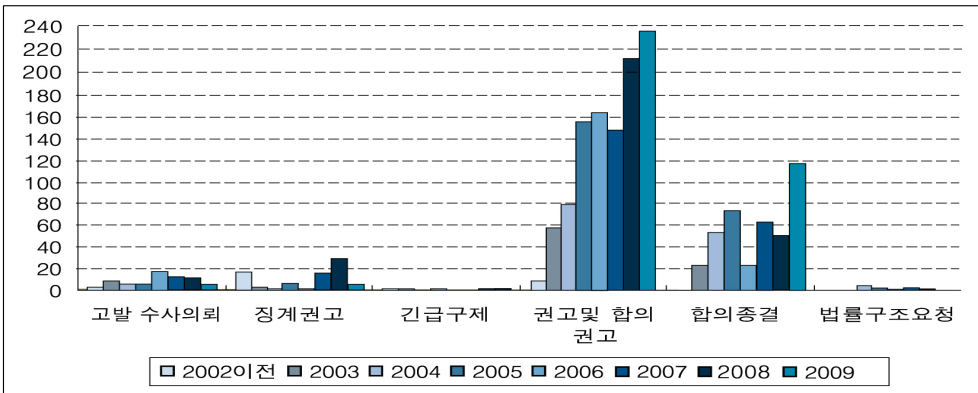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상기 통계자료는 오류입력자료 수정 등에 의해 이전 통계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그래프 2-3-1]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인용이 증가하였고 인용 중 합의종결 사건이 2008년 대비 145.8%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권고 등 위원회가 인용한 인용사건 수도 365건으로 2008년보다 57건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종결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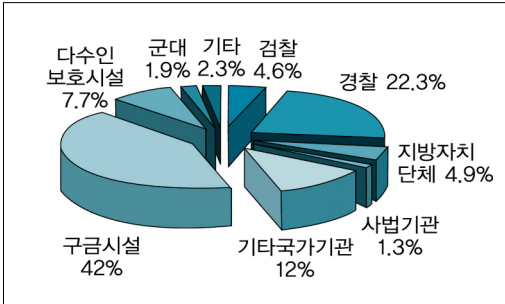
[그래프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인용) 현황

(단위: 건)



2009년 각하사건 2,973건은 진정취하가 2,163건으로 72.8%,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85건으로 9.6%, 다른 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는 188건으로 6.3%, 위원회 조사 시효를 경과한 경우가 101건으로 3.4%, 진정 내용이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조사 부적절 사건 등 기타 각하사건이 236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각하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정취하의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진행 중에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해결되었거나 진정인이 만족하는 등의 이유로 취하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그래프 2-3-2] 및



[그래프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표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시설 관련이 13,957건으로 전체(33,276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이 7,415건으로 22.3%, 기타 국가기관이 3,995건으로 12.0%, 다수인보호시설이 2,558건(7.7%), 지방자치단체 1,619건(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종결	인 용								미인용				조사종	구성비
			소계	고발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권할의고	법률요청	합의종결	조정기조사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건수	33,276	31,967	1,631	71	80	8	1,059	10	400	3	20,390	800	8,879	267	1,309	100
%		100	5.1	0.2	0.3	0.0	3.3	0.0	1.3	0.0	63.8	2.5	27.8	0.8		
검찰	1,524	1,489	62	3	1	2	52	0	4	0	1,058	22	327	20	35	4.6
경찰	7,415	7,213	667	14	58	5	376	2	212	0	4,177	114	2,154	101	202	22.3
구금시설	13,957	13,478	275	2	13	0	198	7	55	0	8,298	584	4,251	70	479	42
국정원	150	148	4	0	0	0	2	0	2	0	135	0	9	0	2	0.4
군대	637	591	42	4	1	0	29	0	8	0	462	4	79	4	46	1.9
기타국가기관	3,995	3,842	168	0	4	1	123	0	39	1	3,125	24	513	12	153	12
보호시설	2,558	2,396	251	45	1	0	180	1	24	0	1,099	31	982	33	162	7.7
사법기관	446	430	3	0	0	0	3	0	0	0	370	0	54	3	16	1.3
입법기관	30	28	0	0	0	0	0	0	0	0	25	0	3	0	2	0.1
지방자치단체	1,619	1,530	121	0	2	0	74	0	43	2	992	12	389	16	89	4.9
특별사법경찰	161	159	15	3	0	0	10	0	2	0	84	2	54	4	2	0.5
기타	784	663	23	0	0	0	12	0	11	0	565	7	64	4	121	2.3

나.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 중 고발, 수사 개시 의뢰, 권고 등 인용사건의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은 [표 2-3-3]과 같다.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 검 찰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현 황
전경의 벽돌 투석으로 인한 집회 참가자의 상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성명불상 경찰(또는 전경)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2. 7	검토중
행정착오 등에 의한 인권침해	벌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착오로 인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었고 형사범으로 12일 동안 수감된 것에 대해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00지방검찰청00지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00지방법원장 및 00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5	일부 수용
부당한 벌금처리로 인한 인권침해	벌금 5만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같은 건으로 2008.12.22.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며 체포되어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대해 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	6. 5	수용
문서분실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항고이유서를 반복 제출해 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관련업무 개선 권고	7. 17	수용
구속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87조에 의거하여 교도관이 구속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개정 권고	12. 7	검토중

□ 경 찰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현 황
00지구대 피의자 뇌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00경찰서 00지구대 경위 김00와 경사 최00을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조치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지방경찰청장에게 가해자들의 소속 기관장인 00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00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0000과장 및 해당 지구대장에게는 각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5. 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용 2. 일부 수용 3. 일부 수용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을 체포 연행할 때 폭행을 한 피진정인 이 0 및 김00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고발조치	10. 26	검토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환
00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00지방경찰청장에게, 2009. 8. 5. (주)00자동차 00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	8. 5	검토중
경찰의 가혹 행위 등	지구대 내에서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을 징계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일선 지구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취자의 자해 예방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25	일부 수용
부당한 전과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근거와 업무에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범죄경력력을 조회하고 유출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경찰에 대해서 경고조치, 00원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고	8. 31	검토중
장애인 집회 과잉 진압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확충을 위한 집회시위 중,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전경대원이 방패로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000경찰서장 및 00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결정	8. 31	검토중
경찰의 폭행 등	진정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지구대 유치 및 경찰서 호송과정에서 폭언, 폭행한 경찰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9. 14	검토중
인권권 침해 등	강제로 지문확인을 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권고	3. 11	수용
인권권 침해 등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그 여죄를 추궁한다는 사유로 욕설까지 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14	수용
신고사실 누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신변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 직무교육 권고	5. 14	수용
피고소 사실 발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정인의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6. 5	수용
선임 의경의 구타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의경 '운용부서' 와 '당직근무자' 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복무 부적응 등의 애로사항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피진정 경찰관 주의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전의경·순경공상심의위원회 개최 권고	6. 5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환
밤샘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일간 심야에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어린 자녀(만1,3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경찰청장에게 원칙적으로 심야 감찰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00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내용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6. 23	수용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00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6. 23	수용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데 대해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23	수용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을 경찰서에 인치하는 과정에서 배를 발로 밟은 행위에 대해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권고	6. 23	수용
체포사실 통지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소년 피의자 연행시 폭행, 보호자 통보 없는 심야조사, 조사시 위협행위에 대해서 피진정인들 경고 및 주의 조치 권고	7. 17	일부 수용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뒷수갑을 찬 상태로 소변을 보도록 하여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7. 17	일부 수용
경찰의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주취자 보호조치 소홀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 경고 및 주의조치 권고	7. 17	수용
경찰의 사적인 차적 조회 등	사적으로 차적조회한 것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의 관리·감독기관장인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7. 17	일부 수용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00공항 집회금지 불허통보는 기본권 침해이므로, 00지방경찰청장에게 0000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7. 30	불수용
부당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	임의성 없이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7. 30	불수용
등록금 인하 관련 기자회견 시 경찰의 불법연행 등	등록금인하 기자회견 시 체포·연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 권고	7. 30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환
00병원의 면회 제한 조치 등	00병원에서 전경에 대한 진료 시 머리를 수회(20여 대) 쥐어박은 행위는 진료행위를 넘어선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 권고	8. 31	검토중
부당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불심검문과정에서 임의동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임의동행한 것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 권고	8. 31	수용
경찰의 부당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탐문하여 검거하였다'라고 경찰서장에게 허위보고하였고, 이후에도 관련 문건을 정정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는 피진정인의 행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진정인에게 무시와 모욕감을 준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권고	8. 31	수용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임의동행 시 임의동행의 요건(동행목적, 동행장소, 변호인 선임권, 승낙)을 함경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인정되어 주의조치 권고	8. 31	수용
경찰의 자진 출두자 강제 연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부당하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고 지문날인에 대해 사전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채취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피진정인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경고조치 권고	8. 31.	수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강제 해산	2008년 7월부터 8월초경 보건복지가족부 앞 장애인단체 집회 시위 중 00경찰서장 등의 지휘를 받은 00지방경찰청 소속 전의 경대원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빼내어 분리시킨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00경찰서장 등 지휘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31	검토중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불심검문으로 벌금미납자를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려는 진정인이 생후 8개월된 아기를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아기가 아스팔트에 넘어진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8. 31	수용
경찰의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찰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9. 14	수용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00경찰청장에게 주취 상태의 진정인에게 폭언하고 복부를 왼손으로 때린 경찰에 대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9. 14	수용
호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 등의 호송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	9. 14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환
단속 과정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호송과정 및 조사과정에서 설명과 사전동의 없이 촬영기사가 비디오카메라로 전 과정을 부당하게 촬영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방송촬영협조 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9. 14	수용
미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차량을 차단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현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0. 5	검토중
인격권 침해 등	00경찰서장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0. 5	수용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특별교양교육)할 것을 권고	10. 5	수용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진정인의 병원치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0. 5	수용
장비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00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장비사용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 의뢰	10. 5	검토중
부당한 체포 및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정인의 집과 차를 수색하고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작성 중 절도사건 관련 자술서를 요구한 피진정인들에 대해 서면계고할 것을 권고	10. 5	수용
경찰서 유치장 산모, 임신부 보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유치장 입감자들이 유치장 내 CCTV 설치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안내 및 고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수사책임자인 피진정인 박00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0. 26	수용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손가락 부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1. 16	수용
경찰의 폭행 등	폭언을 하며 체포명령을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00경찰서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1. 16	검토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자	이 행 환
집회금지 통보에 의한 인권침해	상급단체 등의 과거전력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금지를 통고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박00외 1명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1. 16	검토중
신변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전에는 물론 진정인 및 남편의 신변보호 요구 이후라도 진정인의 신변안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2. 7	수용
취임식 참여자에 대한 출입 제한	경찰관의 행사를 최소한 필요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2. 7	검토중
집회불허 및 경찰의 부당한 체증	00경찰서장에게, 신고되거나 신고하려는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집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2건 이상의 집회 사이에 장소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당사자 사이에 집회일시나 장소를 조정하도록 하거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그 충돌 및 방해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등으로 해당 집회가 최대한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	12. 7	검토중
색소 물대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색소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용기준, 절차, 교육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12. 28	검토중
과도한 모발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서 일률적으로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므로, 경찰청장에게 모발채취와 관련하여 절단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모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12. 28	검토중
인격권 침해	은행에 동행할 때 진정인의 얼굴과 수갑 찬 모습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노출시킨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00경찰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2. 28	수용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장구사용 등에 있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2. 28	수용
산모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구금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조치를 지연하여 부당구금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을 계고조치할 것을 권고	12. 28	검토중
부당한 모발 채취에 의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 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2. 28	수용

□ 구금시설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 ○○구치소장에게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화통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5. 21	일부수용
개인신상정보 유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 및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8	수용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구치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는 격리수용하는 등 전염병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14	검토중
경비교도의 접견참여로 인한 인권침해	○○구치소○○지소장에게, 경비교도대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10. 26	수용
교도관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0. 26	불수용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 침해	- 교정시설 출소 후 32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진료기록부에 건강검진 결과와는 다른 사실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 진료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	12. 1	검토중

□ 군 대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기소 휴직 중인 군 형사피의자 복직 거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	7. 20	수용
의무사관 후보생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권고	10. 26	수용
동원예비군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참모총장에게, 안보의식 설문지 인적사항 기재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11. 4	수용



□ 정신보건시설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면허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등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준수하고 향후 입원 환자들의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 21	수용
인권위 진정함 미개봉 및 시설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 직원들에게 진정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6. 12	수용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작업치료지침’ 을 준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8. 28	수용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9. 18	수용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전화제한을 폐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1. 6	수용
부당한 병원운영에 의한 인권침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전화사용 제한과 보호사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2. 18	수용
○○도립정신병원과 ○○병원 입퇴원 관련 인권침해	- 검찰총장에게 고발 - 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 부당이득환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 - ○○지사에게 위탁계약 해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 - ○○시장에게 정신보건법상 적절한 행정조치와 관리 감독 철저, 계속입원심사 관행 개선 권고	12. 18	검토중

□ 외 국 인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이중국적자 외국인 학교 복학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외국인학교에 휴학 중이던 피해자가 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8. 24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과잉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미등록 외국인인 진정인을 단속하는 과정에 긴급보호서를 호송 차량 안에서 제시한 행위, 필요이상의 과잉진압을 한 행위, 주거를 무단 진입하여 단속한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됨으로 이를 시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미등록 외국인 단속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인 권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10. 12	수용
출입국 관련 통보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이 사증발급 불허결정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적절히 교부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 체류자격이 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불법적 체류자격을 원상 회복하고 향후 진정인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권고 	10. 26	수용
국적변경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중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OOH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2. 1	수용
보호소 내 유아 의료 조치 소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로 단속된 경우에 아동보호를 위해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강제퇴거의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최소화하되, 보호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족보호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것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12. 28	검토중
부당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 직원이 미등록체류자로 단속된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진정인의 팬티를 잡아내려 신체검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2. 28	검토중

□ 기타 기관(지자체, 학교 등)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CCTV 설치 적법 절차 미준수	CCTV 설치 적법절차 미준수 관련 관리책임자 정보인권교육 수강 권고	8. 24	수용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시장에게, 시설개선명령 등 조치 권고 - OOS립사랑원장에게, 피진정인 직무교육 실시 권고 	8. 24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보안업무규정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 선발 단계에서 신원진술서 요구할 것 권고	8. 24	수용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 ○○소방서 감독기관인 ○○지사에게 주문 가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 -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9. 14	검토중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경고조치하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서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감독기관인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각서 사용 등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10. 12	수용
의료관련 및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시립 ○○의 마을 의료조치 관련자 주의조치 및 의사로부터 적절한 진료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료치료체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할 것을 권고	10. 26	검토중
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 신상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해당 학교장)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 	10. 26	수용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원고인 진정인에게 “버릇없다” 라는 발언을 한 ○○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11. 23	수용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고등학교장에게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자율학습 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	12. 1	수용
전학동의서 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의 전학동의서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	12. 28	수용
학생 두발 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중학교장에게, 현재 두발 단속 시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강제이발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12. 28	검토중

2. 검찰·경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가. 직권조사 : 피의자에게 재갈(수건) 물려 사망 관련 인권침해

2009년 4월 21일 새벽 피해자가 A경찰서 B지구대에서 당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재갈이 물린 후 같은 해 5월 2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9년 4월 23일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고인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줄곧 소변이 마렵다고 하거나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점, 피해자에게 물을 주거나 수갑을 풀어주었을 때 저항하지 않고 잠을 청한 점, 피해자의 구강 등에서 자해로 인한 상처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혀를 깨물어 죽겠다는 피해자의 행위가 실제로 자살을 의도한 행위라기보다는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수갑을 느슨하게 하거나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수단이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재갈 사용 부분에서도 CCTV 자료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3명의 경찰관이 한 명은 몸통을 잡고 2명은 재갈을 물리면서 고인을 움짱달짝하지 못하게 한 채 그것도 2개의 수건(가로 75cm x 세로 30cm, 가로 80cm x 세로 40cm)을 사용해 3분 37초 동안 고인의 입 부분을 짙어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이 사용한 수건은 입뿐 아니라 코까지 압박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이 조치는 통상 건장한 성인의 경우도 1~2분 정도 기도가 막히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술에 만취해 흥분 상태인 고인에게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는 방식은 경찰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이 아닌 점, 당시 관련 경찰관들이 이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점, 생명과 직결된 재갈을 사용함에 기본적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고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에 많은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셋째, 관련 경찰관들은 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고인이 저항을 멈추었고, 순찰



차에 태운 직후에 고인이 이미 소변을 보았고, 인분 냄새가 날 정도의 상태에 이른 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또한 피조사자들이 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더라면 고인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구급차를 기다리는 5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업무 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하였으므로 관련 경찰관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국민이 경찰에 기대하는 통상의 직무수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 관련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 그리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련 경찰서장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일부 수용하였다.

나. (주)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 중 인권침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공장점거농성 과정(2009. 5. 21. ~ 2009. 8. 6)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55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였다.

농성 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 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생명유지에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 의약품의 반입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소화전 차단 상태를 묵인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직원들과 회사 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들이 공장 내의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집단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위험발생의 방

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액을 다량 살포하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안전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전자충격기를 얼굴에 발사하고,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해 의식을 잃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의 경우 안전성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압 종료 후 항거불능 상태인 농성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폭행 및 가혹행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를 정당방위 차원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 자료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고, 위원회의 권고가 일부 수용되었다.

한편, 55건의 진정 내용 중 △외부인 공장출입 차단, 가족면회 불허,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 생필품 반입 금지(최소한의 식수, 식량 제외) 등은 경찰이 물리적 행사 없이 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무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기본권 침해에 이를 만큼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경찰헬기 저공비행 진정과 관련해, 저공비행으로 천막이 무너지고, 진정인들에게 공포감을 준 점 등은 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일대인 빌딩 12층(국회 의원 507계호) ☎ 02-25 96650(민원접수) ☎ 02-2596-9600(민원문의) www.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09년 7월 24일 | 담당: 이·, 조사국 조사운영과(전화 02-2125-9600)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마구 달리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원과 회사 직원 및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집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의약품, 음식물, 식수 등이 차단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성장 내부의 물 공급이 끊겨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경찰 헬기를 이용한 봉지 형태의 최루액 살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경찰 측의 시위진압 장비와 노동원들의 방어 도구에 의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노사 양측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간곡히 촉구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경찰과 회사 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열압 등을 끊고 있는 노동조합원에게 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물과 음식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 바란다.

둘째, 경찰은 자정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테이저 건) 등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시 바란다.

셋째, 노동조합원과 회사 측이 모두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이상, 물리적 충돌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은 성실한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2009. 7.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정되거나 「경찰항공운영규칙」에 필요한 경우 저공비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헬기의 저공비행이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운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은 2009년 8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진정인을 유치장에 수감한 후 같은 날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1분까지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머리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씌워 장시간에 걸쳐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으나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을 던져 유치실 창문을 파손시키고, 수도꼭지를 틀어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소란을 부린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과격한 행동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고 다른 유치인들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란을 부리는 진정인에 대해 경찰장구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이를 제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자해방지를 위한 특수거실인 보호유치실에 진정인을 유치하였음에도 머리에는 헬멧을 씌우고, 수갑 및 포승으로 다리를 뒤로 잡아당겨 온몸을 제압한 상태에서 2시간 27분여 묶어놓고 43여 분 동안 헬멧을 씌워놓은 것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유형력 행사로 보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필요 이상의 장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는 등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장구사용 등에 있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라. 용산 철거민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 관련 인권침해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와 더불어 이 사건을 수사한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관련 피의자인 철거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정 넘어 밤샘조사를 하고, 불필요하게 구치감에 장기간 조사 대기시키며, 진술을 왜곡하는 등 편파 부당수사를 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은 2009년 12월 철거민 사망자의 유족들이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였고, 검찰의 심야조사 등 부당수사 부분은 조사 심의를 거쳐 권고한 것이다.

검찰은 위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 확정 및 법리판단을 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하였고, 조사대상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조사내용도 방대하여 일부 심야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를 받아 실시하였고, 일부 피의자의 조사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은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의 면담요청을 전부 허용하였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철거민 피해자의 진술서, 검찰 수사기록, 서울구치소의 출정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심야조사 부분에서는 일부 철거민에 대해서만 심야조사 동의를 받았을 뿐, 이외 다수의 철거민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인권보호관의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장시간 조사대기 부분은 2009년 1월 20일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같은 해 3월 11일 구속 기소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하여 구치감에 출석시키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많게는 14시간, 적게는 5시간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기시켜놓고도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에 따라 변호인과 가



족 등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진술왜곡 등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사 종료 후 이를 확인하는 조사과정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철거민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밤샘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 부분은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 제40조,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철거민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수사지휘 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하고, 관련 소속 검사들에 대해서는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하여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현행 준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였고, 한편 진술왜곡 등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했다.

마. 경찰의 피의자 동의 없는 방송 촬영 관련 인권침해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2009년 6월 서울 인천 간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아무런 설명과 사전 동의도 없이 특정 방송사의 촬영기자로 하여금 비디오카메라로 부당하게 찍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을 단속하고 조사했던 경찰관들은 특정 방송사의 경찰 활동상을 찍는 프로그램 제작에 협조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동인을 대동하여 교통 단속업무를 하던 중, 진정인을 단속하면서 사전에 방송사 측 카메라기사의 소속과 신분, 촬영의 이유를 고지하거나 촬영에 대한 동의를 미처 받지 못하였지만, 진정인이 최초 적발장소에서 선처를 호소할 때 방송촬영 중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고, 촬영

에 대한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할 것으로 보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방송취지가 범죄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와 같은 방송사의 취재 요청을 검토하여 상부로부터 촬영행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송사 카메라 기사의 촬영을 허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방송사가 촬영된 영상자료를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등의 익명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진정인의 항의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방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첫째, 진정인의 얼굴 등 신상 정보와 피의사실이 다중의 제3자에게 공개될 방송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전에 진정인에게 그 촬영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단속 등 수사의 전 과정의 촬영을 허용하였으며, 둘째, 설사 방송기사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고 했더라도 진정인이 무면허 운전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신병이 피진정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이러한 사전고지 및 동의 의무를 위 촬영기사에게 부과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셋째, 당시 상급기관이 하달한 촬영협조 지시사항이 운전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소속기관 또한 피의자에 대한 방송촬영을 하는 데 사법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관련절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정인에 대하여 촬영기사가 부적절하게 촬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할 소속기관의 불명확한 감독행위는 헌법 제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초상권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하고, 방송촬영 시 피촬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바. 시위진압 시 중증장애인 휠체어 강제분리 관련 인권침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들이 “2008년 7월 중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집회시위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여 명을 경찰지휘관들이 전의경대원으로 하여금 강제로 분리시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위해를 가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경찰지휘관들은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서 강제로 분리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현장에서 알지도 못했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 언론보도 및 인터넷 동영상 기사자료, 서울지방경찰청의 위 집회시위 관련 민원처리 결과 자료를 토대로, 경찰지휘관들의 지휘하에 있던 전경대원들이 10여 명의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를 뒤에서 잡아 빼거나,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휠체어에서 강제로 분리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장애인들로부터 휠체어 사용을 방해하거나 분리시키지 않으면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불가피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볼 때, 첫째, 통상 전동휠체어는 종류에 따라 무게가 80kg 내지 10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다소 무거울 수 있으나 수동전환 후, 여러 명의 전경대원이 공동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들어 충분히 옮길 수 있다는 점, 둘째, 당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보다 훨씬 가벼운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점, 셋째, 당시 도로상에서 인도상으로 옮기는 이동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던 점, 넷째, 장애인을 휠체어로부터 분리시킬 때 사전 예고 없이 뒤에서 갑자기 잡아 빼거나 좌우로 흔들어 쓰러뜨리는 등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다섯째, 당시 진정한 등이 전동휠체어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을 뿐,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시 경찰지휘관들의 휠체어 분리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져야 할 차별금지 및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연유하는 위 진정한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이

동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경찰지휘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 진압 업무 시 중증장애인들과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 순찰차 호송 중 피의자 폭행관련 인권 침해

진정인은 “2009년 4월 ○○사거리 소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만류하다 피진정인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이외 체포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그리고 유치장 수용과정에서 병원진료 요구를 묵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관련 경찰관이 순찰차 호송 중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진정인이 당시 체포되기 직전 함께 있었던 진정인의 친구들이 진정인이 당시 신체상의 상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탔던 친구 C씨의 경찰 폭행 목격진술 녹취 내용, 진정인의 병원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서, 상해관련 사진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진정인과 경찰관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던 중, 건방지게 군다며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경찰관이 공무집행과정 중, CCTV가 없거나 타인이 볼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서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아. 유치장 방문조사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근거하여 유치장 내 시설 및 유치인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서 내 3개 유치장(○○, ○○, ○○)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기존 진정사건 사례의 유형 분석을 통해 조사범위를 특정하는 등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하였고, 그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진정이 많지 않았던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위원회가 기 권고한 내용에 대한 현장 반영 여부 등의 조사를 통해 진정 제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단에는 위원회 조사관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방문조사를 통해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직원·수용자 직접 면담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애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자 및 감독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고 시설 관계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유치장1〉



〈유치장2〉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여성유치인 탈의 후 대체의류를 마련하는 지침을 하달토록 하고,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인접견실 점검 후 시정하며, 보호유치실 내 CCTV 화면에 용변을 보는 유치인 하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점검 후 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시설 및 인적서비스 등)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보호유치실 앞〉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유치실 내부와 화장실〉



〈여성유치실 화장실〉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가. 구금시설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

생명의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자살률 증가와 함께 구금시설 중 교정시설의 자살 사망자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사망자가 1년에 약 16명에 이르고 있는데 구금시설 자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진정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자살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구금시설 자살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서면조사(자살자 현황,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자살예방 관련 시설·장비 및 의료인력, 자살우려자 선정 및 관리, 자살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실지조사(시설별 수용자 및 직원 각 30명씩 6개 시설 총 360명(수용자 180명, 직원 180명) 설문조사, 자살예방 관련 장비·시설 현장확인, 자살우려자 및 직원면담 등)를 실시하여 현재 구금시설의 자살방지 대책 등의 조치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생명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 자살방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것

○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자살 우려자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 정신보건 전문가와 상담전문가 및 교정당국이 팀을 만들어 참여할 것과 자살 우려자에 대해서는 전자영상장비(CCTV 등)를 통한 계호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면 계호를 강화하는 등 자살우려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

○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구금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자살사고 발생 시 자살방지 대책수립에 따른 원인 분석을 위해 적절한 분석방안(심리부검 등)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

나. 구금시설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 방문조사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금시설의 경우 전과기록 등 민감한 수용자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수용자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교도관 이외에도 관용부가 구금시설 업무(간병·행정·작업 등)를 보조하고 있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지불식간에 유출할 개연성이 있으며

로, 구금시설 내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정보 보관·취급·관리과정에서의 취약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 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진정이 다수 제기된 기관(○○교도소·○○교도소), 교도관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권고한 기관(○○구치소)의 교도관·수용자·관용부¹⁾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기록 관리실태 파악, 관용부의 운영상(배치현황 및 업무내용 등)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분야 분석,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부 ○○본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거실 이름표에 기재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관용작업취업자(이하 '관용부'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작업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용부의 작업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관용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관용부 특히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접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동청소부와 교무/분류/보안청소부, 영치/구매청소부, 간병부 등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 교정시설 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

1) 분류처우 업무지침(범무부예규 제841호, 2008. 12. 19. 개정)에 따르면, “관용작업취업자”란 교정시설의 시설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장에 취업한 수용자라고 정의하며, 통상 관용부로 지칭됨. 관용작업취업자는 지정된 작업장에 따라 간병부, 구매부, 구내청소부, 사동청소부, 세탁부, 이발부, 취사부, 영치청소부 등으로 불림. 본 보고서에서는 관용작업취업자라는 정식명칭 대신 통상 사용되는 관용부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 ()안에 작업장에 따른 사동청소부, 간병부 등의 명칭을 부기하여 관용부(사동청소부), 관용부(간병부) 등으로 표기하고자 함.



여 시행할 것을 권고

다. 노인복지시설 인권상황 개선 방문조사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각 시설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조사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중 수용인원,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경기지역 요양시설 2개소(○○보훈요양원, ○○노인요양원)와 양로시설(○○양로원)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 ○○시장에게

○○노인요양원의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및 사무국장 배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시장에게

○○양로원의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및 침실 일실의 합숙인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보훈요양원장에게

○ 시설 측면에 부착된 비상구 표시등 안내문구 글씨를 크게 하고, 노인의 동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층 복도 핸드레일 중간에 배치된 가구를 정리하고, 각 층에 설치된 CCTV에 CCTV 설치 목적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며, 4인 1실의 화장실 냄새를 제거하고, 2층 및 3층에 설치된 경사 강하식 구조대를 거주노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시설로 개선할 것

- 시설운영위원회에 요양시설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노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이를 충실히 기록·관리할 것

- 거주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종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인근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목욕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요양원장에게

- 화장실 및 식당주방 내에 설치된 콘센트를 덮개가 있는 콘센트로 교체하고, 일부 방에만 설치된 핸드레일을 모든 방에 설치하며, 관음실 장판을 교체하고, 외상·치매거실, 화장실, 목욕탕에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하며, 남자화장실에 세면대를 설치하고, 식당주방 잔반통을 덮개 있는 잔반통으로 교체하고 주방조리기구의 보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노후한 주방시설을 개선하고, CCTV에 CCTV 설치 목적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할 것

- 물리치료실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하므로 이를 개선하거나 보강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급식시간에는 식당 조리원들에게 위생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고, 노인별 용돈관리에 있어 자신의 통장에 수입·지출 및 잔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

-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료·처방에 따른 변화된 결과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협력병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불교 외 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장소를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고, 이불 등 침구류 세탁의 청결상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



□ ○○원장에게

○ 실내 조도가 낮으므로 조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거실내부에 보일러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남·여 구분표시가 없는 공용화장실에 구분표시 또는 공용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고, 2층 휴게실은 체력단련실로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시설을 개선할 것

○ 노인별 통장관리에 있어 자신의 통장에 수입·지출 및 잔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

○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노인을 위해 별도의 식단을 제공할 것과, 치매예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권고

라. 아동보호치료시설 인권상황 개선 방문조사(2008년 실시)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이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관계당국에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집, ○○청소년학교를 대상으로 조직, 예산, 인력 등의 현황과 갱생보호 지원실적 등에 대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검토 및 면접조사, 그동안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심층면접, 생활인을 위한 거실, 화장실, 욕실, 식당, 작업장 등 현장 확인 및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청소년의 집 경우에 시설환경, 분위기, 개인생활 보장, 부모와의 교류 등이 우수한 편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진정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시설 규칙 마련이 필요하고, ○○청소년학교의 경우에 수납공간 부재·의복 세탁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학습시간 및 교재 구비 미흡, 문화프로그램 전무, 강제적인 축구·바이올린 연주, 과도한 노동활동, 징계기준표에 의한 체벌 등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다.

마.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인권상황 방문조사

위원회 출범 이후 군병원 정신과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무하여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장병 의료분야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코자 2009년 6월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의결하고, 군병원 중 정신과 병동이 있는 3개소(전체 11개 중)에 대하여 각각 2009년 9월 28일, 11월 18일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는 준비된 설문지, 관련자 면담 등을 전문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방문조사 결과 치료적 측면에서는 환자에 대한 처우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약품보다 양호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조사 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10명 대 환자 36명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확보는 양호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2009/11/20 10:23



2009/11/20 11:04

방문조사단장에 대한 병원현황 브리핑 및 정신병동 내 조사 실시



2009/11/20 11:10

인권위 진정함 운영 확인



2009/11/20 13:26



환자가 먹는 약품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공간



보호실 문과 보호실 내부(벽과 창문은 충격대비 처리)



환자 휴게장소(프로그램도 진행)



환자 운동 공간

방문조사 결과,

-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질병으로 확정되면 의무전역 조치가

진행되고, 단기 입원환자의 경우도 2주 내에 안정과 치료를 통한 부대 복귀가 진행되며, 정신과 11곳의 평균입원일수는 45일로 장기 입원환자는 없으며, 보호장비 중 보호복 사용은 최근 3년간 실시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 2009년 입원환자 중 19.3%가 의무전역을 하였고, 대부분의 입원환자는 자대에 복귀하나, 복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 전체 입원환자 중 이병과 일병이 73.8%이고 이병이 42.7%를 차지하여 군 복무 초반과 전반기에 정신과에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원환자 중 신체형 장애의 경우도 34.9%이고, 정신 발육지체의 경우도 2009년 10월까지 73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대비 9%로 입영과정에서 보다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사되어 아래와 같이 권고를 검토 중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지도·감독하는 문제와, 응급입원 시 경찰관 대신 부대장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방안, 정신과에 부족한 간호장교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군 복무가 현저히 어려운 중증정신장애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영하여 당사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부대 지휘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 여군을 위한 입원 치료시설 마련, 간부 및 사병 대상으로 정신질환 및 장애의 특성 예방 및 치료, 정신장애인 질환의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군에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생기거나 재발한 사람들이 군 복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전역 후에도 계속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24시간 병동에서 환자들과 근무하는 정신과 소속 의무병들의 처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입원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재 주당 20분 정도인 산책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해당기관과 협의할 것 등이다.

바. ○○교도소 수용자 처우개선 등 인권개선 방문조사



○○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군 구금시설 환경·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침해 사건 사전예방과 ○○교도소에서 인권위 진정이 연간 0~6건 정도 되어 인권위 진정권 보장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인권위에 대한 진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 입소수용자에 대한 인권위 진정안내 교육은 교정교화과 담당직원에게 의해 매주 금요일(14:00~16:00), 위원회 관련법령, 진정의 방법 및 절차와 참모총장 청원제도 등에 대하여 보드판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수용자의 이동이 용이한 출입문 입구나 복도 등에 총 8개²⁾의 인권위 진정함이 진정안내문 및 진정서 양식과 함께 비치되어 서신이 투여된 경우 관련 담당 교도관에 의해 인권위원회로 전달되고 있었으며,

○ 방문조사 개시 전까지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은 총 25건으로 연 평균 3.1건으로 매우 미비하여, 인권위 진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전 수용자(97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육군○○교도소의 인권위 진정제도는 보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인권위 진정함 설치 및 운영



작업장 모습

2) 2009.12.21.자로 2,478명이 수용된 ○○교도소의 경우 인권위 진정함은 6개.

수용자에 대한 처우면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 거실 내 형광등 밝기를 조절하는 조도 조절기를 각 거실마다 설치하여 수용자 취침 시 이용하고 있고, 수용자가 기거하는 독거실 내부에는 양변기와 세면대를 갖추고 있고, 1인당 평수는 1.22평으로 ○○본부 지침인 1평보다 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 수용자 거실 내에 간이 화장실도 있으나 기결수용자의 경우 주간에는 거실 밖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수용자 간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 온수목욕은 주 2회 실시하고 있고, 구매와 관련하여 수용동 내에 매점(P·X)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발은 수시, 수용자 도서실(신간 등 6,000여 권), 수용자와 교도소 근무자가 같이 식사하는 식당, 종교시설(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각 별도 설치), 대운동장, 소운동장, 컴퓨터 16대의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의 시설로 일반 교도소에 비하여 수용 환경처우는 양호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혼거용 거실



거실내에 설치된 샤워장, 화장실



독거실 내부(책상, 세면대, 변기)



수용자가 전화하는 전화방(2대)



수용자가 식사하는 식당

의료 및 처우와 관련해서도

○ 수용자에 대한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급식을 적용하며, 교도관들도 식사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배식구멍을 통한 식사 제공의 비인격성을 극복하고 있고,

○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3명의 수용자가 받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009년 진료환자 수는 1,835명이고, 외진환자 306명은 ○○병원에 내원한 것이 확인되어 의료처우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진료태도’와 ‘순회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수용자의 서신 수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교도소 측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교도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는바,

○ 수용자의 계급적 존재를 고려하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일관된 지시·규정이 없는 점.

○ 연령과 계급이 비슷한 사병들로는 사병들의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교화·교정 등 직접적 수용자 관리는 간부가 담당하고, 외곽 경비 등 계호 업무는 교도사병이 담당하는 부서관 수준의 간부로 교도관 구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별도로 방문조사 기간 중 현 교도소장이 부임한 후 직접 수용사동으로 매일 들어가는 등의 지속적인 인권개선과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제기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도소와 간

담회를 통하여 시정되기도 하였고, 방문조사 내용을 ○○교도소에 송부하여 자체적으로 업무개선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통보하였다.

사.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매년 14만 명가량의 출소자 재범률이 52.3%에 이르고, 이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출소자의 재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소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갱생보호 분야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전무하였고, 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에는 빈곤계층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갱생보호와 인권'이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인권위법시행령」 제2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삼고, 같은 법 제7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복지공단의 지부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단지부와 민간시설은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알선하는 등 유사 기능을 제공하므로 ○○○○복지공단의 양해와 협조로 본 방문조사에서는 공단을 포함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의 선정은 출소자에게 제공되는 갱생보호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도록 △ 생활인 최대수용시설 △ 위원회에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되었던 시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조사 이동편의 등을 대상기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선정 기준에 따라 공단의 5개 시설과 3개 민간법인을 선정하였고, 본 조사에 앞서 체크리스트 등의 점검을 위한 예비조사를 2009년 11월 ○○지부를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향후 「인권위법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1)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현재 매년 대략 14만명이 출소하고 있는데 전과자의 재범률이 52.3%인 반면에 갱생보호기간 중에는 재범률이 0.39%에 불과하여 갱생보호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생활관 시설과 인력 및 예산 등이 제한되어 신청인원 대비 50% 정도에게만 숙식제공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갱생보호 활동을 통한 출소자 지원으로 재범 억제가 필요하다. 숙식제공을 포함한 갱생보호사업은 무의무탁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중요한 업무이므로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지부의 경우 2009년도 총예산 6억3300만원 중 국고보조는 3억3300만원으로 52%이고, 자체충당자금은 3억원으로 48%에 해당하는 금액은 찬조금이나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설의 직원이나 생활인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요인은 일일 식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이를 늘려달라는 것으로 이는 공단시설과 민간시설에 모두 해당된다.

공단 직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의 64% 수준에 불과하고, 인원이 부족하여 월 10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며,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고, 연가보상비도 연간 2일만 인정하는 등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훈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출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갱생보호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숙식제공과 함께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이다.

직업훈련 직종이 차량운전 및 정비에 70%가량이 편중되어 있고, 기계관련, 정보통신 관련 직종 등은 소규모이다.

직업훈련 예산이 부족하여 ○○○○보호복지공단의 2005년 총예산은 75억7000여만원이며, 이 중 직업훈련 예산은 5억7000만원 정도로 약 7.5% 수준이다. 직업훈련을 이

수한 훈련생들의 자격취득 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재범방지에 기여한다면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하기까지 6개월에서 2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거나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생계 기반이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안정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에 생계유지 대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여, 수형기간의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과 연계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장기간의 수형 기간 작업 및 교육훈련을 받은 내용과 출소 후 갱생보호 기간 중의 구직활동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3) 갱생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선 필요

공단 및 민간법인시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정의 규정에 갱생보호사업을 포함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원활히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개정하여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가하여, 법무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100% 공제되는 데 반하여 갱생보호사업 시설에는 기부금을 내어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액의 1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건비도 소요액의 75%만 지원하고, 노후차량 교체나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 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

4)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갱생시설 거주문제 정비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적절한 치료와 재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부와 ○○선교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가 상당수 생활하며 월1회 이상 감호소의 의료진이 방문하여 약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정기적인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갱생보호시설을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이나 법령에 정한 시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치료감호소 출소자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갱생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재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속 치료 및 재활을 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동 시설에서 보호와 재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는 지역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정신보건시설에서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연계조치가 시급하다.

5) 갱생보호공단의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 필요

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보호관찰법』 제71조에 근거한 갱생보호공단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방문조사 결과, 생활관의 열악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방문 조사한 공단 생활관의 경우 거실과 복도가 매우 추웠고, 담당자는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생활관을 춥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부 이용자 중 10명과 ○○선교회 절반가량의 생활인들이 치료감호소 출신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가. 병원 환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 오모씨는 “주치의가 처방하는 투약을 거부하자 보호사들이 강제적으로 진정인에게 투약을 실시하려다가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담당 간호사가 진정인에게 수차 약 복용을 설득하였지만 진정인이 투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병동보호사(3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사들이 다시 투약을 권유하였지만 진정인이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대항하는 것을 보호사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얼굴에 손이 스쳤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비록 투약을 거부하는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진정병원 소속 병동보호사들이 진정인을 강제투약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 이념) “모든 정신 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 김모씨는 “입원 기간에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보호자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상담 후 전화 사용이 언제나 가능하며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의 환자가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 병원 직원에게 동전을 요청하고 지급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입원환자들(8명)과 면담한 결과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전화제한을 폐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병원환자들의 전화사용 제한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점검하고 지도하였다.

다. 정신병원 입·퇴원 관련 직권조사

진정인 최모(남, 42세)씨가 2009년 5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며 A재단 소속 B정신병원장을 상대로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모씨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C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려는 사실 등 진정사항 외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9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A재단은 B정신병원,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C정신병원과 D노인전문병원은 ○○○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위원회는 A재단의 B정신병원과 C정신병원의 2008년 1월 ~ 2009년 9월 기간 중 입·퇴원 및 계속입원 관련 인권침해 사항 등을 조사했으며, 직권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력 기준 위반하여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과 전문의 인력 운영 기준을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B정신병원은 조사대상 기간 중 약 1년 4개월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약 200~25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약 1개월 동안 정신과 전문의가 전혀 없었던 기간도 있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2조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입원 절차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의료법인 A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소속 병원인 B정신병원 환자 19명을 C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C정신병원 환자 30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면서 자의입원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원회는 A재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

위원회는 A재단이 B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B정신병원 입원 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형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속입원 절차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의료법인 A재단은 B, C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55명(681건)의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했다. 또한 24명 환자의 경우에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속입원심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6개월마다 입원적정성 판단을 하여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절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재단과 소속병원인 B, C 정신병원의 의료인력 기준 위반, 입원 및 계속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실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검찰총장에게

의료법인 A재단 이사장, B정신병원장, C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A재단과 같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A재단의 진료비 부당 청구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 ○○○도지사에게

위탁병원인 C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 ○○시장에게

정신과 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

환자 입원 또는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5.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 이모씨는 ○○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년 7월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거리에 내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를 개시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외국인 근로자를 옷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도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미등록 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생후 3개월 된 유아 구금 관련 인권침해

몽골인 ○○은 2009년 6월 “진정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단속을 당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가 되었는데, 가족 중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보호실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및 자녀를 함께 구금조치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아동의 구금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예외적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어, 피해자가 아동일지라도 성인 미등록 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포함)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보호 외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로 구금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규칙에서 ‘아동이 익 최우선의 원칙’ 및 ‘필요 최소한의 구금 원칙’(아동의 자유 박탈 등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사용되어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구금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보호조치 없이 적정 기간(약 10일 내외) 기간 내에 자국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미등록 체류자의 속옷 내부를 들여다본 신체검사 관련 인권침해

2009년 9월 경기도 ○○시에서 단속된 진정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팬티를 잡아 내려 욕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위험물 등에 대한 사유가 아닌 단지 진정인이 작성하던 진술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신체검

사를 실시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러한 신체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진술서가 없어졌다면 재작성하는 등 별도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 신체검사의 수위가 진정인의 팬티 내부를 들여다보는 정도로 과한 점, 이러한 피진정인의 신체검사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신이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팬티를 잡아 내려 안을 본 신체검사를 실시한 행위는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6. 기타 기관(지자체, 학교 등)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가. 학생 강제 이발

진정인은 OO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8명으로 “OO중학교는 ‘앞머리는 5cm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교사)이 두발 단속 과정에서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2009년 12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교가 OO관내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학생들이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 중 시정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학생부장인 본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의미로 일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지만, 학교는 학생의 장애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 제한방법에 있어 대체수단(그린마일리지 제도³⁾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조치로,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였다.

나. 법정에서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판사의 인권침해 관련

2009년 4월 OO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원고자격으로 출석하였던 진정인은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말을 시작하자 판사가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질책하자, 만난 적 없는 40대 판사가 법정 경험이 없는 69세 노인인 자신에게 손아랫사람에게나 쓰는 표현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진정인의 변호사는 “당시 판사의 발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불쾌하였으며 본인도 역시 70대 노인이었으므로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사건 다음날 해당 소송사건의 변호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정인이 진정사건 제기 이전에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실명으로 월간지에까지 기재하였던 점, 피진정인 진술을 볼 때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증거 및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판사가 진정인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표현

3) 체벌 위주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 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음

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발언은 판사가 법정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발언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69세인 진정인에게 40대인 판사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섰다 할 수 있고, 진정인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피진정인의 법정지휘권한을 넘어 인격권 침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7.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최

가. 전문위원회 개최

200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을 개정하여 세분화된 전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 위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 구축된 전문위원회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조사국 소관의 전문위원회는 자유권전문위원회, 성차별전문위원회, 고용차별전문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자유권전문위원회는 검·경수사분과위원회, 군인권분과위원회 및 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조사 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권전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했다.

1) 자유권전문위원회 교정분과 회의 개최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권 취약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정인권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왔고, 2009년 6월 자유권전문위원회 교정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강제이발, 강제진료 및 강제급식, 구 행정법의 성차별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토론했다. 윤기원 전문위원장, 유남영 소위원장, 이영기 변호사, 이호중 교수, 전준형 소장, 정승환 교수, 주영수 교수, 심상돈 조사국장 직무대리 등 참석자들은 이발 여부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무관한바



이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금시설의 경우 일반 사회와는 달리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보증적인 지위가 있으므로 작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소측에서 강제로 음식 및 의료조치 하였다고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 행형법에서 남자 수용자만 이발 면도를 규제하는 것이 성차별인지에 대한 문제는 관련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등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2) 자유권전문위원회 검경 수사분과 회의 개최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권 취약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정인권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왔고 2009년 7월 자유권전문위원회 검·경수사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용산관련 진정조사 거부에 대한 위법성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기자회견 시 경찰의 불법연행 사건 등에 대하여 논의·토론하였다. 윤기원 전문위원장, 이상돈 교수, 김성수 변호사, 도재형 교수, 이경희 교수, 심상돈 조사국장 직무대리 등 참석자들은 용산관련 진정조사 거부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인권위의 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검찰 및 경찰이 조사협조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명이 부족하면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 인권위는 검찰권력기관의 상위에 있으면 안되며 과태료 부과는 위원회를 권력화하는 상징적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기자회견 시 경찰의 불법연행 사건에 관하여는 당시의 행사를 옥외집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자회견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쟁점이 있으나, 당시 대학생들이 40분 정도 행사를 진행하였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언론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자회견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참석인원이 100여 명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기자회견의 형식을 띤 옥외집회로 보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집시

법의 규정상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는 그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체포 연행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체포 연행과정에서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3)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2006년 이주인권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8명으로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는 「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련 분야별 진정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고, 2006년 2회, 2007년 4회, 2008년 5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장기 이주인권 과제의 개발과 이주인권 영역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는 2009년 2차례 개최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배우자를 위한 가족생활 길라잡이’ 내 성차별적 내용건, 산업연수생 퇴직금 미지급건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음에도 노동부가 위 사건을 일괄 내사 종결처리한 행위의 인권침해성 검토, 미등록 장기체류거주자 및 무국적자 제도개선 관련 정책 검토, 이주노동자협약 비준과 위원회의 역할 등의 안건을 검토하였다

나. 토론회 개최

2009년 10월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국내이행 국제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APF, 고문방지협회(APT), 우리 위원회 등 3기관이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 관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2009년 6월 개최 일정이 확정된 후 국제 전문가 선정,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토론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토론자 외에 참석인원이 90명에 이르는 등 동 선택의정서 가입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선택의정서에 대한 법무부·국방부·경찰청 및 외교통상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동 선택의정서 가입이 국제적 대세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또한 선택의정서 가입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



제3절 평가

2009년 위원회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활동 성과는 처리건수에서는 5,107건으로 2002년 1,365건, 2003년 3,137건, 2004년 4,931건, 2005년 4,132건, 2006년 3,250건, 2007년 4,757건, 2008년 5,228건으로 2004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2005년, 2006년 약간 감소한 뒤 2008년부터 5,000건을 상회하는 추세에 있다. 2006년부터 처리건수가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4월 6일 직제령의 개정으로 정원이 감소하였고 진정 접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00여 건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정사건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

장기 미결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진정사건 처리시스템 재정비로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인용건수가 2006년 이래 계속 증가하였고,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18.5%가 증가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합의종결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양 당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합의종결이 2008년 대비 145.8%나 급증했다.

2009년 위원회는 전년도에 이어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의 사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권리구제에 주력하고자 노력했다. 국민 인권상황의 개선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 취약 영역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성을 강화해 일상적으로 점검돼야 비로소 인권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와는 별도로 구금·보호시설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적 권리구제 활동을 펼쳤다. 이는 특히 향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가예방기구가 수행해야 할 방문조사의 역량을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그 방법을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인권증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인력감축으로 조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증가하고, 그 내용도 더욱 복잡화·다양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위원회 조사 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만족스러운 권리 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가해자에게는 인권 신장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며 나아가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개인 등이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진정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퇴직 등)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2005년 7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평등권

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009년 위원회는 총 1,685건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실시해 78건을 시정 권고하고, 85건을 합의종결시켰으며, 278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 특히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2009년에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여 711건이 접수되었다. 진정사건의 처리 면에서도 2008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합의종결 및 조사 중 해결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정 권고한 사항들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고, 권고 사항이 수용되도록 피진정인들을 설득하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남성주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사유의 임금차별사건을 조사·심의하는 대표적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임금차별 조사매뉴얼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금차별 판단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차별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 의무에 따른 현 대학 내의 장애학생 지원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학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와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2009년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단체 및 유관 정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은 물론,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9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065건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2,843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고,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2,060건(29.2%), 교육시설 등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522건(7.4%)이었다. 이러한 차별사건 접수 현황은 2009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 1,685건이 접수된 진정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531건으로 31.5%를 차지했고,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660건(39.1%),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 진정이 122건(7.2%)이었다. 2007년까지 고용차별이 위원회 진정사건의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고용차별 진정보다 6% 이상 많았고, 2009년에는 7% 이상 많았다.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장애 차별 진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 다수가 재화 등의 공급 이용에 관한 진정이었기 때문이다.

고용 영역의 경우, 총 531건 중 모집 관련 진정이 163건(30.7%), 임금이 44건(8.3%), 채용이 90건(16.9%), 해고가 41건(7.7%), 배치가 14건(2.6%) 접수되었고,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는 총 660건 중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관련이 293건(44.4%), 재화 관련이 201건(30.5%), 교통수단 관련이 84건(12.7%) 접수됐다.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 이용 영역의 경우, 총 122건이 접수됐는데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116건(95.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위 3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타 사건은 372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고용에서의 차별 (2,843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2,060건)					교육시설등 이용차별 (522건)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의포함	자금융자	퇴직	정년	교육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기관			
접수	2002	189	18	10	6	17	5	1	9	6	0	1	0	1	30	3	2	2	0	1	7	3	67
	2003	358	54	61	21	26	9	14	11	4	0	6	3	0	29	2	0	1	1	0	14	3	99
	2004	389	22	17	51	12	34	18	9	4	0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2005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0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2006	824	97	26	101	52	34	21	14	8	0	18	13	2	91	50	15	3	0	6	83	4	186
	2007	1,159	98	58	124	51	71	27	20	13	1	12	17	6	110	124	17	22	0	15	96	7	270
	2008	1,380	55	49	105	66	103	30	15	17	0	12	4	11	148	199	116	63	5	21	97	4	260
	2009	1,685	90	41	163	44	97	14	12	13	0	23	27	7	201	293	84	61	3	18	116	6	372
	계	7,065	582	307	661	318	439	142	126	77	1	87	70	33	800	768	245	166	14	67	488	34	1,640
	(%)	100.0	8.2	4.3	9.4	4.5	6.2	2.0	1.8	1.1	0.0	1.2	1.0	0.5	11.3	10.9	3.5	2.3	0.2	0.9	6.9	0.5	23.2

※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 ~ 2002년 12월 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나. 사유별 접수 현황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성별	성외지역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응모	혼인여부	임신출신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력	기타		
접수	2002	189	11	2	6	33	7	48	5	20	0	2	2	0	1	1	1	4	7	4	10	0	25
	2003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0	0	7	3	2	16	28	98
	2004	389	25	0	8	54	57	64	6	10	0	6	7	4	4	0	0	7	1	7	12	117	
	2005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	0	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2006	824	44	104	8	115	69	208	9	28	0	10	22	9	8	1	0	2	12	4	30	24	117
	2007	1,159	75	163	12	246	107	117	8	37	1	20	3	16	13	4	1	2	17	3	31	27	256
	2008	1,380	61	152	12	635	63	99	4	28	2	15	5	14	10	7	0	3	16	3	15	23	213
	2009	1,685	83	170	15	711	142	92	5	16	3	25	7	17	14	22	0	3	10	2	39	77	232
	계	7,065	388	654	77	1,933	556	1,000	62	177	7	127	59	80	67	36	3	26	95	24	169	239	1,286
	(%)	100.0	5.5	9.3	1.1	27.4	7.9	14.2	0.9	2.5	0.1	1.8	0.8	1.1	0.9	0.5	0.0	0.4	1.3	0.3	2.4	3.4	18.2

※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 ~ 2002년 12월 31일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2009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유에서 진정사건의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 접수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나이차별 사건으로 약 2.3배(63건 → 142건) 증가했다. 나이차별 사건이 증가한 것은 2009년 3월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2010년부터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모집·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10년에는 이와 관련된 나이차별 진정사건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 밖에 장애차별 사건은 전체 차별 사건 1,685건 중 711건(42.1%)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009년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685건으로 전년의 1,380건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접수 7,065건 중 6,558건이 종결 처리(92.8%)됐고, 507건이 조사 또는 검토 중에 있다.

종결 처리된 6,558건을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돼 제도 개선 또는 인권교육, 징계 등을 권고한 것이 509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7.7%이고,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종결된 사건이 188건으로 2.8%,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1,444건으로 22%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진정 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이 4,299건으로 총 종결건수의 65.6%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진정인을 설득하거나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체 조치가 이루어져 해결된 사건은 2002년 7건, 2003년 16건, 2004년 46건,

2005년 116건, 2006년 152건, 2007년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8년 257건으로 2007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은 278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기 각 이 하			
			권 고	징계권	합의종결	조정	기 각	각 하	이 송	조 중 사 지
2002	189	102	8	0	2	0	18	73	1	0
2003	358	296	30	0	3	0	48	215	0	0
2004	389	368	21	0	4	1	74	263	3	2
2005	1,081	837	55	0	7	0	121	650	2	2
2006	824	899	115	0	23	10	183	552	11	5
2007	1,159	1,253	111	1	37	3	171	901	22	7
2008	1,380	1,143	88	2	27	2	240	765	14	5
2009	1,685	1,660	78	0	85	1	589	880	9	18
총계	7,065	6,558	506	3	188	17	1,444	4,299	62	39

※ 권고 : 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 권고

※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2009년에 접수된 사건은 전년에 비해 305건 증가했고, 종결된 사건 수도 전년보다 517건 증가했다. 2009년 접수된 주요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등 시정을 권고한 사건이 78건, 조사과정에서 진정한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합의에 이르러 종결된 사건이 85건, 기각이나 각하 가운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사건이 278건으로 나타났다.

제도 및 관행 개선, 인권교육, 손해배상, 편의시설 개선 등을 권고한 사건 수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나이 19건, 장애 9건, 사회적 신분 및 기타 19건, 성희롱 10건, 성별에 의한 차별 2건,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하여 성희롱 접수건수가 증가(152건 → 170건)했음에도 권고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 구제의 목적에서 당사자가 합의종결로 처리한 사건(31건)이 증가한 데 있다.



나. 2009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차별행위에 대한 사유별 주요 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권고 현황

□ 성별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남성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성만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부부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남성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관행 개선 권고	8. 17	수용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	도우미의 주업은 전시관 안내와 매표 등이고 도우미의 업무가 반드시 여성이 수행해야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3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은 관람객 편의 등 고객서비스 업무가 여성의 직무라는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하여 직종을 분리·운영한 것임. 진정인들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9. 30	수용

□ 성희롱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00금고 직원의 성희롱	직원단합대회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든 진정인을 끌어안으려고 시도한 것, 연애감정을 표현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것, 진정인의 다이어리를 몰래 훑쳐보고 진정인과 남자친구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묻는 것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00금고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00금고 연합회 회장에게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권고	2. 23	수용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얼굴, 종아리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고 비공식적으로 성관계 제의를 의미하는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소속 회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5. 1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건축구조설계사무소 대표의 여직원 성희롱	도제식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축사무소 대표가 여직원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고 오히려 술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성적발언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향후 직장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5. 20	수용
00공단 동료직원에 의한 성희롱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장모가 젊으니 사위하고 같이 자도 되겠네” 라고 하거나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정 부위만 만져주면 된다’ 라는 표현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00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중간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6. 22	검토중
직장상사의 직원 성희롱	회사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진정인이 식당종업원에게 앞치마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서 “너는 가슴이 작아서 음식물이 묻지 않을 텐데” 라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9. 30	수용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	강제추행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나이가 40세인데 가슴 한 번 만진 것은 본인이 조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고 한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조사방법과 관련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30	수용
○○식당 지배인 등의 직원 성희롱	피진정인들이 노래방에서 진정인을 껴안고 블루스를 추고 입맞춤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10. 19	검토중
중고차 판매업체 사장의 광고업무대행자에 대한 성희롱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업무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애인” 이 되어 달라거나 “♥이런 거나 한 번 해보자구”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10. 19	검토중
00복지관장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희롱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호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고 밤늦게 전화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11. 9	검토중

□ 나이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에 의한 차별	30세를 넘긴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 및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우수한 자질과 강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3. 11	불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소방직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에 의한 차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에 따라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별표2]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3. 11	불수용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제공 시의 나이 차별	해당 회원의 소득, 직업, 연체이력, 자산보유 현황 등 개인신용상태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피진정인에게 연령에 의하여 리볼빙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 카드 업무지침」 제163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	6. 3	수용
국가정보원의 직원 채용 시 나이 차별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인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님.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한 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9. 30	검토중
대학교수 임용 시 연령에 의한 차별	기존 교수진보다 진정인의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지도능력, 대학 구성원 간의 관계, 자질 등이 떨어지거나 대학발전의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피진정인에게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기준" 전공심사표상 연령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전임교원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10. 19	수용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갈등 요소는 단순히 연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선·후임자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품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이는 직원을 채용한 기업이 직장 예절교육이나 복무관리 등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하여야 할 문제이며 업무상 필요한 체력에 대한 기준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음.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11. 23	수용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	통장의 업무는 통장이 관할하는 각 반장을 통하여 이뤄지고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노동강도가 과중하거나 반드시 60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피진정인에게 통장 위촉 시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12. 21	검토중

□ 장애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수교육 차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콘텐츠를 보완할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교재를 제공할 것 및 감독기관에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5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교통수단 이용 및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정책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할 것 등을 권고	3. 2	검토중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공용 설치로 인한 이용 차별	장애인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5. 26	수용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7. 3	불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7	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8. 28	검토중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광장 맞은편 공설시장과 ○○거리 사이의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9. 18	수용
장애로 인한 채용 차별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	11. 6	수용

□ 출신국가 및 인종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외국인을 이유로 한 인터넷 전화가입 차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금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진정인에게 요금수납 시 외국인에 대하여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거부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	12. 21	검토중

□ 용모·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색각이상자에 대한 경찰·해양경찰 채용차별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분야와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 별표5의 신체조건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11. 9	검토중



□ 임신 · 출산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출산한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 미흡	법무부장관에게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을 교정시설에 수용해야 할 경우에는 임신부실(영아 대동 시에는 양육유아거실), 산부인과 시설 및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수용하고, 그러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5. 1	검토중
출산을 이유로 한 전공의 추가수련 요구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들의 개별적 역량, 필수 교과과정 이수정도, 실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개월 또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이기보다 전공의의 수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신정할 것을 권고	5. 20	수용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학교장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하는 것임. ○○학교장에게 피해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7. 6	수용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가족마일리지 합산대상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항공마일리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8. 17	수용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충역 편입에서 양자 배제	병역감면에 대해서 입양된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임. 국방부장관에게 입양된 자가 일률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9. 11	검토중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교칙개정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교칙개정활동, 촛불집회에 참여한 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품행이 불량하다거나 타의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12. 14	검토중

□ 학력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 및 나이에 의한 차별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및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향후 행정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및 나이제한을 두지 말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향후 시행되는 각급 기관의 행정인턴 모집과정에서 학력제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 및 운영가이드를 수정할 것을 권고	3. 9	불수용
출신학교에 따른 기간제 교원모집 차별	피진정인이 출신학교의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라 기간제 교원 채용 응시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임. ○○학교장에게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간제 교원 채용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9. 16	수용

□ 병력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HIV감염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제한	AIDS환자는 승선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도록 할 수 있음에도 건강진단 항목에서 HIV감염 여부를 필수적인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HIV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감염인의 경우에는 국 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제7호와 제53조 제4항 별표3에 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로 개정할 것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별표3]의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에 따라 승선가능 여부 판정을 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 보유자가 항체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원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3	검토중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거부	단순히 B형간염 항원 양성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채용검진비 등 실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9. 16	수용
병력을 이유로 한 항공기 조종 업무의 부당한 배치	비행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진정인과 동승하는 조종사의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항공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정인을 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서도 안전한 항공운항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항공운항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안전운항을 도모하면서도 진정인이 비행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10. 19	불수용



□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상한 차별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급여체계에서의 등급으로 호봉산정의 근간은 '경력' 인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여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정규직 교원과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교육감에게 퇴직교육공무원 출신(연급 수령자에 한함)의 다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산정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5. 20	수용
운전원 기능직에 대한 교통비 미지급	피진정인이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운전업무를 하는 기능직들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5. 20	검토중
○○공사 관현악 단원 사내계시판 이용 차별	피진정인이 관현악단에 사내 계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관현악단원들에 대하여 사내 인터넷 계시판의 열람 및 게시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6. 3	검토중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5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임. 해당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	3. 30	○○환경시설공단 수용
		6. 22	
		7. 28	
		8. 17	
		9. 16	
별정직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차별	예비군 중대장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연령에 따른 체력저하의 정도, 근무상한연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무상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국방부장관에게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년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할 것을 권고	7. 28	수용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신용카드 모집인 계약 해지	파산신청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명의도용이나 대필 등 카드모집 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많다는 점에 대한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파산신청자인 진정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과 카드모집인이 파산신청자라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7. 28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지급 차별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행정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부가 위헌결정 전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있어서도 산업연수생에 대한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통해 산업연수생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7. 28	검토중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배제	공단 계약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시장에게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하여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 통보에 따라 조속히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	8. 17	수용
00군의 노동조합 간 차별대우 등	피진정인이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군지부 소속 노동조합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피진정인에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 홈페이지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권고	10. 19	불수용
참고인 중지 결정을 이유로 한 근로자 임용 지연	진정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피진정인의 행정직 채용에 최종합격하였고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임용을 지연하여 사실상 임용거부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임용할 것을 권고	12. 21	검토중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성별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불평등한 대우,



즉 직접차별이 포함된다. 이때 차별의 의도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남녀에게 모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기준이 특정 성의 집단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차별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속한다.

가.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차별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남성인 백모씨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직업과 소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은행이 본인 소득이 없는 여성 가사전업자의 경우 배우자의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 여부, 직업 및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성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직업이 없는 남성의 경우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지 혹은 단순 무직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경우 결제상환 불이행 등의 위험도가 증가하여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본인의 직업, 소득 또는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남성에게 가사전업자 자격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고, 경제활동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요청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사전업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실질적으로 공유하여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의 동의 및 결제능력에 따라 주부에게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피진정인의 입장과 같이 여성만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 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간 역할이 바뀔 수 있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가사를 전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고 하여 상환불이행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달리하는 피진정인의 기준 및 관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00은행장에게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게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00은행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공원 도우미에 대한 정년차별

진정인 강모씨(여) 등 5명은 ○○공원 사장이 다른 특수직의 경우 정년을 57세로 하면서 전원이 여성인 도우미의 정년은 30세로 정하고 있고 ○○공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9년 6월 다른 특수직들과 함께 퇴직하였는데 이러한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위로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공원은 도우미는 회장 내 입장하는 관람객의 모든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안내, 유도, 설명, 정리해주는 전문안내원으로 살아 있는 전시연출 또는 박람회 꽃이라 할 만큼 공원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요원이고 이러한 도우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불편의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결혼 적령기 이전인 3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도우미의 주 업무는 전시관 안내와 매표 등이고 이러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남성 또는 30세 이상의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은 관람객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인바, 도우미의 업무가 반드시 여성이 수행해야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3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은 관람객 편의 등 고객서비스 업무가 여성의 직무리는 성차



별적 편견에 근거하여 직종을 분리 운영한 것으로써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원 사장에게 진정인들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원 사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고용관계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제관계, 군대의 명령체계에서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

가. ○○금고 직원의 성희롱

진정인 장모씨(여)는 ○○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 부장 ○모씨(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하였고 진정인이 그러한 언동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모씨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결국 진정인은 퇴사를 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직장상사로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비록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과의 식사 및 술자리는 직장 내 관계에 비추어 진정인이 그 참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대부분 업무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직원단합대회에서 진정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든 진정인을 끌어안으려고 시도한 것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진정인에게 당혹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새벽시

간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으로서의 연애감정을 표현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진정인의 직장상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언동이며 진정인의 다 이어리를 몰래 들춰보고 이를 통하여 진정인과 남자친구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묻는 행위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진정인의 사적 영역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가졌으리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모씨가 직장 주변이 아닌 진정인의 집 근처에서 자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나 업무시간 후 진정인과 저녁식사를 명목으로 서울 교외로 나간 뒤 다시 진정인의 집 근처까지 따라온 일, 휴일에 진정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서울에서 대전까지 동행하여 다녀온 일 등도 직장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상황 자체로만 보아도 성적 언동이 존재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씨의 언동에 대하여 진정인이 거부감을 보이자 피진정인과의 직장 내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정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볼 때 피진정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진정인에게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진정인이 이로 인하여 결국 퇴사에 이르는 고용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금고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모씨를 징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금고 연합회장에게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각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고 이사장과 ○○금고 연합회장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나.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진정인 박모씨(여)는 직장 상사인 ○모씨(남)가 회사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모씨(여)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만지고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이



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그 직책과 경력, 연령 등으로 볼 때 직장 내에서 주요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대면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고 상대방의 손바닥을 굽는 행위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성관계 제의를 의미한다고 널리 인식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이미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직장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진정인과 같은 사무실로 전보되는 등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된 결과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 소속 회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다. 건축구조설계사무소 대표의 여직원 성희롱

○○기술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한 진정인 김모씨(여)는 같은 직장 소장인 이모씨(남)가 업무상 술자리 후 노래주점과 룸살롱에서 진정인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진정인에게 심한 성적 모욕을 주고 진정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진정인의 언동이 업무 관계자 혹은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진정인이 근무한 직장의 업무는 숙련성을 요하는 전문기술 분야로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많은 업무를 배우는 도제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동종 업계에서 인맥과 평판이 중시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매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

축을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간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언동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이 오히려 진정인에게 했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고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성이 듣기에 지극히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대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자신의 언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고를 하지 않고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향후 직장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라. ○○공단 직원의 성희롱

진정인 김모씨(여)는 ○○공단 주차관리부장인 ○모씨(남)가 진정인에게 “사위는 잘 있어? 장모가 젊으니 끌어안고 자면 되겠네”라고 하고 진정인과 동료 여직원에게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여직원) 젓탕이나 한번씩 만져주면 된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참고인 진술 기타 관련 기록 내용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발언한 내용들은 사실로 인정되며, 위원회는 성적인 언동이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진정인의 발언은 여성 직원을 동등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중간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직장상사의 성희롱

진정인 최모씨(여)는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진정인이 앞치마를 요구하자 같은 회사 전무인 김모씨(남)가 “너는 가슴이 작아서 음식물이 묻지 않을 텐데”라는 발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진정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되었으나 이후에도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성적 언동을 한 당일에도 위 노래방 공사현장을 다녀온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한 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

진정인 김모씨(여)는 본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 담당 경찰인 오모씨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고 진정인이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처녀도 아닌데 가슴 한 번 만진 거 가지고 무슨 여형사냐”라고 말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나이가 40세인데 가슴 한 번 만진 것은 본인이 조사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정한 위 발언에 대하여 여성 경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나이를 거론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발언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진술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졌다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만지던가요?”라고 질문한 것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 소속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방법과 관련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 소속 경찰서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 ○○식당 지배인 등의 여직원 성희롱

진정인 손모씨(여)는 ○○식당 지배인과 조리부장이던 ○모씨(남)와 ○모씨(남)가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진정인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거하여 ○모씨가 노래방에서 진정인을 껴안고 블루스를 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모씨가 노래방에서 진정인을 안고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모씨가 지배인으로 식당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여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여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과 ○모씨가 술에 취하여 진정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한 것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인 등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 ○○중고차판매업체 사장의 광고업무대행자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김모씨(여)는 ○○중고차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검색광고업무를 대



행하였고 위 중고차판매업체 사장이 방모씨(남)와 업무상 협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방모씨가 성적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업무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진정인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거나 “♥ 이런 거나 한 번 해보자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합리적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낀 이후 업무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 ○○복지관장의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진정인 나모씨(여)는 ○○복지관장인 김모씨(남)와 수안보 온천에 갔는데 목욕을 마친 후 김모씨가 진정인에게 호텔을 예약하였다며 들어가자고 하고, 진정인에게 밤늦게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참고인 등의 진술 및 이메일을 종합하여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호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한 것은 성인에게 한 제안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복지관 관장이고 진정인은 수습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의 제안을 단순한 남녀 사이의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두 사람의 권력관계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호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한 행위는 채용을 조건으로 한 성적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로 인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나이'는 '32세 미만' '24~35세' '20대'와 같은 특정 연령대뿐만 아니라, '연소자'나 '연장자' 등과 같이 상대적 나이를 가리키는 것과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등과 같이 나이와 연관된 것들도 포함한다. 또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즉, 연령에 의한 간접차별도 차별에 해당한다. 2008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9년 3월 동법이 시행되면서 위원회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를 하고 이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하며 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경찰청장은 순경,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사유로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입직과 동시에 최일선의 치안현장에서 범인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고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대의 체력적 조건이 어느 연령대보다 우수하며 응시연령 제한을 없앨 경우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이 고령화되어 경찰력이 약화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경찰 응시연령제한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존립 목적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순경의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사



회학적 검토를 통하여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하며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의 채용'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아울러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는 해당 연령대의 평균치로 이는 관리하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체력의 개인별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30세를 넘긴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 및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요구되는 우수한 자질과 강인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면서 소방업무는 화재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및 한해지원, 수해복구 등 생활성 민원 등으로 이뤄지고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의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및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는 격무를 수행하게 되고 사고현장에서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 요청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반 행정은 물론 소방시설, 위험물, 건축, 전기, 응급의학, 긴

급현장 대처기법 등 인문·자연과학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여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일정 수준의 연령제한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화재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각 개인의 관리 여부에 따라 건강과 체력이 큰 편차를 보일 수 있고 지적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판단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방방재청장에게(지방)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2]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제공 시의 나이차별

진정인 김모씨는 ○○은행이 신용카드 대금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만 25~55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행은 해당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 우수회원에게 부여되는 추가적인 서비스이고 기존회원의 경우 신용카드 가입 이후의 신용상태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카드업무 지침상 특정한 연령층에 대하여 리볼빙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 55세 이하 회원의 경우 2% 이내의 보편적인 연체율을 보이는 반면 56세 이상 회원의 경우 연체율이 3.5%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과거의 사용패턴 및 실적 등만을 가지고 산출되는 행동평가모형시스템으로는 현재의 소득수준 및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비록 금융기관이 자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신용거래제한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연령층의 연체율 3.5%를 규제하기 위하여 선량한 리볼빙 서비스 이용의 잠재적인 고객인 비연체자 96.5%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퇴직연령이 없는 전문직업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새로운 취업기회가 넓어지는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해당 회원의 소득, 직업, 연체이력, 자산보유 현황 등 개인신용 상태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연령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은행 카드업무지침」 제163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은행은 이를 수용하였다.

라.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용계급별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 및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쟁시험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최대 10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하므로 지나친 응시연령 제한으로 볼 수 없고 특정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충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응시연령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가 아니며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발절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한 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대학교수 임용 시 연령에 의한 차별

진정인 문모씨는 2008년 7월 ○○대학에서 실시한 ‘2008학년도 2학기 ○○과 교수 초빙’에 지원하였는데 ○○대학에서는 진정인의 전공심사 종합점수가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켰고 전공심사 시 전공심사표에 연령 평가 항목을 두어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학은 2008년도 2학기 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 통과자 3인이 모두 본교 ○○과 출신 동문들로서 학력과 경력 등이 유사하여 3인 모두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해당 학과의 전임교수진 5인의 연령분포, 학력이나 경력 등의 인적구성과 면접대상자의 인적 특성과의 상충 가능성, 상보 가능성, 임용 후 대학과 학과의 발전에 있어서의 예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면접대상자 2인을 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전공심사 시 연령평가 항목을 둔 것은 현재 내국인 교수들의 평균 나이가 49세로 고령화되어 있어 교수진의 점진적 세대교체를 통한 학과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 직업교육을 통한 중견직업인 양성이 목표인 전문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대의 지원자를 우대하여 가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로 변화하여가고 있으며 기존 교수진보다 진정인의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지도능력, 대학 구성원 간의 관계, 자질 등이 떨어지거나 대학 발전에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학 총장에게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기준’ 전공심사포상 연령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전임교원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학은 이를 수용하였다.

바.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진정인 임모씨는 38세로 2009년 10월 ○○판매시설의 납품 운전원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접수 담당자가 “어린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느냐”며 진정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절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현재 직원들의 입사 기간이 1~2년 이내이고, 1978년~1980년 생임을 감안한 것이며 특히 나이가 많은 부하직원이 나이가 어린 상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사례 등이 있었고 주요 배송 물품인 무거운 복사용지를 취급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여 직원 채용에서 연령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2009년 10월 납품 운전원 채용 공고문에 응시연령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인1조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해야 하는 납품 운전원의 업무 특성상 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연령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후임자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품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이는 직원을 채용한 기업이 직장 예절교육이나 복무관리 등을 통하여 예방·관리를 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므로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직원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

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진정인 강모씨는 ○○구 통장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장이 위촉하는 통장의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통장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례규정을 두는 이유는 통장이 각종 통지서 전달 및 관내 시설물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령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과 업무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서울특별시의 모든 자치구가 통장 위촉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통장은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반사회 운영, 성금모금, 관내 시설물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통장이 관할하는 각 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의 등에 참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노동강도가 과중하거나 반드시 60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통장 위촉 시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가진 적이 있다는, 또는 가질 것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제한·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를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욕·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수교육 차별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원격교육연수의 강의 내용 중 일부가 교육교재로 대체됨에도 교육교재가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강의내용을 마우스로 클릭해야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제작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e-러닝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도표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스크린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키보드만으로는 모든 학습내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교재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교육·훈련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GA)』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콘텐츠를 보완할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교재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GA)』을 참고하여 장애

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공용설치로 인한 이용 차별

진정인 박모씨(남, 52세)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시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해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적용의 완화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시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시에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다.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B장애인단체에서는 “2박3일 일정으로 MT를 가기 위해 A보험대리점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위 회사는 비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싸고 보장한도가 높은 상품을, 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제공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보험대리점이 여행자 보험 상품을 모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했고, 장애인은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 없이 비장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나 보장한도가 불리한 보험 상품을 장애인에게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보험 상품을 장애인에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A보험대리점에 인권교육을 받을 권고했다.

라.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진정인 김모씨(여, 45세)는 “진정인의 자녀(남, 21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의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마.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정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시시설관리공단이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직권면직시켰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치의 소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진정인 정모씨(남, 38세)는 “○○역 ○○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 횡단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역 ○○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도로 횡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최소 9분에서 최대 14분이 소요되어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것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도로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도로는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므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사. 장애로 인한 채용 차별

진정인 양모씨(여, 29세)는 '서울소재 A 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여 첫 출근하였으나, 회사 대표는 본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

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아니며, 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진정인을 해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영역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피진정인 홍보 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출신 국가’는 과거의 국적, 즉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이전의 국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국적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혼인이나 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된 자를 과거의 특정 국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



별이고, 특정한 기본권의 영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내국인에 비해서 또는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 전화이용대금 결제방법 차별

알○○○씨는 2009년 4월 ○○통신회사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은행통장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통신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요금 납부만 허용하고 은행자동이체는 허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요금 미납 시 연락을 취하기 어렵고 거주지 또한 불분명하여 미납 안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부득이 요금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금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요금수납 시 외국인에 대하여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거부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8. 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나 외모, 근력, 키, 몸무게, 민첩성, 심폐기능 등의 신체적 특징, 조건, 능력 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대우로 그러한 대우가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색각이상자에 대한 경찰·해양경찰 채용 차별

진정인 김모씨 등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경찰은 치안현장에서 범인 추적·검거, 시위진압, 대간첩 작전 등 격렬하고 신체접촉이 많은 외근 위주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총기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위험한 직종이므로 일정한 신체조건이 요구되고 특히 교통신호 인식, 도주차량의 판별·추적, 범인 검거 시 인상착의의 신속한 판별 등의 직무수행에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약도 색약자의 경우까지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경비구난, 해상교통관제,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해상에서 수행하는데, 함정 근무 시 항로표지, 등화, 형상물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으로 색각이 정상이거나 약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 시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색각이상의 정도를 분류하는 약도, 중도, 강도 등의 구분은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나아가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모든 업무 분야의 채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 별표5의 신체조건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9.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했다는, 또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 사유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성별’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신·출산을 한 여성과 임신·출산을 하지 못하는 남성과의 불합리한 차별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출산한 여성 수용자의 모성보호 미흡

진정인 김모씨는 2007년 12월 27일 임신 17주 상태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08년 5월 22일 ○○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을 즈음 임신 36주를 경과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같은 해 6월 11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하던 중 같은 해 6월 27일 구속집행정지가 끝났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에게 구인되어 ○○교도소를 거쳐 ○○구치소에 신생아와 함께 재수감되었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산후 2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산모를 서둘러 구인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한 것은 출산한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진정인에 대해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바로 형집행을 했어야 하나 당 청에서는 진정인의 출산이 임박했음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출산한 이후 약 2주간을 기다렸고 진정인을 구인하기 전에 출산병원 등을 상대로 진정인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진정인이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추가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도망할 염려가 있어 소환하지 아니하고 수사관들이 출장하여 형을 집행한 것이며 구인 당시 진정인에게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무부장관은 형집행정지 신

청을 한 경우 예외 없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왔고 또한 형집행 대상이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동하고 입소할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 여성 수용자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고 교정기관에 수용된 이후에는 임신부인 수용자는 환자거실 수용, 의무관의 수시진료, 온수 추가급 등 환자에 준하여 처우하고 있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산부인과 외부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 후 유아를 대동한 여성 수용자는 양육유아실에 수용하여 난방, 채광, 통풍, 의료, 목욕, 수유 등의 면에서 유아 보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양육유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양육유아에 대한 의무관의 수시 진료 및 외부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유아를 대동한 여자 수용자에 대해 1시간 실외운동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는 여성 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 간호와 치료를 위한 특별한 설비들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국내 교정시설 가운데 산부인과 시설 및 의무인력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산전산후 검진은 외부진료를 통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재 외부진료를 위한 호송과정 때문에 임신부인 수용자들이 적절한 외부진료를 꺼리게 되고, 이는 곧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임신부인 여성 수용자는 도주의 우려가 낮아 「계호업무지침」 제217조 제4호에 의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 등 외부진료를 위한 호송 과정에서 공중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는 진정인에 대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자체적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는데, 진정인이 형집행정지를 통해 스스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은 출산 후 수감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충족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결국 진정인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을 교정시설에 수용해야 할 경우에는 임신부실(영아 대동시에는 양육 유아거실), 산부인과 시설 및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수용하고, 그러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출산을 이유로 한 전공의 추가수련 요구

진정인 김모씨(여)는 대한병원협회장이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규정에 정한 전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하지만 출산 등의 사유로 6~9개월 정도의 추가수련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진정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병원협회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일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비록 전공의에게 근로자로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하나, 출산 등의 사유로 전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자질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적합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경우

에는 추가수련이 없고,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수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며 또한 전공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분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피교육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수련의 목적이 전문의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들의 개별적 역량, 필수 교과과정 이수 정도, 실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수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률적으로 6개월 또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이기보다 전공의의 수련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다.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진정인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학교 측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퇴를 종용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하였고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제3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며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또한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으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러운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으며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10.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가족상황은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돌봄이나 의존의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가리키며 가족형태는 돌봄이나 의존 등의 관계적 요소들에 의해 분류되는 가족의 종류라 할 수 있다. 이때 가족은 혈연 이외에 결혼이나 입양 등에 의한 가족도 포함한다. 여기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대우로서 그러한 대우가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한

진정인은 ○○항공회사가 자사 회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를 운영함에 있어 가족관계에 있는 회원 간에 마일리지 합산을 인정하는 제도(이하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산을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모친계 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이용실적이 높은 고객을 우대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은 고객의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항공사에 경영상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차별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관계의 증명을 부친계 위주로 하고 있어 진정 내용과 같이 시행하려면 내국인과 외국인 고객 간 가족마일리지 적용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따라 받는 편익은 양도받을 수 있어 고객에게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고 반면 마일리지 합산 대상 가족의 범위를 넓힐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한 고객이 보유한 소액 마일리지의 활용 여지가 커짐으로 인하여 상용 고객 우대라는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항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의 운영에서 가족마일리지 합산을 시행할 것인지 혹은 합산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는 항공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는 이미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유효기간을 경과한 항공마일리지의 자동 소멸이나 항공사의 사정에 따른 혜택 제공의 일부 제한 등 피진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고 또한 이미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편익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는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와 별개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는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임의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만을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영상 재량의 영역을 넘어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마일리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충역 편입에서의 양자 차별

진정인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배우자이자 친자가 없는 큰어머니에게 입양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유자녀로 인정되었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함에 있어 입양된 자를 제외하고 있고 이는 입양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현행 민법 하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입양 및 과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전사상자의 양자로 입양되어 병역을 감면받은 후 다시 과양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입양

된 자는 보충역 편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한 정도가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자녀에게 병역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나 일단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그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 적용 대상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양 시점으로부터 병역 처분 시점까지 일정기간 이상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두거나 실제 양부모와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면탈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잠재적인 개연성만을 근거로 입양된 자 모두를 친자와 달리 취급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정도가 병역 감면에 못지않게 큼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양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병역 감면에 대해서만 입양된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입양된 자가 일률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1.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대우나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이나 관행이 특정한 사상·정치적 의견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상’이란 세계관적 확신을 말하며 ‘정치적 의견’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차별사유가 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표현의 형태와 상관없이 있다.



□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진정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9년 7월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고, 진정인이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담당 부장교사인 ○○고등학교 생활체육부장 교사의 추천이 필요하였는데 위 교사가 진정인이 교칙개정 활동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08년 5~6월경부터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2008년 10월경에는 학교후문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학교 후문을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후문을 개방하라고 항의한 바 있으며 2008년 11월경에는 '입시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표찰을 구입하여 재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착용하도록 선동하였고 2009년 3~4월경에는 가칭 '교칙개정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임의로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며 "저희 학교에 반란 불순세력이 되었으며 내·외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압력을 견뎌내야 했다"는 다소 과장되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 때문에 진정인이 학생회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보추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과 후였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의 집회 참가였으므로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 학생회장 후보등록의 결격 사유인 품행불량이나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의 행동을 규정하는 교칙의 경우, 학생들에게 규범으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학생들 스스로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정인은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가 있는 교칙내용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교칙개정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동 조항 「일본평」,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

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진정인이 교칙개정운동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반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활체육부 모 교사가 진정인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진정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밖에도 후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학생회 간부로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취한 행동이라 할 수 있고, '학생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표찰에 적힌 '입시지옥'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경쟁 풍토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며 학생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과격한 용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생회장 후보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학력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하거나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학력이나 학벌을 소지한 집단이나 이에 속한 개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관념에 따르면 학력에 따른 임금·소득수준·취업기회·승진 등의 차이는 일정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학력이 개인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또는 무관하게 평가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가.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 및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

진정인은 2008년 12월 ○○○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던 자로서, 행정안전부와 ○○○도시건설청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



하'의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졸업자 포함, 이하 같다)'로 지원자격을 한정하였다며 이는 나이와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시건설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이하 「운영가이드」라 한다)에 의하면 행정인턴의 학력은 대학 졸업자이고, 나이는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각 부처에서 담당직무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인턴십은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으로, 특히 만 29세 이하 대졸 청년층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적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근거하여 만 29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였으며 학력별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이 이미 시행중일 뿐만 아니라, 중·고교 중퇴자, 인문계고 졸업자,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학력요건에 따른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 중이고 이번 행정인턴십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설계한 것은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의 맞춤형 사업으로 그 취지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예시로 제시한 업무들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개별 부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 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는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하여 학력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행정인턴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이

유만으로 국가기관의 학력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나이차별과 관련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혹은 이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이를 개정한 「연령차별금지법」은 특정 연령 계층에 대한 특별한 취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이 허용하는 국가의 역할은 취업알선이나 교육·훈련의 강화, 혹은 이들 연령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거시적으로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연령차별적인 채용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법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제시한 ‘고용정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나이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시건설청장에게 향후 행정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및 나이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향후 시행되는 각급 기관의 행정인턴 모집과정에서 학력 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 및 운영가이드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나. 출신학교에 따른 기간제 교원 모집 차별

진정인은 2009년 1월 ○○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자료,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교 성적을 서류전형에 반영하면서 출신고교의 소재지에 따라 점수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도 평준화된 지역의 고교와는 엄연한 실력차이가 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심사를 할 경우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을 출신 고교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우수 교원 채용은 교원으로서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학습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성적이나 교원 자격증 등으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후 진행되는 면접이나 공개수업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아울러 교원의 자질은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윤리의식 등도 중요한 덕목인바, 기간제 교원 채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각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면서 서류전형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고, 피진정인 기간제 교원채용 규정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 내의 우수한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 평준화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보다 성적이 우수하여도 서류전형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학교장에게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규정하는 현행 기간제 교원 채용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13.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질병 이력을 이유로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진정인은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박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AIDS'라고 한다)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원 채용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의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73호) 제4조는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선원의 건강진단 내용 및 건강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동 협약에서는 건강증명서에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 다른 승선자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선원법 시행규칙」의 건강진단 관련 규정은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장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 공동생활, 주야 교대근무, 유럽 미주지역 등 국제항해에 따른 시차, 빈번한 외국항만 입·출항시 대기근무 등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인의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원이 스스로 취업을 자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HIV 감염경로는 성 접촉으로 인한 전파, 수혈 등에 의한 혈액 및 혈액부속물에 의한 전파, 수직전파(산모로부터 태아)가 대표적이며 일상생활에서 땀, 눈물, 침 등을 통해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증상이 나타난 HIV 감염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항레스토로바이러스 요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면역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혈중 바이러스 수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며 1998년 ILO와 국제보건기구가 채택한 '선원의 승선 전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지침서'는 HIV 양성 결과는 선원 업무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것이 HIV 감염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그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일 수 있는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과 같은 조항을 적



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제7호와 제53조 제4항 별표3에 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로 개정할 것, △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별표3]의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에 따라 승선 가능 여부 판정을 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 보유자가 항체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원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거부

진정인은 2009년 7월 피진정인 회사에서 채용면접을 보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째, 업무의 성격상 해당 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둘째, 법령상 질병이나 질병에 따른 전염 등을 이유로 근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사업주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경험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기준과 건강·안전 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상 고유한 재량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상태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 전염병으로서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한간학회가 우리 위

위원회에 제출한 지문의견에 의하면 B형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고 아울러 피진정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B형간염 항원 양성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채용검진비 등 실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500만을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다. 병력을 이유로 한 항공기 조종업무 부여 차별

진정인은 2000년 ○○항공에 수습조종사로 입사한 후 2003년 10월 뇌경색 발병으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에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항공신체검사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조건부 적합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항공기 조종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공신체검사 기준은 항공안전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이고, 민간기업인 피진정인이 이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조건부 적합 항공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진정인을 비행임무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조치이며 특히 기내 화재, 기상악화, 기기 고장 등의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조종사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력을 하는 것은 안전 운항의 필수요소로 한 명이 비행불능 또는 비행착각 상태에 놓이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은 2003년 10월 뇌경색증 발병 이후 2009년 9월까지 10회 이상 전문의의 추적조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에 따라 이후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가능하고 「항공법」 제



74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218조에 따르면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운항승무원으로 최소한 2명 이상의 조종사(기장과 기장외의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항공법」 제46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는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편성에 따른 최대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종불능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비행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진정인과 동승하는 조종사의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항공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정인을 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서도 안전한 항공 운항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항공운항 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안전운항을 도모하면서도 진정인이 비행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14.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분리해서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신분’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장기간 접하는 지위로 일정한 ‘등급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를 의미하는바, 이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기간 접’한다는 것은 해당 지위가 하나의 표시처럼 그 점유자를 오랫동안 따라다닌다는 의미 이외에 낮은 등급의 사회적 평가를 받는 지위를 접하는 자가 그 지위로부터 벗어나기가 일정 정도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기된 19개의 차별 사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특정

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기타' 차별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기된 19개의 차별 사유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로서 구분되는 비교 집단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비교 집단 간의 구분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힘에 의한 것이며, 해당 구분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상한 차별

진정인 이모씨는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 외 다른 기간제 교원에 대해 14호봉 상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교육과정운영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이중지급 제한 목적으로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제한만을 규정할 뿐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 외 기간제 교원의 호봉 제한에 대해 규정한 바 없고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급여체계의 등급으로, 호봉 산정의 근간은 '경력'인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여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정규직 교원과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도교육감에게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연금 수령자에 한함) 외 다른 기간제 교원의 호봉이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산정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운전원 기능직에 대한 교통비 미지급



진정인 박모씨는 ○○○주식회사에서 관리직과 사무직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진정인과 같은 운전 업무를 하는 기능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급여에 명시된 교통비는 영업활동비 성격으로 관리직군에만 지급되는 수당이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군과 달리 관리직군의 경우 거래처 방문, 관공서 심방, 금융기관 방문 등의 업무 수행 시 교통비 소요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임금협약서상 영업활동비에 교통비와 중식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비는 관리직군에만 지급하고 중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동 임금협약서만으로는 관리직군에 지급되는 교통비가 영업활동비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고 교통비가 영업활동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비가 실비변상의 영업활동비라면 실제로 소요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실제 교통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정기·정액으로 지급되어왔고, 관리직군 직원 중에서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방문, 관공서 심방, 금융기관 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빈번하게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전혀 하지 않는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모두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오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는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운전업무를 하는 기능직에도 교통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공사 관현악단원 사내게시판 이용 차별

진정인 김모씨는 ○○공사에서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달리 관현악단원에게 사내 인트라넷의 게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반 직원과 달리 관현악단 단원들은 매일 상시적으로 회사

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출연, 연습 등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주당 3일)하고, 근로 장소도 대부분 연습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고 개인별로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ID를 제공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 많지 않으며 다만, 출연(연주) 업무 이외에 서류결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등 직책자와 노동조합 집행부에는 ID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원들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내인트라넷 게시판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고 사내인트라넷 게시열람을 일부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사무공간, 활용도,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주 3일 출근의 경우에는 오히려 출근하는 동안에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회사와 직원들 간 소통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사내 게시판을 열람하고 게시하는 목적은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게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추가 소요 비용이 많지 않고, 사실상 비용 문제보다 노사협상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만큼 비용 부담이 정원 외 직원에게 게시판 열람 및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정보 접근이 일괄 차단된다면 정보의 습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정보의 접근의 근본적인 목적은 의사소통 실현에 있는 것으로 사내 게시판 사용은 단순한 알림판 사용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이 관현악단에 사내 게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관현악단원들에 대하여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별정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제한

진정인들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6에서 별정 군무원인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하 '별정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한다)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5년 이전에 임용된 예비군 중대장은 일반 군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받고 있고, 2009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과 비교할 때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 시에 지역 방위를 위하여 예비군을 지휘·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주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군무원과는 직무의 성격이 크게 다르고 이에 따라 종래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하였던 지역 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1995년부터 별정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하였고, 별정 예비군 중대장이 일반 군무원과 같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 고령으로 인한 체력 저하 등의 문제로 전투 현장을 지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고, 연령에 따라 일정 부분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이 55세 전후의 체력적 차이가 직무로부터의 배제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무상한연령은 정년과 달리 기준 연령까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직에 있을 수 있는 상한연령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상한연령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기적 체력검정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면직 사유로 두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별정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 군무원의 정년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마.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신용카드모집인 계약해지

진정인 이모씨는 2008년 5월부터 ○○카드 ○○영업소에서 신용카드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으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 8월 진정인이 파산신청자라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카드 측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파산한 모집인의 자격을 ‘신용카드 회원모집 신용설계사 계약서’(이하 ‘계약서’)에 반영하였고, 계약서 제3조 제2호는 등록된 모집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파산신청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명의 도용이나 대필 등 카드모집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 적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2항 제2호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4 제2항은 동법 제14조의3 제2항 각호의 1, 즉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양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제3조 제2호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확장해석하여 단지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진정인에게 적용한 행위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였다. 또한 파산신청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명의 도용이나 대필 등 카드모집 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많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과 카드모집인이 파산신청자라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바.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관련 노동부 방침에 대한 개선권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게 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노동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여 퇴직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에 관하여는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후 노동부가 동 지침을 폐지하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관련 방침」을 신설 하였으나 동 방침은 위헌결정 이전의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일괄적으로 내사종결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방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며 위헌예규의 법규성 인정에 관한 어떤 입장에 따르더라도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예규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없고,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체불금품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내사종결 사건의 경우 발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노동부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 등의 사건이 반드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주된 원인이고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임금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때 사실상 체불금품확인원이 증빙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현실상 임금대장이나 각종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노동부가 위헌결정 전에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사 없이 해당 사건을 일괄 내사종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불금품을 확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369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통해 산업연수생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배제

진정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2월경에 모든 직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3월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임금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2009년부터 계약직 및 기타직원(이하 '일용직'이라 함)만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공단 계약직 및 일용직은 시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나 정원관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단 직원의 개인성과급은 공단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공단 내 각 직종 및 직원 간 업무분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및 일용직이 공단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 ○○시 의회 및 ○○시의 승인을 거친 2009년도 사업예산서(48쪽)에 전 직원의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점, 더구나 피진정인 ○○시장이 계약직 및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의 계약직, 일용직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하였고, 또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별도의 성과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피진정인 ○○시장의 주장대로 공단 소속 직원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급여체계 기준으로 개편하였다면



마땅히 공단 계약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장에게 계약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2008년도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를 다시 결정하여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 ○○시장의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조속히 개인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아.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모씨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 지부장인 김모씨는 2007년 9월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군지부'(이하 '○○군지부'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군지부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 측에서는 ○○군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차단조치는 ○○군지부가 홈페이지 게시 글에 대한 아이피 추적을 원천봉쇄하여 홈페이지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사법기관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군지부 홈페이지의 익명 게시 글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이미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군지부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역시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나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군 홈페이지와 링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군수에게 ○○군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자. 참고인증지 결정을 이유로 한 근로자 임용지연

진정인은 2009년 5월 ○○공단 행정직 직원 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진정인이 참고인증지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임용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참고인증지가 임용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향후 진정인에게 결격사유가 생겨 임용을 취소하게 된다면 인사 운영이 불안정하게 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어려우며 당초 채용공고시 “임용시기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순차적으로 임용, 다만 공단의 필요에 의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대기기간 중에 진정인의 사건이 해결되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형사소송의 피고인도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수사 중단 상태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업무 공백 등이 생기고 충원·교육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불이익 가능성은 진정인이 현재 임용 지연으로 겪고 있는 불이익과 비교형량 되어야 하며 참고인증지 사건 해결 여부는 진정인에게 달려 있지 않는데 피진정인은 재량으로 최장 2년의 대기기간을 정하고 참고인증지 사건이 해결되면 대기기간이 종료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기기간 만료로 채용이 취소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참고인증지 결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임용을 지연하여 사실상 임용 거부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임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위원회는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정년을 차등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정년을 차등 규정하는 것이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상의 차이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별·직종별로 채용자격 기준이 다른 것이 직급별·직종별 정년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기관에서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해당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5. 간담회·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2009년 위원회는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 시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차별 시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표 2-4-5]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연번	구분	주 제	일 시	토 론 내 용
1	간담회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관련 전문가 간담회	2. 26	○○신학대학교에서 진정인이 소위 이단 종교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에 대하여 논의
2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4.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효적 법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3	MOU	조사국-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8. 14	MOU 체결 내용 : 장애차별과 관련한 국내외 판례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법령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지원
4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토론회	11. 16	웹 접근성 정책담당자, 웹 개발 실무자, 장애당사자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연번	구분	주 제	일 시	토 론 내 용
5	간담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9. 9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의 일환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 현실적인 어려움, 위원회 정책검토 방향 및 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토론
6			11. 5	1차 전문가 간담회의 후속으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학교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한 추가 논의
7	간담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정책관계자 간담회	11. 25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검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담당자들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임신한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 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
8			12. 23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1차 정책관계자 간담회 후속으로 2차 정책관계자 간담회 개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
9	토론회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12.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교육권에 미친 영향, 교육권 변화정도, 관련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
10	간담회	사관학교 입학연령 제한 관련 관계자 간담회	12. 14	사관학교 입학연령을 만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국방전문가 및 연령차별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하여 연령과 사관학교의 교육 및 졸업 후 장교임용과의 관계, 사관학교 입학연령 제한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11	간담회	나이차별 판단기준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12. 16	201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른 법적 검토 및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12	심포지엄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	12. 2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개최, 장애인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및 성년후견인제, 자립생활, 통합교육 등 양국의 장애정책이 얼마만큼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논의

가.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신학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이 입학한 학과가 목회자 양성과정이지 아닌 일반학과임에도 진정인이 소위 이단 종교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신학대학교가 진정인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은 종교를 이



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차별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고자 2009년 2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 중 일부는 교육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고, 종교선택의 자유를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진정한 인에 대하여 ○○신학대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정통교단이 아닌 종교를 단순히 선택하였다는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신학교를 내세운 피진정 학교는 기관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진정한 인의 행위는 이러한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징계는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 단체 업무종사자들과 함께 그동안 장애차별 시정 활동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효적 법 이행을 도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



종합 토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관련법의 제·개정 및 관련기구(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 정립,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집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 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및 국민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다. 조사국-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MOU 체결

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간 인권증진 교류 협정서(2007.11.22.) 제3조에 따라 장애차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9년 8월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조사국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조사국-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MOU 체결(8. 14)

MOU 체결을 통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인권 및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제고와 향후 인권변호사 양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양 기관 공동 연구(장애차별 국내외 차별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검토) 등을 통해 위원회 진정사건 및 정책 권고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약 수행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향후 장애인차별 개선 및 시정을 위한 법령, 정책, 관행의 조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 정도,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관련기관 및 부처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으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사용성 평가, 향후 정책방향, 각국의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정책 및 기술담당자와 장애 당사자 간의 인식의 공유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마.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관계자 간담회

위원회는 모 고등학교장이 재학 중인 여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수리하였다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피해자가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해당 교육청에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외부 전문가 간담회 후 외부 전문가 및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관계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다.

외부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의 실태 및 선행연구,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원인 등 메커니즘,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정책검토 방향 및 역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정책관계자 간

담회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 일선 학교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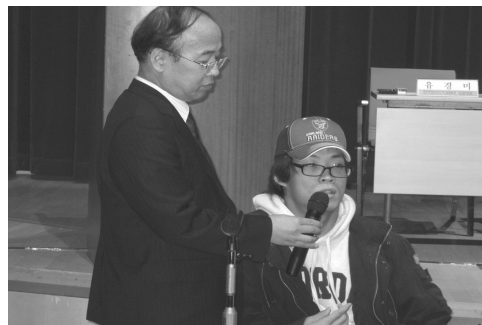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외부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 사이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바.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현장과 교육권의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 법들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 토론



자유발언대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시행이 장애인 교육권에 미친 영향, 장차법과 장특법의 시행 전후 장애인 교육권 변화 정도,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교육권 관련 관계자



(정부, 국회, 장애인 교육 주체, 관련 전문가, 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 등) 등이 모두 모여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와 장애인 대학생이 자신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자유발언시간을 설정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사. 사관학교 입학연령 제한 관련 관계자 간담회

사관학교 입학연령을 만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고 사관학교 입학연령 제한과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임용 연령 제한(만 27세 이하)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과 연관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교육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개선권고'(2006. 4.),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개정 권고'(2006. 12. 1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응시연령 상한 개선 권고'(2006. 12. 11.), '국가정보원 직원 경쟁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권고' 등 특정직 공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대해 일관되게 시정권고했음을 고려하여 국방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연령과 사관학교의 교육 및 졸업 후 장교임용과의 관계, 사관학교 입학연령 제한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 나이차별 판단기준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동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노동부에 권고를 통보하고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연령차별에 대한 1차적인 차별 조사·구제 기구가 되었고 또한 2010년부터 모집·채용 분야를 포함한 고용 전반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확대 시행되어 이로 인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나이차별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고자 외부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나이차별(또는 연령차별) 개념, 적용범위, 판단 등의 차이, 연령차별금지법의 예외사유에 대한 이해 및 현실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직무의 성격상 특정연령이 필요한 경우, 연공급제 임금제 등에서 근속기간의 차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설정된 정년, 특정연령 집단에 대한 지원조치), 연령차별금지법 확대 시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연령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각 영역에서 예상되는 차별 사례 및 나이차별 판단 근거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

이번 심포지엄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12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양국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발제 및 토론자들



개회사

심포지엄에서는 첫째,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각국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둘째, 장애차별, 성년후견제, 자립생활, 통합교육 등 양국의 장애정책 방향이 얼마만큼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법제나 장애정책에 유사한 부분이 많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권리 협약이 각국의 장애인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1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가. 성차별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2009년 성차별과 성희롱 관련 전문가 8명으로 성차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09년 성차별전문위원회는 2회 개최를 통해 다문화가족 대상 설문 및 교육책자의 성차별적 내용, 장남 외 자식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제한,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공무원의 민원인 제지과정에서의 성희롱, 법학전문대학원의 남성 입학 제한, 유산·사산휴가 관련 제도개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타인 간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간접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한 바 있고,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을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축적하고 차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성차별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2-4-6] 2009년 성차별전문위원회 운영실적

회 차	일 시	주 제
1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대상 설문 및 교육책자의 성차별적 내용 · 장남 외 자식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제한 ·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 공무원의 민원인 제지과정에서의 성희롱 · 법학전문대학원의 남성입학 제한 · 유산·사산휴가 관련 제도개선
2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 - 타인간의 면담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기존 '장애차별전문위원회'와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2009년 5월 4일부터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을 장애차별 분야, 장애시설 분야, 정신장애 분야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함으로써 위원회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틀을 제공하고, 사례 축적을 통해 향후 장애인 차별 판단 기준의 논리적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 분야 관련 전문위원회는 2006년 법조계, 학계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위촉하여 장애차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2007년 3회, 2008년 5회, 2009년 6회 개최되었다.

[표 2-4-7] 2009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운영실적

회 차	일 시	주 제
제1회	2. 26	·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입증의 쟁점 (수영장 이용 시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요금 부과)
제2회	4. 24	· 사법행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대우의 차별 여부
제3회	6. 25	·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제도 관련
제4회	6. 26	·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 장애인 이동권 제한 · 대한민국체육상의 장애인 부문 시상 차별
제5회	8. 28	· 귀화시험 시 농아인에 대한 시험방식 개선 등 · 장애인 태권도경기에서의 장애인 출전 제한
제6회	11. 27	·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 차별 · 재판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미흡

다. 고용차별전문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고용영역에서 차별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09년 차별전문위원



회를 고용차별전문위원회로 전환하고 고용차별 분야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고용차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9년 고용차별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임금 등 차별 사건 및 산재요양을 이유로 퇴직강요 및 부당한 업무 배치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고용차별 영역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차별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2-4-8] 2009년 고용차별전문위원회 운영실적

회차	일시	주 제
1	10. 21	·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임금 등 차별 · 산재요양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및 부당한 업무배치

제 3 절 평 가

2009년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대한 평가는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활동,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그리고 차별시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업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9년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에서는 첫째, 전년에 대비하여 진정사건이 약 1.2배 증가하여 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호소하는 진정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별 진정사건의 인용률은 21.8%로 2008년 33.1%에 비해서 낮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기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추이를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권고 수용률은 2009년 12월말 현재 88%로 2008년 12월말 기준 66.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고수용 모니터링 강화 등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모집·채용·영역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2010년부터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전체 고용영역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나이차별 사건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원회에서 나이차별 관련 권고사건은 예외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사실을 적극 홍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출신 국가,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 이외의 차별 진정건수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차별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여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9년 실태 및 기획조사, 정책개선 권고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대학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학 담당자와 장애학생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 당국과 학생들 간의 인식의 차이 및 실제 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을 조사하였고, 장애인 교육 접근권에 있어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의무를 환기시켰다. 또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이 주로 웹 접근성 지침에 의거하여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65개 사이트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에 의한 사용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이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금차별 판단기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임금차별 사건 국내외 판례 및 판단기준을 수집·분석하여 우리 위원회 임금차별 사건 판단을 위한 조사매뉴얼 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 및 신용카드 발급 기관 16개 곳을 직권조사하여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기준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를 수행 중이며 내실 있는 정책권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간담회, 정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공개토론회 및 추가 정책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해당 부처에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지급 관련 사안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369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통해 산업연수생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진정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장애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 토론회를 비롯 각종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운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 교육권과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 여러 방면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가이드라인 발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행위 연구서 발간 등 우리 사회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집·채용에서 위원회 고용차별 결정례·판단기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고용차별 예방책자를 제작하고, 임금차별 판단기준 연구 및 고용차별전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한 적극적인 홍보·상담, 판단기준 정리 및 조사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법 시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을 한시

적 규제유예조치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차단하는 한편 법 시행과 관련된 절차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과 성희롱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여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성희롱예방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검토와 자문 등을 통해 성희롱 조사·구제의 대표기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정사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고용차별전문위원회, 성차별전문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등 3개의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를 총 9회 개최하여 진정사건 처리 업무와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고 또한 중요한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 시정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12회 개최하였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2009년 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조사에서 증가하는 사건 처리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권고 수용률을 높였으며 2009년 위원회는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바 사회적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별 시정 업무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에서는 2009년 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지원 업무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제 5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제1절 개 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된다.”라고 한 스타키(Starkey)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의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교육은 완전한 인격의 발달을 지향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UNDHRE⁵⁾에 의하면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간의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모든 국가·원주민·인종·민족·종교·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별 평등,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과 같은 방향의 태도를 만들고, 지식과 기술을 알리는 것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 보급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유권규약위원회(CCRP)에서도 2006년도 우리나라의 자유권 규약의무이행 심의를 마치고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비록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

4) 구정화 외,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4), p.17.

5)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Plan of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 Human rights education-lesson for life)

약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의 과정, 특히 법 집행관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반영(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권고한 바 있다.⁶⁾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의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인권 증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인권 존중의식과 인권감수성 그리고 인권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한 인권교육이 모든 교육 및 훈련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정신보건법」 등의 개정, 총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 그리고 저출산·노령화 및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국민 인권의식의 확대와 함께 권리구제 절차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9년 4월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책, 교육 및 홍보·협력 기능이 하나의 국으로 통합되고 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었던 인권교육본부가 1개과 체제로 개편되면서 인력이 축소되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구축, 인권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인권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기능별 업무체제로 재편하고 기존에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학교, 국방분야, 공무원 훈련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인권친화

6) 정부는 2007년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시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를 포함시켰다.



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고교 인권실천 시범연구학교 운영, 인권연구 중심대학과 인권교육 연구활동,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 그리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 사업을 전개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 및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인권교육센터 본관과 별관 설치를 마무리하고 교육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화하고 온라인 사이버 인권교육, 오프라인의 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직접 또는 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개최 방식으로 위원회 전략과제와 연계하면서도 인권교육 수요가 많은 정신보건시설, 다문화, 교원, 언론인, 기업,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일반시민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전개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과 인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위는 최초의 장편 인권영화 <날아라 펭귄> 등을 시중 영화관에서 상영했고 관련 콘텐츠를 교육기관에 보급하였다. 또 인권논문, 에세이 그리고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사업을 통하여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세한 업무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가.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학교인권교육협의회는 2007년에 위원회가 주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모여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인권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동안 매년 학생인권 관련 업무 실적 등 정보 공유, 기관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2009년에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위원회의 추진사업들과 관련한 협의 및 협조 당부, 협의회원 기관들로부터 인권교육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확산과 실제 적용과정의 문제점, 애로점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계속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인권교육 현황을 수집 분석하였다. 현재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세계인권교육훈련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 문서 내용에 우리 인권교육 활동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위원회는 군대 분야 인권교육, 인권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과 업무 지원 및 협력 기능 강화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군대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위원회 4개과(인권교육과, 인권정책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와 국방부 인권담당관 및 육·해·공군 소속 인권과로 구성되었다. 향후 △ 군대 분야 인권교육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군대 분야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군대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 △ 군대 분야 인권정책 △ 인권 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 기타 군대 분야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과정 개설

위원회는 2008년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인권친화적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2009년에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행정공무원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과정을 개설하였다.



위원회는 두 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 과정을 처음 개설·운영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구성, 강사 선정, 교육 자료 등을 적극 지원하여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또한 인권과정 개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및 각 부처 연수교육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주인력개발원의 성공사례 발표, 향후 인권과정 개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에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표 2-5-1]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과정 현황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과정명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교육 횟수	2회(상·하반기 각 1회)	1회
교육 기간	상반기 : 4월 8일~10일(3일, 비합숙) 하반기 : 11월 4일~6월(3일, 비합숙)	6월 10일~11일(2일, 비합숙)
교육 대상	5급이하 공무원 60여 명(회당 30여 명)	6급 이하 공무원 44명

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1) 대학교 인권교육 확산

위원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⁷⁾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MOU 체결 내용의 실질적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MOU 체결 대학과 함께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6월과 12월에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 실무담당 교수로 구성된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및 친인권적 대학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교 인권교과목 실러버스를 발간하고 전국 대학교 200개소, 전문대학 146개소에 배포하여 인권교과목 운영형태 및 담당교수 풀(Pool)을 제공하였다.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이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고 대학 내 다양한

7) 현재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은 총 10개로 MOU체결 시기별로 다음과 같다. 전남대학교(2006. 12), 영남대학교(2007. 4), 인하대학교(2007. 10), 한양대학교(2007. 11), 고려대학교(2007. 11), 이화여자대학교(2007. 11), 전북대학교(2007. 12), 충남대학교(2008. 5), 부산대학교(2008. 5), 경상대학교(2008. 11)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MOU 체결 3개 대학에서 '대학인권지표 개발연구',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대학문화의 인권친화적 실태 조사 연구' 용역 3건을 완료하였다.

각 대학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대학 인권교과목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10. 23~24)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13개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신진 교수 15명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대학 내 인권강좌 운영사례 공유 및 인권강좌 확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방법, 인권학회 등의 제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대학 인권동아리를 위한 대학 내 인권동아리 워크숍(12. 21~22)에서는 총 18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법조인 52명이 참여하여 인권동아리 활성화 방안 및 대학 인권교재 제작 방향이 제시되었다.

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 보급

아동 및 청소년(학생)에 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조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법의 특성상 협약에 처벌조항이 없어 국내법으로서 실질적 효력을 가지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2001년)에서도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정부는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⁸⁾을 개정하여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아직

8)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서 국내의 준칙들을 참조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 라인(지침서)을 개발하여왔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은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학생의 참여와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학교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 △ 학습자(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올바른 징계기준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 학교 △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존중하고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학교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학교 1%인 120개교 학칙 샘플 기획 조사(6~7월, 전국 시도별, 초·중·고별로 구분), 학생체벌의 대안모색 국제워크숍 개최(6. 10, 충주, 교사 70명), 학교생활규정 개선 우수사례 조사(8. 27, 충북교육청), 지침서 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지문(8. 27~28, 충북교육청, 교원조합, 충주대원고, 충북여성발전센터), 지침서 초안보고(11. 9), 지침서(안)에 대한 인권위 각과 의견조회(11. 12~11. 17), 지침서 보완을 위한 전문가 서면지문(11. 19~11. 30/전문가 8명), 지침서 보완을 위한 전문가 심의회(12. 4~5/전문가 5명, 충주),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지침서(안) 배부(12. 11/16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및 협의(12. 15, 교과부, 복지부, 16개 시·도 교육청) 등의 절차를 거쳤다. 향후 이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을 거쳐서 모든 학교에 보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3) 인권교육실천 시범학교 운영

위원회는 2004년부터 인권교육실천 연구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시·도 지정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지원하여왔다. 연구학교의 운영 목적은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함께 인권에 대한 개념과 지식 그리고 인권감수성을 배우고,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정규 교과목 시간, 재량활동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실제로 실천하고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내 학교구성원 상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개선하여 이를 주변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제3기 인권교육 연구학교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 마무리되었으며 전체 총 8개 학교이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4. 9~10)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보급, 강의지원, 연구학교 운영 관련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였다. 2009년은 제3기 연구학교 2차년도 마지막해로서 각 학교에서는 각 관할지역에서 지역교육청, 인근 교장 및 교사들과 지역사회 내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인권교육 연구과제에 대한 시범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연구학교 발표를 참관하고 지도하였다.

제61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즈음하여 12월 8~9일에 '제3기 인권교육실천 시범 연구학교 종합발표대회'를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과 위원회의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종합발표대회에는 위원회가 지원한 8개 학교와 시·도 지정 연구학교 3개 학교로 총 11개교가 참석하였다. 그밖에 제1~2기 연구학교 담당교사, 관할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연구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전시회, 우수학교와 학생UCC 우수작품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인권위원장 표창, 연구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공로패와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또한 종합발표 및 평가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2년간의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인권교육실천 시범연구학교의 지속적인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종합발표회에 참여한 연구학교들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두발·체벌 관련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기도 하였고, 지역사회 내





인권교육 지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인권동아리 활동 지원, 인권UCC 발표회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권의식의 내면화와 지역사회에 인권교육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2-5-2] 제3기 인권교육실천 시범연구학교 종합발표대회 참가학교(11개교)

구 분	소속학교	교 장	연 구 과 제
위원회 지정 연구 학교	군산남고등학교	남중태	실천중심 인권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인권존중 의식 신장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황선철	인권UCC개발을 통한 인권존중 의식 함양
	부산내성중학교	조성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인천부평여자고등학교	김영선	인권UCC 제작운영을 통한 인권존중의식 함양
	서울문덕초등학교	채봉기	다중지원 인권망 활용을 통한 인간존중의식 함양
	경기성산초등학교	황이남	체험중심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속 인권의식 기르기
	대구와룡고등학교	김점득	참여와 실천을 통한 학생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충북청운중학교	박종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존중의식 신장
초청 연구 학교	강원갑천고등학교	박창식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한 희망 주는 학교 만들기
	대전용운중학교	김현중	인권감수성 향상프로그램의 구안 적용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의정부 부용고등학교	박정수	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통한 학생인권 신장

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추진 사업

위원회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편되는 시기(2009~2011)를 맞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추진해왔다. 2009년은 인권 친화적 교과서 추진 사업의 1차연도로 '교과서 안 인권 찾기'라는 사업으로 교과서 학생/교사 모니터단 활동을 벌여 인권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환기시켜주었다.

교과서 학생, 교사 모니터단은 2009년 6월에 발족되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친인권/반인권 사례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친인권 23건, 반인권 사례 171건을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친인권/반인권 사례를 1,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10월 7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 모니터단이 바라본 교



제1기 교과서 학생 모니터단 발대식

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2) 인간 존엄성 및 휴식권, 정당한 편의시설 확충요구 등 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3) 기타 비인격적·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사례들로 학생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학습할 경우 학령기 아동은 물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을 쉽게 용인하거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기에 수정·삭제가 권고되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할 것과 국·검정 교과서의 심의·심사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포함, 교과서 개발 및 검정 단계에서 전문감수과정을 거칠 것 등이 함께 권고되었다.

또한 2월 급박하게 추진된 사회과 교육과정 재개정 추진 과정에서 '인권' 단원과 '법' 단원이 통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 단원이 축소되는 것은 인권교육 확대 및 제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독립적인 인권 단원으로 둘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6월 25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를 계기로

과서'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그중 인권 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못한 25개 교과서 사례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수정·삭제가 권고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사례로는 (1) 성·가정 형태·인종(국가)·장애에 대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모니터단이 바라본 교과서



‘친인권 교과서 개발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교과서 집필진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제시와 다양한 인권 자료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2.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과정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해오던 교육과정을 교육의 전문성·체계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설·독립적인 교육장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2008년에 인권교육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건설경영연수원(충청북도 충주 노은면 소재, 비상설적으로 연수과정 운영 시 사용)을 인권교육센터 본관으로, 기존의 위원회 배움터(10층)를 인권교육센터 별관으로 정식 지정·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통일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인력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 등을 기하였다.

인권교육센터의 운영은 2009년에 미래의 인권교육원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 교육과정을 인권교육센터에서 직접 또는 타 기관들과의 협력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300회, 23,672명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중 사이버 인권교육은 60회, 13,573명에 오프라인을 통한 인권교육은 240회 10,099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8년 교육인원 16,886명(온라인 12,394명, 오프라인 4,492명)과 대비하여 40% 증가한 23,67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로써 인권교육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고, 사이버인권교육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인권교육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5-3] 2009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 분	사이버 교육	오프라인 교육		계
		방문프로그램	교육과정 등	
횟수	60	109	131	300
인원	13,573	3,043	7,056	23,672

가.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화 및 내실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위원회 사이버 교육은 2008년 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과 구 사이버인권배움터를 위원회 인권교육 행사와 연수정보, 각종 인권교육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로 개편하는 등 사이버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환경 구축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총 60회 13,573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사이버 인권교육은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심화), 장애차별 예방 및 성차별 예방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권의 이해과정> 및 <인권의 이해(심화)과정>은 일반시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그 내용은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및 전문 교육과 더불어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차별예방과정>은 공무원·교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증진 및 다양한 법적 제도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성차별예방과정> 역시 공무원·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09년 사이버 인권교육은 횡수와 인원에서 2007년, 2008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여 교육 횡수는 2007년 대비 62%, 2008년 대비 94%, 교육 인원은 2007년 대비 44%, 2008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첫 화면



[표 2-5-4] 사이버 인권교육 연도별 현황(2007년~2009년)

연도	합계		공직자		교사		일반시민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7년	37	9,435	9	4,895	2	1,430	9	783	17	2,327
2008년	31	12,394	7	4,199	13	7,011	7	884	4	300
2009년	60	13,573	27	5,592	18	7,338	12	534	3	109
계	128	35,402	43	14,686	33	15,779	28	2,201	24	2,736

※기타 : 정신장애 분야 강사양성 심화 과정 및 서울시교육연수원 2009년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과정 시 사이버 교육 실시(2009년)

[표 2-5-5] 2009년 사이버 인권교육 증가율(2007년/2008년 대비)

구 분	2009년	증 가 율		비 고
		2007년 대비	2008년 대비	
횟 수	60	62%	94%	
인 원	13,573	44%	10%	

나.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에서부터 경찰, 시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이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이 위원회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인권과

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자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방문프로그램(8. 14. 효성고) 장면

2009년에는 109회 3,043명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횟수면에서 2007년 대비 137%, 2008년 대비 65%의 증가세를, 인원면에서도 2007년 대비 82%, 2008년 대비 5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2-5-6] 연도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2007~2009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횟 수	46	66	109	
인 원	1,673	1,972	3,043	

[표 2-5-7] 2009년 방문프로그램 증가율(2007, 2008년 대비)

구 분	2009년	증가율		비 고
		2007년 대비	2008년 대비	
횟 수	109	137%	65%	
인 원	3,043	82%	54%	

특히 2009년에는 아프간 공무원 등 여성지도자, 이라크 공무원단 등 해외 기관, 단체 등에서 7회 115명이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표 2-5-8] 해외 기관, 단체 방문프로그램 현황

기 관 명	날 짜	인 원
아프간 공무원 등 여성지도자	5월 18일	20명
이라크 공무원단	6월 24일~27일	17명
일본 오사카 관서대	8월 28일	15명
일본 오사카 야오시 인권협회 대표단	9월 7일	11명
광주아시아 인권학교	9월 15일	20명
일본 이토주구 로스쿨	10월 15일	24명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직원	10월 26일~30일	8명
계	7회	115명

다. 인권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위원회는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2009년 강사양성 과정,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및 인권교육 관련 워크숍 등 총 131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개정



『정신보건법』상 인권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영화와 인권 시민강좌 개설, 학교 분야 인권교육, 언론인 인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교육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 중 주요 인권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9] 인권교육 과정 운영 현황(2009년)

구 분	강사양성 과정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워크숍 등	계
횟수	7	109	15	131
인원	217	6,057	782	7,056

1)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개정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은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충청권은 위원회 본부에서, 그밖의 권역은 각 지역 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하였고, 본부와 지역인권사무소를 합쳐 총 54회 3,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양성 심화과정(6. 10~12)

[표 2-5-10]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현황

구 분	본 부	지역인권사무소				계
		소 계	부 산	광 주	대 구	
횟수	6	48	23	10	15	54회
인원	497	2,983	1,395	590	998	3,480

2) 다문화 인권교육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문화 인권교육 전문 인력양성과 이주민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 북한이탈주민(최초), 교사, 학생, 공무원 등 다문화와 관련 인권교육을 총 30회, 1,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이 겪는 차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인권교육기본계획(3년)을 새롭게 수립하여 체계적 다문화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 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해 정규과목으로 매월 교육하게 되었다.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10. 28~29)



한겨레중 · 고등학교 인권교육 활동 사진(9. 2)

[표 2-5-11] 다문화 인권교육 현황

구 분	횟 수	인 원	내 용
전문인력양성	4	103	▶ 4대 권역 다문화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부산권(9.24~25, 15명), 서울권(9.29~30, 28명) • 대구권(10.8~9, 30명), 광주권(10.28~29, 30명)
당사자	1	61	▶ 김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관련 당사자 교육(9.9)
종사자	2	50	▶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문화 종사자 교육(9.16, 15명) ▶ 다문화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11.17~19, 35명)



구 분	횟 수	인 원	내 용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	8	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교육(4대권역 24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권(4.17, 40명), 대전권(5.7, 45명) • 부산권(6.9, 100명), 광주권(6.26, 60명) ▶ 대한주택공사 건설 수급·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소장 교육(4대권역 19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권(5.18, 45명), 충남권(5.19, 40명) • 청주권(5.20, 65명), 충주권(5.21, 40명)
북한이탈주민	7	4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하나센터 탈북대학생 등 인권교육(8.19, 20명) ▶ 하나원 종사자 교육(9.22, 15명),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3회, 40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 160명, 11.25, 130명, 12.16, 115명 ▶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 인권교육(9.2, 42명) ▶ 서울북부하나센터 탈북청소년 인권교육(11.28, 10명)
교사 및 학생 등	8	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상 인권친화적 다문화 교육 특강(5회, 305명) ▶ 학생 대상 인권친화적 다문화 교육 특강(2회, 129명) ▶ 공무원 대상 인권친화적 다문화 이해 특강(1회, 33명)
계	30	1,608	

3)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위원회는 2009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8. 5 ~ 15일에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교육을 초등교사반과 중등교사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2-5-12] 2009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교육일정

교 육 과 정 명	날 짜	인 원	비 고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교육(초등교사반)	8. 5 ~ 8 (3박4일 합숙)	31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교육(중고등교사반)	8. 12 ~ 15 (3박4일 합숙)	39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이수자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 장애 및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

다고 하였고, 잘 짜인 교육 프로그램[표 2-5-13]과 훌륭한 강사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이수자들은 한결같이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별로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원회에 주문하였다



교원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교육-초등교사반 (8. 5~8)

[표 2-5-13]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과정 프로그램

연 번	교 육 과 목	시 간	연 번	교 육 과 목	시 간
1일차	몸풀기 마음열기	2	2일차	장애인과 장애학생 그리고 통합교육	3
	인권의 이해	2		인권연극 워크숍	3
	인권교육론과 인권적 교육방법	3	3일차	자유 참여 그리고 책임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	3
	영화로 만나는 인권	2		서로를 살리는 대화	2
2일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		학생인권 체크리스트 만들기	3
	다문화자녀의 인권과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2	4일차	인권친화적 학교 비전세우기	3

4) 언론인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일반 국민이 언론에 대해 인권 관련 의제 설정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언론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보도 민감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은 분쟁 및 소송 관련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친화적 보도물 제작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첫째, 언론인 인권교육은 인권보호·증진에 있어 ①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 ②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③인권의제 형성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인권기획 보도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 출입기자 대상 언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언론인에 대한 간접적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을 발굴 및 홍보하고, 언론인들의 인권에 대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시켜 인권친화적인 보도와 방송을 생산, 매체를 통한 인권의식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대 인권보도>를 발굴하여 인권친화적 보도·방송물을 알리는 데 힘썼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2-5-14] 2009년 10대 인권보도

□ 신문분야

NO	매 체	제 목	취재 / 제작
1	동아일보	어느 방글라데시 소년의 죽음	이진구, 한상준 기자
2	서울신문	검찰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정은주, 장형우 기자
3	세계일보	농촌, 가장 위험한 작업장	염호상, 박성준, 안용성, 엄형준, 조민중 기자

□ 방송분야

NO	매 체	제 목	취재 / 제작
4	MBC	[뉴스후] 갈 곳 없는 아이들	고현승 기자
5	MBC	[시사매거진2580]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신임 연출, 김희웅 기자, 양등암 촬영
6	KBS 순천	100年の 참회록	정길훈 기자, 서재덕 촬영
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선생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 고3 임신부 해원의 선택	한재신 연출, 박희경 작가
8	KBS	[추적 60분] 2009 장애인 인권보고서 “나는 시설을 거부한다”	박성주 연출, 민혜진 작가
9	부산 MBC	부산 MBC 창사 50년 특별기획 '이중국가: Dual State'	이길희 기획, 민성빈, 김효섭 기자

□ 뉴미디어 분야

NO	매 체	제 목	취재 / 제작
10	한겨레 하니 TV	쌍용자동차 파업	이정용, 박종찬, 김도성, 허재현, 조소영 기자

5) 기업 인권교육 실시

최근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엔 및 OECD 가입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경영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책임, 국제기준 현장 적용



기업 대상 인권교육 (11. 24)

및 효과적인 인권리스크 관리 등 선도적 대응을 위한 인식전환 및 역량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의 현황, 국제적 기업 인권기준 및 실천사례, ISO26000 사회적 책임의 인권 분야(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노동기본권, 공동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경영과정’을 실시하였다.

[표 2-5-15] 기업 인권교육 일정

교육 과정 명	날 짜	인 원	비 고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경영과정	11월 24일	25	

6)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인은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노숙인 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제·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일환으로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노숙인 쉼터 등의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10. 19~20)

[표 2-5-16] 노숙인 인권교육 일정

교육과정명	날짜	인원	비고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10월 19일	25	
	10월 20일	18	

7) 영화 속 인권 들여다보기 시민강좌 개설

위원회는 대중에 대한 설득력과 파급력이 높은 영화를 활용한 시민강좌를 개설하여 인권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영화 속에 드러난 다양한 편견과 차별 등의 인권 문제들을 다루어 인권 의식 고양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반인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갖고자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시민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번 시민 강좌는 청소년, 장애 결혼이민자 등 생활 속 인권과 관련한 10개 주제를 선정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강좌로 운영하였으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영화 감상, 해당 주제와 영화 관련 강의 및 토의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367명이 수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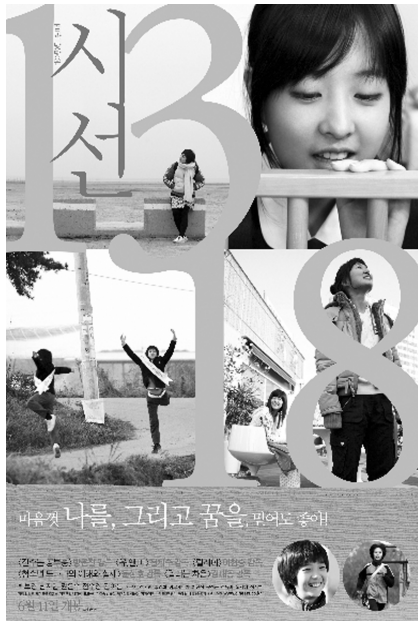
[표 2-5-17] 영화 속 인권 들여다보기 시민강좌

강좌	주제	강사	일정	인원	비고
제1강	청소년	윤성호(감독)	11. 2(월)	46	오프닝
제2강	장애	남다정(감독)	11. 4(수)	41	
제3강	연예인노동자	이택광(문화평론가)	11. 9(월)	46	
제4강	혼인여부, 가족형태	이김명란(활동가)	11. 11(수)	30	
제5강	이주노동자	변성찬(영화평론가)	11. 16(월)	40	
제6강	양심의 자유 등	정재훈(감독) 여옥(활동가)	11. 18(수)	33	
제7강	사상 이념의 자유	문정현(감독)	11. 23(월)	35	
제8강	성소수자	이송희일(감독)	11. 25(수)	33	
제9강	탈북자	박상영(셋셋학교장)	11. 30(월)	30	
제10강	결혼이민자	남다운(영화평론가)	12. 2(수)	33	수료식
계				367	

3. 인권교육 ·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 인권영화 등 문화 콘텐츠 개발 · 보급

위원회는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해 문화적인 접근방법으로 개발된 인권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콘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각 분야의 요청에 의한 보급 및 기획보급을 추진하였다. 이는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권감수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 일반 시민들이 인권문화 콘텐츠에 상시 노출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일반 서점에서 자발적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유통 방식을 채택하였고 △ IPTV, 케이블,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방송 등 부가시장으로 연결됨으로써 인권영화 방영에 따른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초·중·고교 재량수업에서의 활용 및 대학 교양과목 개설에 따른 수시요청에 맞춰 직접 보급함으로써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검정교과서 개발 자료로 콘텐츠가 활용되어 총 5종 160,056부의 교과서가 채택된 것은 교육콘텐츠의 다양성 구현에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5개의 단편 옴니버스 영화 <시선 1318>



장편영화 <날아라 펭귄>

[표 2-5-18] 국내 극장배급 및 공동체 상영 실적

시선1318(배급사 : 백두대간)			날아라 펭귄(배급사 : 스튜디오 느림보)		
기간	누적 관객수	공동체 상영	기간	누적 관객수	공동체 상영
6.11.~7. 5.	5,971명	14회 / 1,732명	9.24.~11.15.	21,684명	28회 / 2,150명

[표 2-5-19] 인권문화 콘텐츠 보급 실적

보급률	교육분야	공공분야	시민분야	총 계
DVD	5,169(65.8%)	1,687(21.5%)	1,005(12.8%)	7,861(100.0%)
만화/포스터	661(55.8%)	142(12.0%)	382(32.2%)	1,185(100.0%)
학습 교안	2,001(43.5%)	1,305(28.4%)	1,297(28.2%)	4,603(100.0%)
총계				13,649

[표 2-5-20]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인권문화 콘텐츠 활용실적

검정교과서 교육자료 활용 콘텐츠	출판사	검정교과서 채택부수
달리는 차은-〈시선1318〉_국어과	지학사	5,800
그여자네 집 〈별별이야기1〉_국어과	천재교육	107,166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 〈포스터〉_도덕과	교학사	16,000
언니가 이해하여야 돼요 〈다섯 개의 시선〉_국어과	미래엔컬처	28,000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 〈포스터〉_도덕과	법문사	3,090
총 채택 부수		160,056

[표 2-5-21] 교육 및 상영 등 인권교육 및 홍보 목적에 따른 간접 보급결과

구 분	간접보급 인원	매체별 보급계	DVD	만화, 포스터, 사진	학습교안
			보급수량	보급수량	보급수량
교 육	30,093명	10,472	6,259	979	3,234
상 영	8,114명	102	51	-	51
홍 보	149명	3,078	1,551	209	1,318
총 계	38,356명	13,652	7,861	1,188	4,603

[표 2-5-22] 해외배급 실적

출 품 작	구분(배급사 : 인디스토리)	기 간
시선1318	제5회 리버사이드국제영화제	2009. 4. 17. ~ 4. 26.
시선1318	제50회 즐린국제아동청소년영화제	2009. 5. 31. ~ 6. 7.
시선1318	제5회 인디판다국제단편영화제	2009. 7. 31. ~ 8.19.
별별이야기2	Macao Cultural Centre 주최 AniMacao 2009	2009. 8. 9. ~ 8. 16.
날아라 핑귄	제14회 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	2009. 9. 2. ~ 9. 6.
날아라 핑귄	영화진흥위원회 '09년 우수한국영화 선정 정부판권 배급 : 재외공관 등 비영리 목적 및 학 술적 용도의 상영	2009 ~ 2019(10년간)
날아라 핑귄	나고야 지역순회 상영회	2009. 12. 26. ~
날아라 핑귄	일본 포레포레 히가시나카노 극장개봉	2010. 2. 27.~
별별이야기2	제4회 대만국제어린이영화제	2010. 4. 1. ~ 4. 5.
세 번째 시선 잠수왕 무하마드 별별1_자전거 여행 별별2_사방사방사랄라	프랑스 파리 Forum des images"State of the World, State of the Cinema"	2010. 1. 29 ~ 2. 7.



나. 인권실천사례, 인권논문 및 인권에세이 공모 사업

위원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연구 활성화, 인권연구의 저변확대 및 국내 인권 지식 기반구축을 위해 2002년부터 인권논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실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인권단체 활동가 등을 격려하고 현장적용 가능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권 실천(교육)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를 2003년부터 진행해왔다.

2009년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각각 분리 추진되어온 인권논문 및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 사업(인권논문 : 인권연구팀, 인권실천 우수사례 : 학교교육팀)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해 통합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에도 인권논문 및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 사업의 계속 추진과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생활 속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 문화 조성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에세이 공모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실천사례 12편, 인권논문 44편, 인권에세이 195편 등 총 251편이 응모하여 실천사례 6편, 인권논문 11편, 인권에세이 34편 등 총 51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인권논문, 인권실천 우수사례 그리고 에세이 우수작 또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인권논문·에세이·인권실천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12. 1. 인권논문 수상자)

[표 2-5-23] 인권 논문 및 인권실천 우수사례 수상작

부문	이름	제목	수상내역
인권 논문	임재성	평화권을 통해서 본 한국 인권담론 확장과정 연구	우수(학생부)
	박윤진 외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우수(학생부)
	서수원 외	파양(罷養)당한 입양아동의 인권 실태 연구 -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고찰 및 프로그램 제안 -	우수(학생부)
	이창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방안 -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우수(학생부)
	정영희 외	초등학생 인권의식 증진에 관한 실증 연구 -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장려(학생부)
	이상희 외	외국인 유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분석	장려(학생부)
	이유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장려(학생부)
	이윤주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논의를 향해	장려(학생부)
	조기성 외	2007 개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우수(일반부)
	김영갑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장려(일반부)
	김지현	금융 채무자의 인권에 관한 고찰 - 대부업 채무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장려(일반부)
인권 실천 우수 사례	최미선 (서초열린세상)	인권감수성 모형에 근거한 정신장애인과 실무자의 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 "Chance, Change & Challenge"	최우수
	이경림 (부스르기사랑나눔회)	1318 Happy Zone 인권 꽃밭 만들기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이용청소년 인권의식 강화사업 -	우수(사회복지)
	정은희 (소화누리)	정신장애인 인권 행복토론회 "공감&발언"	장려(사회복지)
	조희정 외 4인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 인권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기 -	장려(사회복지)
	김영숙 (옥곡초등학교)	따뜻한 마음으로 어우러진 행복한 인권마당	우수(학교)
	유해용 (광동중학교)	꿈나무, 교실에서 인권을 만나다.	장려(학교)



[표 2-5-24] 인권에세이 수상작

부 문	이 름	제 목	수상내역
인 권 에 세 이	송지영	어린 아이들의 강제 노동	우수(초등부)
	김영우	외모가 다를 뿐 마음은 똑같은 하나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를 읽고	우수(초등부)
	조종현	초당의 인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수(초등부)
	오하림	존중받을 권리	우수(초등부)
	박민우	어린이 체육 현장	장려(초등부)
	설수빈	인권에 대한 내 생각	장려(초등부)
	원민재	너와 나는 같은 친구	장려(초등부)
	김혜인	인권문제	장려(초등부)
	이해솔	우리는 다 같은 친구	장려(초등부)
	홍서연	장애우의 친구 되기	장려(초등부)
	권예은	인권은 꽃이다	우수(중등부)
	김창현	학교에서의 인권	우수(중등부)
	이현민	진심어린 마음의 배려가 진정한 인권 찾아주기가 아닐까요?	우수(중등부)
	김소연	선생님,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장려(중등부)
	김현정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장려(중등부)
	선예은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장려(중등부)
	이성민	힘없는 자, 아픈 자까지 비추는 인권	장려(중등부)
	문원영	슈퍼 아저씨의 진정한 사랑	장려(중등부)
	진승혁	장애우와 함께하는 학교생활	장려(중등부)
	이효진	교과서 밖에서 만난 인권	최우수
	정재원	〈사이시웃〉을 읽고	우수(고등부)
	최홍록	무지에 갇힌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우수(고등부)
	박교연	당신의 사적자유권, 이상 侑!	우수(고등부)
	양준혁	하늘이 허락하신 참된 사람의 삶을 위해	장려(고등부)
	홍석환	유엔평화봉사단원으로 뉴욕에 다녀와서 PEACE TALK	장려(고등부)
	최정윤	인권, 현실 그리고 미래	장려(고등부)
	유재룡	〈소음이 울림이 될 때까지〉 _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읽고	장려(고등부)
	최성태	학생의 하루	장려(고등부)
	유채운	그는 성적소수자이기 전에 청소년이었다	장려(고등부)
	정소희	바지 허가증	장려(고등부)
	이주원	외국인 거주자 인권 보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장려(고등부)
	김윤나	발암물질 생수를 통해 바라보는 소비자 인권과 국민 기본권의 현주소	장려(고등부)
	성은욱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아름다움	장려(고등부)
김신태	사이버 세상 속의 인권	장려(고등부)	

다.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 출입국 분야 인권교육 교재 개발

위원회는 최근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년)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다문화 사회 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공공분야 종사자 중 가장 관련이 많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이 분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 장애차별예방 심화 과정 콘텐츠 개발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동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5개 차시로 구성된 사이버인권 교육콘텐츠 <장애차별예방 심화 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를 신규로 개발하여 기존 <장애차별예방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행정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보강

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 형성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2003년 공무원 인권교육교재로 <행정과 인권>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후 각종 법령, 제도 등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변화와 인권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인권> 교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09년에 인권교육의 장기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훈련 과정 속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초·중·고등학교 8개의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을 완료하였다. 3개의 연구중심대학과 함께 대학 내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학생 및 교사의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니터단을 구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과서에 실린 친인권/반인권 사례를 발굴하고 언론에 알려 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도출하고 해당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으며 또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정신장애인지원, 학교, 기업, 언론인 등과 취약계층인 정신장애, 다문화, 노인, 노숙자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교육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작된 단편영화 <시선1318>의 '달리는 차은' 등 5개 작품이 검정교과서 개발 시 출판사로부터 활용되었으며, <시선1318>이 제5회 리버사이드 국제영화제와 제50회 즐린국제아동청소년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출품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국내 극장배급과 IPTV, 케이블, SK브로드밴드 및 DVD 보급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인권논문·에세이 공모사업 그리고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교육훈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각 시도에서 추진 중인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

는 조례 제정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각급 공공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인권 과목 개설 또는 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인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발굴된 개선과제와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새로이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직업군에 대하여 인권의식 조사, 교육 및 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등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신설 및 대체 등 적기에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인권교육 과정의 특성상 일회적 교육보다는 교육수료 이후의 소모임활동 지원, 지속적인 보수교육, 최신 인권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개발된 교육자료와 콘텐츠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 콘텐츠의 모듈화, 표준화 그리고 이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각색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권교육 강사가 필요하나 현재는 전문강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인권교육 강사와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강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 6 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제 1 절 개 요

2009년에는 위원회 독립성 논란, 조직축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권단체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펼쳐왔다. 위원회 업무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단체들의 각종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및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다. 또한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132개 사업을 신청받아 33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우리 사회에 인권의식 증대와 인권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국제 인권기구와 해외 국가인권기구 등과의 교류협력도 활발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 ICC와 APF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회 연간활동을 보고하였고, 이주인권과 UPR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발의한 의제가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라크 공무원 초청연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하우를 전수했고, 아태지역 8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 워크숍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권고, 활동 등에 대해 152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주요 언론매체와 협의하여 인권문제 전반을 비롯해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등을 위한 기획보도를 통해 주요 인권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와 개선을 도모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정신장애인가국가보고서> 발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또한 블로그 <별별이야기> 개설, 인권만화와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위원회 활

동과 주요 인권 현안을 국민에게 홍보했다. 격주마다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는 위원회에서 펼친 사업과 인권위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 국내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3만8000여 명의 정책고객에게 발송됐다. 아울러 국내 인권문제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총 12회의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알렸다.

2003년 8월 창간된 <인권> 잡지는 격월간지로 발행한 지 3년째인 2009년에도 총 6권을 발간했다. <인권> 잡지는 인권전문지이자 대국민 인권교양지로서 다양한 인권현안을 통해 인권이 나의 문제이자 생활 속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인권의식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인권> 잡지는 2만2000부를 발행, 공공기관과 단체, 인권에 관심이 많은 개인 등에 배포됐다. <인권> 잡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웹진으로 실어 잡지를 접하지 못한 네티즌에게 접근성을 보장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권> 잡지의 모든 내용에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하였고, 목·점자 도서 발간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 2 절 주요 추진 실적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가. 총 평

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는 시민사회와 함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위원회 업무 중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왔다. 위원회 독립성 논란, 조직축소 등은 위원회에는 시련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인권단체와 보다 능동적인 협력관계 형성 및 강화를 충실하게 한 측면이 있다.

2009년 위원회는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인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여 반영했다. 또한 인권단체의 각종 요청사항에 대한 교



류 및 지원을 통해 상시적인 연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상별, 영역별, 지역별로 총 33개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 우리 사회의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듯 2009년은 위원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인권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

나.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2009년 연간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1월 20일 개최하여 업무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각종 정책에 관한 제언 등을 논의했다. 인권단체 정책간담회는 매년 실시해온 것이다.

이같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협력 및 연대의 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책간담회에는 62개 단체 73명이 참석하여 위원회가 인권단체들에 높은 관심의 대상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단체 정책간담회(1.20)

다. 행사 참석 등 교류사업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 등의 행사 참석·축사, 면담, 명의 후원 등 41여 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교류활동을 벌였다.

라. 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권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한해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 저변에 인권 문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위원회의 독립성 논란, 조직축소, 이른바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132개 신청사업을 접수하였고 이 중 32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수도권 이외 지역인권단체들의 참여 및 협력사업 선정 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져 인권활동의 확장 및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청현황 : 2008년 63건, 2009년 70건/ 선정현황: 2008년 12건, 2009년 20건).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지원 분야는 장애인 인권, 다문화·난민·이주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새터민 등 북한 인권, 비정규직 인권, 여성 인권, 정보 인권, 주거권, 스포츠 인권 등이었다. 이 중 'HIV 감염인 인권증진 프로젝트 사업'은 HIV 감염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HIV 감염인 및 비감염인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건축과 만나다' 사업은 학사 일정 등으로 당초 사업 계획이 충실히 추진되지는 못하였으나, 대학 건축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건축설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신장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권의 관점에서 뉴타운·재개발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주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회적 소수자 관련 사업 지원으로 고령의 기지촌 여성



들의 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증언록 발간 등도 진행했다.

2009년에는 사업수행단체에 대해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현장 모니터링의 경우 예년과 달리 사업심사위원들이 직접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업수행단체를 독려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파악과 이해, 의미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사업수행 관련 단체와 원활하게 협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로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었다.

[표 2-6-1] 2009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연 번	단 체 명	사 업 명
1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건축과 만나다-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교육
2	마포공동체라디오	시각장애아동, 소리로 통하다 - 라디오 프로젝트
3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인권의 눈으로 본 이주민 건강권” : 이주민 건강권 인식 증대와 정책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국제포럼
4	피난처	무국적 및 난민 인권클리닉
5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공포 타파 프로젝트 : 실전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라!
6	(사)NK지식인연대	탈북자인권교실 “인권배움터” 운영
7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정규직 교수들의 인권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교육
9	(사)나눔과미래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신장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 명회”
10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및 영상교재 개발
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생 스포츠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2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영주귀국 사활린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1차 실태조사
13	느티나무마을	세상의 중심은 청소년, 지역을 바꾸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사업 “세바퀴로 가는 어깨동무 길동무”

연 번	단 체 명	사 업 명
14	새움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관리하였던 1970-80년대 기지촌의 실태' 를 경험한 생존자들과 한미 전역군인, 관계자들의 국제 증언집회
15	춘천여성민우회	2009 희망 "짱" 달팽이 인권캠프
16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2009 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역할극 공연 <당당한 I (나), 우리 힘으로!>
17	(사)대전여민회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성매매예방 영상제작과 여성인권영화제 "여성인권, 장막을 걷어라"
18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9개 단체)	대전·충청지역의 이주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Let's Together 함께가자!"
19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 부모 인권 활동가 배움터
20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부산가톨릭공부방협의회	부산지역 공부방 청소년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인권 여행 떠나봐요"
21	(사)부산여성회	일하는 여성(워킹맘), 기 살리기(여성노동자 심층조사 등 연구, 교육, 홍보사업)
22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교육 사업
23	울산YWCA,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울산성매매피해자생활시설씨밀레	성매매방지법시행(2004) 전후, 성산업구조 변화에 관한 사례집발간 『울산지역 산업형 성매매집결업소 종사자에 대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24	(사)울산인권운동연대	2009 부산울산경남 교원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 교육연수
25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HIV 감염인 인권증진 프로젝트 : HIV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집단 심리 상담치료/ HIV 감염인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량 지원
26	간디문화센터	사회 문제화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학습(슬로건 : "나, 너 그리고 우리")
27	광주전남북이주민지원센터	새터민 청소년 & 대학생을 위한 인권 아카데미 [늦봄학교]
28	(사)실로암사람들	인권테마역사에서 놀자
29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차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30	전북시설생활인인권연대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장애인인권 큰날개'
31	전북인권교육센터	제14회 전주 인권영화제
32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통합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 당초 3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1개 사업은 추진 포기



마. 인권현장 방문

2009년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인권현장 방문을 총 10회 실시했다. 인권현장 방문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사업이나 위원회가 미처 생각하



위원장 인권현장 방문(9. 17. 교남소망의집)

지 못했던 인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부서와 인식을 공유하여 이들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표 2-6-2] 2009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일 자	참 석	방문기관(성격)	소재지역
1.30	위원장, 김미화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봉사단체)	서울 동대문구
2.27	위원장	잔디마을(비닐하우스촌)	서울 서초구
3. 6	상임위원	꿈터(지역아동센터)	경기 광명
4. 6	위원장, 상임위원	은평의 마을(부랑아시설)	서울 은평구
6. 5	위원장	세광정신요양원(정신요양시설)	경기 용인
7.30	위원장	남양주시외국인근로복지센터(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경기 남양주
8.12	상임위원	애란원(미혼모 지원시설)	서울 서대문구
9.17	위원장	교남소망의집(지적장애생활시설)	서울 화곡동
10.28	위원장	햇살보금자리상담센터(노숙인 이용시설)	서울 영등포구
12.28	위원장	경생원(고아 등 생활시설)	서울 강동구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가. ICC와 APF

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10여 개의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며, 이 중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A등급 기구는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66개에 달한다. ICC는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강화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가인권기구들의 대표체이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2009년 ICC 부의장직을 수임하였고, ICC 연례회의(매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ICC 승인소위원회(통상 매년 2회, 제네바에서 개최)에 아태지역 대표로 참석하는 등 ICC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켜왔다.

ICC는 2008년 10월 '제8차 세계인권기구대회'(케냐 나이로비)에서 의결된 'ICC 정관(ICC Statute)'에 따라, 유엔이 위치한 스위스 민법에 준거하여 ICC가 공식적으로 법인조직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당시 ICC 부의장국으로서 ICC의 법인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국제사업의 논의와 추진에 적극 참여하였다. 비교적 신생기구라 할 수 있는 ICC는 법인화 이후 ICC 정관을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등 ICC 조직 및 제도 확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신규 국제인권외제 발굴 및 논의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ICC 사무국(OHCHR NI Unit)·ICC 제네바 상주대표(Katharina Rose)와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국제인권현안과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서(statement, comments)를 제출하거나 해당 주제 관련 위원회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부터 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직을 수임하고 있으며, 2009년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14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서 재 선출되어 2012년까지 승인소위 대표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승인심사 과정에서 아시아의 특수성을 전달하는 등 승인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여 하고, 국제인권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있다.

2)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는 199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멤버십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구로, 호주에 위치한 APF 사무국이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APF의 정회원 자격을 지닌 국가인권기구들이 모여 APF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지역 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APF는 총 15개의 정회원국(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팔레스타인, 태국, 동티모르, 카타르)과 2개의 준회원국(스리랑카, 몰디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2004년과 2007년 각각 APF 의장국, 2006년과 2008년 APF 부의장국을 역임하였으며, APF 지역 협력 구도에서 리더십 및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2009년 8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4차 APF 연례회의에는 정회원국들만의 비공개회의인 ‘APF 포럼이사회 회의’와 공개회의인 ‘APF 총회’ 이외에도, 별도의 병행회의인 ‘SEO회의(사무총장단 회의)’가 진행되었다. ICC 의장(Jennifer Lynch),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직원 등이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하였으며, APF 총회에는 국가인권기구 이외에도 43개의 NGO 및 5개국 정부대표(호주, 뉴질랜드, 나우루, 사모아, 영연방사무국)가 참석하였다. APF 포럼이사회 회의에서는 APF 의장국 및 부의장국 선출, APF 사무국의 연간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서 채택, APF 정회원국 심사절차 변경, APF 연례회의 개최방식 변경, ICC 아태지역 의장후보 선출 등이 이루어졌다. APF

총회에서는 정회원국의 연간 활동보고(annual activity report)와 ‘인권과 부정부패’, ‘인권과 종교’를 주제로 패널리티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포럼이사회는 APF 회원 자격심사에 ICC 승인소위절차를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APF 포럼이사회 회의에서 적절한 의사개진 및 발표를 통해 APF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고, 타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초안발의한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UPR 이행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위원회의 리더십과 정책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역내 공통현안인 이주자 인권문제를 다룰 공동의 협력 틀을 제안하여, ‘APF 이주인권에 관한 실무그룹(APF Working Group on Migration)’이 창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APF 연례회의 이외에도 APF 주최로 열리는 인권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회원기구 간 인권업무 정보 교류, 우리 위원회 활동 홍보 등을 도모하였다. 위원회는 매년 APF에 활동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APF가 진행하는 교육훈련·협력사업·역량강화 사업·국가인권기구 설립지원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나.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1)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 연수

2009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 연수사업(2009 Annual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Officers of NIs)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를 송출하는 아태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태국,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각 1명씩(중견관리자 및 실무자급)을 초청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소개하고 초청연수 참가자들 간 자국 인권기구의 조직, 제도, 주요 사업, 인권보호 및 조사관련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하고 공동의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9년 10월 26일부터 5일간 진행된 프로그램



에는 안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인권현장 견학도 포함시켜 연수 참가자들이 자국 출신 이주민들과 만나고 우리나라의 이주민 지원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아태지역 8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10.26~10.31)

이는 이주민 인권증진 사업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를 통해 우리 위원회 직원들 또한 타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 현안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

2) 개별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개별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는 특히 ICC 연례회의, APF 연례회의, 워크숍 등 국제 인권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협력기구 간 직원교류·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방문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들의 국제업무능력 배양, 국제전문성 강화, 선진적 인권정책 및 제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2009년에는 4개의 직원교류팀이 선발되어 훈련(연수)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주민과 제3세대 인권교육프로그램(미국)’,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 및 개선 사례(스웨덴)’, ‘캐나다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방지 홍보시스템과 기법(캐나다)’, ‘이주자 관련 정부와 인권위원회의 정책 대응(말레이시아, 태국)’을 주제로 각 팀이 해



2009년 8월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14차 APF 연례회의에 참가한 위원회 대표단

당 국가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국제인권기구 직원교류사업 결과보고회를 열어 참가 직원들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지역 국가인권기구(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인권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또한 2007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헌장(The ASEAN Charter) 및 2009년 7월 아세안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이행합의서를 토대로 2009년 10월 공식 창설된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도화 과정 동향을 파악하고 기구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Indonesia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여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인권구제를 위한 조사활동 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에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위원장의 동영상 메시지(video message)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유엔기구 및 기타 인권관련 기구와 협력

1) 유엔기구와의 협력

국가인권기구들은 국제인권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확대·강조됨에 따라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안을 통해 후속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정부·NGO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참석 지위 및 발언권을 확보하여 유엔의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제인권제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현재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ICC 소속 A등급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의제에 대해 구두 발언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UPR 심사에 관한 실무그룹 참석, 별도 보고서 제출, UPR 권고문 채택 시 구두 발언 등을 할 수 있다. 전 세계 70여 개 A등급 국가인권기구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때마다 참석하기 힘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ICC 제네바 상주대표(Katharina Rose)가 국가인권기구들을 대표하여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3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인통보제도 설치를 골자로 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장려하고 성안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ICC 제네바 상주대표(Katharina Rose)의 대리낭독을 통해 전달하였다.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사회에서와 같은 독자적 참석 지위 및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ICC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2009년 제53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인권사무처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국가인권기구팀(National Institutions Unit), 아태지역팀, 특별절차팀(Special Procedures)과 상시적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ICC 승인소위원회의 아태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 준비과정에서 ICC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팀’과 긴밀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실시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설립동향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이라크 인권정책 개발과정(ODA 지원 사업) 운영

우리 위원회는 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국별 초청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라크 인권부 및 인권업무 종사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한 달간 ‘이라크인권정책개발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 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의 개념, 역사 등을 개괄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외적 발전

및 기능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회,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 간 인권업무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회는 해외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이라크 인권정책개발과정 입교식(6. 8)

UN·OECD가 강조하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시 공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권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기타 외연 확대

위원회는 2004년과 2007년 각각 APF 의장국, 2006년과 2008년 APF 부의장국, 2007~2009년 ICC 부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국제인권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위원회의 국내외적 인지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제도적 설립과정, 역할,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교류하고자 위원회에 방문하는 국제 인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등 외부 인사 260여 명이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특히 2009년은 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한 외국의 법무·외교·복지 분야 공무원단의 방문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연구시찰의 목적으로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7월), 캄보디아 사법법제개혁위원회 고위급 대표단(7월), 몽골 국회의원단(9월), 영국 외무성 인권담당과장(12월) 등이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2009년 8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양성평등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피지·세네갈·우즈베키스탄·페루·이집트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성차별 시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의 멜란 버비어(Melanne Vermeer) 여성인권대사, 독일의 헤르타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왼쪽)과 접견 중인 현병철 위원장(11. 24)

도이블러-그멜린(Herta Daubler-Gmelin) 의원, 마이클 하스(Michael Haas) 하와이대 명예교수, 미국의 에릭 서로킨(Eric Sirotkin) 인권변호사 등이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공개 인권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2008년에 이어 2009년 여름에도 미국대학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인권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가.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2009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15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활동,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이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사업과 기능을 폭넓게 알리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국기가관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유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등이 사회적 의제로 형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언론브리핑과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과 추진사업이 보다 심층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6회에 걸친 브리핑과 간담회는 주요 인권정책과 사업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이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일상적인 언론의 취재 대응과 지원도 마찬가지다. 총 77건의 인터뷰와 취재협조 등을 통해 언론을 통한 홍보의 기반과 지평을 넓히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에 주력했다.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한 기획보도는 인권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했다. 우선 방송의 경우 장애인 인권 다큐를 총 16차례에 걸쳐 제작하여 방영(MBC 희망나눔 무지개)되도록 했고, 라디오방송을 통한 주간인권브리핑(1.1~4.25), 위원장의 교양오락프로그램 출연(KBS 사랑의 리퀘스트)도 이뤄졌다. 신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년(세계일보 5회), 고용허가제 5년(세계일보 3회), 비주택거주민 실태조사(한국일보 4회) 등을 계기로 기획보도를 추진했다. 이 같은 기획보도는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인권개선의 올바른 지평을 열어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홍보매체물을 통한 홍보

홍보 의제별로 매체 다변화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위원회를 알리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 활동성적을 홍보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특히 신문, 방송 등 전통 언론중심의 홍보채널을 블로그, 만화, 영상물,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으로 확대해 매체와 기법을 다양화했다.

먼저,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고객 3만8000여 명에게 격주 1회씩 발송하여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인권 현안을 알렸다. 또한 <휴먼레터>와 별도로 위원회에서 개최한 주요행사와 인권관련 자료, 정책의제들을 수시로 정책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쳤다. 또한 블로그 <별별이야기> 개설을 통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블로그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네티즌들의 각광을 받는 것으로 딱딱하



지 않으면서 쉽고 재미있는 소재를 통해 인권문제를 전파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블로그는 생활 속 인권문제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례를 쉽게 해설하는 ‘인권다반사’와 ‘생활 속 인권과 법’,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미디어와 인권’, ‘인권만화’ 등의 메뉴를 개설하여 총 153건의 인권홍보 콘텐츠를 게재했다. 특히 한국만화 100년을 맞아 만화가들과 함께 인권만화 28편을 창작해 블로그에 게재하여 다양한 인권문제를 쉽고 친근하게 해설했다.

2009년 발표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는 위원회의 역점 홍보의제 중 하나였다. 따라서 언론홍보와 함께 다양한 매체기법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홍보하여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필요성과 과제를 알렸다. 서울 지하철 4곳(종로3가역, 서울역, 시청역, 건대입구역)에 스크린 도어 광고를 통해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과 인권개선 과제를 홍보했다. 또한 전국 120여 곳에 설치된 정부 전광판광고를 통해서도 보고서에 대해 국민에게 알렸다.

이외에도 리플릿과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국민에게 배포했다.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가이드북을 제작했고, 다문화 사회 이주인권 증진을 위해 위원회 소개와 진정 및 상담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다국어 리플릿은 이주인권증진을 위해 MOU를 체결한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해당국 인권 위원회와 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인에게도 배포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2009년 한 해 동안 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권고 결정 등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를 총 12회에 걸쳐 외국의 인권 관련 인사와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위원회 활동을 알리고 국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넓혔다.

다. <인권> 잡지 발간을 통한 홍보

2003년 8월 창간한 이후 월간으로 발행하다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된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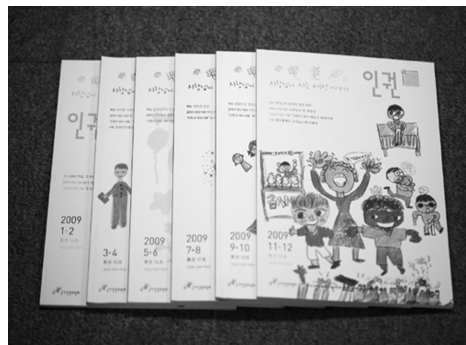
잡지는 2009년 12월까지 통권 59호까지 발간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총 6권을 발간했다.

[표 2-6-3] 2009년 <인권> 주요 내용

호 수	특 집	인권이 만난 사람	기타 주요 기사
2009.1/2월호 (통권 54호)	2009 겨울, 국가인권위원회	무장애도시를 꿈꾸는 남자 -2008년 대한민국인권 '국민포장' 수상자 이석형	-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역사의 햇불 - 미구잡이 단속의 후유증 - 친절한 그녀가 감내하는 서글픈 인권 유린 - 인권도시 광주의 특별한것들
2009.3/4월호 (통권 55호)	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연령차별금지법 시행	그에게 인권은 그냥 자연스러운 시선 -〈날아라 펭귄〉 감독 임순례	-이젠 인권책임경영시대 -무리한 강제철거, 이제 그만 -장애인차별금지법 1년도 안돼 무력화 조심 -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2009.5/6월호 (통권 56호)	경제위기와 인권	사람·생명·평화의 길 -오체투지순례단 문규현, 전종훈 신부, 수경 스님 그 외	- 대학에 안 가면 낙오자인가요? - 건강할 권리도 인권이다. -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렌즈를 통해 본 기후변화
2009.7/8월호 (통권 57호)	가족과 인권	“놀자, 매일매일 나의 축제로 만들자” -청소년문화공동체 ‘뽀뽀’ 대표 심한기	- 체벌 없는 학교는 불가능한가? - 비정규직, 정규직이 해법이다. - 경제위기 때 국가의 최소 의무는?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재개발)
2009.9/10월호 (통권 58호)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싸우자” - 소설가 공지영	- 개인정보감독기구 독립성이 중요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권위 - ‘식량권’ 도 인권인 이유 - 일할 권리 없는 난민 ‘신청자들’
2009.11/12월호 (통권 59호)	‘인권’ 이 인권의 길을 묻다	“사람이 먼저 바뀌고 인권이다” -지적장애인재활센터 우리마을’ 원장 김성수 주교	- 흉악범과 엄벌주의의 함정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나왔다 - 노숙인은 단지 집이 없을 뿐인데 - 방치되고 있는 ‘제2의 코시안’



<인권> 잡지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전문지임과 동시에 인권 현안과 정보, 지식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국민 교양지이다. 따라서 쉬운 잡지, 재미있는 잡지, 유익한 잡지를 지향해왔고, 수필, 기사, 르포,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2009년 발행한 6권의 <인권> 잡지도 이 같은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소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된 인권문제, 국내외 인권 현안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 잡지를 통해 인권이 나의 문제이며, 생활 속의 현안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권> 잡지는 다양한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호당 2만2000부를 발행하여 각계각층에 배포된다. 주요 발송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검·경찰, 교육청 등 공공기관, 다수인보호시설, 도서관, 의료기관, 인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인권과 관련 있는 개인 등이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 잡지 2009년 발간된 <인권> 잡지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권웹진>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인권> 잡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의 모든 내용에 보이스아이(음성전환) 바코드를 2009년부터 삽입하여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권> 잡지 주요 내용을 목·점자 도서로 발간하여 장애로 인해 <인권> 잡지에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2009년에는 <인권> 잡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명예기자단 98명을 위촉했다. 청소년명예기자단은 <인권> 잡지 모니터링과 기획 아이디어 제안과 원고 기고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제3절 평 가

위원회의 주요사업과 정책,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일상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알렸으며 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위원회 정책권고 등 주요 결정례를 적시에 홍보하고 주요 현안과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전략적 기획홍보와 언론홍보 등을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블로그 개설 등 홍보매체를 다변화하여 각계각층의 국민에게 위원회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법도 다양화하여 홍보의 질적·양적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외 단체협력과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위원회의 외연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사업, 지속적인 국제 홍보를 통해 위원회의 국제적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사업비 제한 등으로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통한 기본적인 기관홍보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존 자원을 홍보 콘텐츠화하고 2차 가공과 통합, 재창조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홍보와 협력사업의 국내외 통합적 수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교류협력의 지속화와 강화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제 7 장 인권사무소 활동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2009년 4월, 직제개편과 함께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 조사권이 각 지역 인권사무소로도 이양되어 지역 처리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정 및 다수인보호시설 각 영역 전문 조사관을 배치하고 면전진정 및 실지조사 처리 효율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3월 22일 「정신보건법」이 개정 시행되어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운영해오던 지역별 인권 강사단을 분야별로 재편하여 지역 전문가(인권강사) 중심의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8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주노동자의 주거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2006부터 추진해온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인권영상공모전은 많은 관심 속에 4회째를 맞았고, 위원회 공모전사업 재편에 따라 2010년에는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UCC공모전’을 부산인권사무소 주최로 진행할 계획이다.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가. 인권상담 및 민원안내 증가

부산지하철 내 인권위 상담전화 1331 홍보(2009년 3월부터 2개월간), 각종 사업연계 홍보활동(노인인권지킴이단 라디오 캠페인, 취업박람회장 내 연령차별금지법 홍보부스 운영, 울산인권마라톤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등으로 위원회 진정 및 상담업무 홍보를 통한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진정 접수 건이 426건에서 659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담 및 진정접수가 적은 다수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정함 운용 및 전화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해 면전진정 및 진정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위원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2-7-1]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9	659	1,776	1,729	4,164
2008	426	2,224	1,808	4,458
2007	322	1,961	1,690	3,973
2006	266	1,648	1,552	3,466
총누계	1,727	7,735	6,949	16,411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나. 인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영역별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 분야), 부산인권상담센터(새터민 분야), 여성문화인권센터(가정폭력 분야),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부산지소, (사)열린네트워크(이상 장애인 분야), 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 분야)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상담네트워크'는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상담 현황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상담 및 구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순회상담

2009년의 경우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정신의료기관 방문상담 및 직원간담회(3. 18. 울산마더스병원)를 통해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이해를 돕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차별 상담부스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부스를 운영(4. 20. 강서체육공원)하였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인식개선캠페인(10. 23. 서면 부전동 소재 밀리오레)을 진행하고 장애인취업박람회(11. 13.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 의실) 행사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인권지킴이단(부산모임)'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동(2009. 5.~10.)을 통해 노인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 개발에 힘썼다.

라.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1) 면전진정 처리 일수 단축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급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접수에서 처리까지 그 소요일수를 단축시키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면전진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2-7-2]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신청	종결(%)	철회(%)	진정접수(%)	상당종결(%)	평균 소요일수
2009	1,046	1,049(100.0)	179(17.1)	256(24.4)	614(58.5)	6.5일
2008	1,142	1,132(100.0)	148(13.1)	204(18.0)	780(68.9)	7.1일
2007	931	935(100.0)	154(16.5)	176(18.8)	605(64.7)	7.8일
2006	762	775(100.0)	124(16.0)	137(17.7)	514(66.3)	9.1일
총누계	3,969	3,950	620	789	2,541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다수인 보호시설 면전진정 활성화

2009년 3월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과 4월 다수인 보호시설 사건조사권의 지역 이양에 따라 정신보건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10곳)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방법(37곳)으로 진정함 운영 및 전화사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면전진정 및 진정처리 처리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진정권 보장에 힘썼다. 그 결과 면전진정 신청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진정 접수건도 127건에서 144건으로 증가하였다.



진정함 운영실태(12. 17)

[표 2-7-3] 부산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건수	시설수	종결	철회	진정접수
2009	144	34	84	25	33
2008	127	27	95	21	109
2007	138	31	102	24	13
2006	16	9	11	1	3
2005	1	1	0	1	0
총누계	426	102	292	72	158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가.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조사

2009년 4월 다수인보호시설 조사권이 각 인권사무소로도 이양됨에 따라 진정 사건건수가 2008년 250건에서 2009년 562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사건 처리기간은 30일 이상 단축되었으며 권고 및 합의종결의 경우 총 41건으로 전년 3건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였으며, 조사 중 해결건수도 전년 13건 대비 46건으로 253% 증가하였다.

또한 권고이행 모니터링에서도 교정시설의 불수용 사건에 대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인용으로 이끌었으며, 성실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권고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힘썼다.

[표 2-7-4] 부산인권사무소 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조사중	종결 소계	인용사건					미인용사건				
				소계	합의 권고	권고	고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2009년	562	63	608	41	-	31	-	10	567	266	10	291	-
2008년	250	-	184	3	-	3	-	-	181	121	8	52	-
2007년	124	-	93	2	-	2	-	-	91	58	5	28	-
2006년	28	-	16	-	-	-	-	-	16	11	-	5	-
총 누계	964	63	901	46	-	36	-	10	855	456	23	376	-

나. 인권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

정신보건시설 진정함 운영 및 전화사용 실태조사와 더불어 육군 53사단,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공군5전술비행단 등 상대적 인권 취약지역인 군영창 시설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군대 내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면전진

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다. 또한 2009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장애인차별 금지법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모임(13명으로 구성)의 경우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지역과제로 '14회 부산국제 영화제 장애인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11월 11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결과 발표 및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국과제로 선정된 주민센터 운영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12월에 진행하였다.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모니터링(12. 23)

3. 인권교육 활동

2009년 부산인권사무소는 그간 지역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인권교육 강사단을 분야별로 재편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비롯하여 정신장애인, 노인 등 위원회 주요사업 중 하나인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대학교(2008년 5월 MOU체결) 사회과학대학 교양과목 중 '다문화사회와 인권' 과목의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난 2009년 11월경에는 경상대학교(2008년 11월) 도서관과 함께 MOU체결 1주년 기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관할 지역 내 MOU체결 대학들이 인권교육·거점대학으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인권교육 강화

2009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119회 12,212명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에 소속된 장애분야 강사단, 청소년분야 강사단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권강사 양성 기본과정’, ‘인권강사 양성 심화과정’ 등을 개설·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강사단 소속 전문강사들을 중심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금정구청 민방위 교육생 대상 인권교육 7회(840명),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및 회원교육 10회(416명),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42회(1,359명), 청소년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5회(1,600명) 등 분야별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표 2-7-5]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분	인권특강	양성과정 *강사양성 등	직무교육 *의무교육 등	워크숍	방문교육	특별교육	인권영화 상영	계
학교분야	5,674	-	20	20	10	-	120	5,844
공공분야	1,013	-	1,462	9	3	3	-	2,490
시민분야	2,847	243	65	-	23	-	700	3,878
계	9,534	243	1,547	29	36	3	820	12,212

[표 2-7-6] 주요 내용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분	여성인권 (성평등)	노인인권	경찰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이주민(다문 화 존중)	장애인(정신) 차별인식 개선	기타	계
횟수	2	5	7	46	10	45	4	119
명	140	240	400	5,417	338	5,157	520	12,212

[표 2-7-7]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분	아동 청소년	교사	노인	장애인	사회 복지사	경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타	계
횟수	37	9	5	13	4	7	32	12	119
명	5,519	57	240	283	400	416	1,703	3,594	12,212

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2009년 11월 최종 완성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관련 세미나 및 발표회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 사업과 함께 2009년 3월 정신보건법 제6조의 2(인권교육)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진행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힘쓴 한 해였다. 부산인권사무소에서는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기관 대표 및 종사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등을 중심으로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였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1,662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설문 결과 응답자 중 64%가 강의만족도에서 '만족' 이상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인권교육 수강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0.5%가 재수강을 희망하였다.

다.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역 내 청소년들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 및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을 구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 및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등에 관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12회(2,954명)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발표 및 토론회(7. 14. 국민연금부산회관)를 개최하여 지역 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교류협력 사업

가. '인권전시관' 조성을 위한 부산교통공사와 MOU 체결



2009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와 '인권신장 및 인권테마역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인권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부산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 지하 1층 대합실을 인권전시관(장애체험관 포함)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민주·인권·평화에 부합하는 인권행사 개발, '시민 및 부산교통공사 임·직원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인권전시관은 위원회 홍보를 비롯하여 인권 관련 도서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인권도서관,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장애체험관, 인권을 주제로 하는 창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인권전시관 및 공연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문객을 위한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2010년 4월 개관 후 본격적으로 방문교육 및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지역 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인권 체험 및 실천의 장으로 지역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신장 등을 위한 협약식(12. 1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신장 및 인권테마역 조성을 위한 협약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라 한다)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인권교류 협력증진 및 지역사회 인권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제1조 (상호 협력) 양 기관은 다음 사항의 추진에 상호 협력한다.

- ① 민주·인권·평화에 부합하는 인권행사(프로그램)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 ② 시민들과 공사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에 상호 협력한다.
- ③ 지역내 사회적 약자(정신장애인, 다문화 사회구조 이주민,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2조 (인권테마역 조성 및 운영)

- ① 공사는 인권테마역 조성을 위한 장소와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무상 제공한다.
- ② 공사는 역구내 자동발매기 운영화면 및 열차내 공익홍보면 일부는 인권의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한다.
- ③ 인권위는 인권테마역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제3조 (부칙)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부산교통공사
사장 안 준 태

나. 인권공동체 외연 확대를 위한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인권현안 청취 및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주요 인권현안 협력사업(토론회, 워크



사회적약자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 보고회(4. 24)

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문화 행사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즈음하여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주최해온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문화 한마당'을 올해는 2009년 12월 10일 민주공원에서 진행하였다. 노인으로 구성된 예술단 '꽤지나칭칭나네' 팀의 고전무용, 청소년으로 구성된 B-Boy 댄스팀 '스텝크루'의 브레이크 댄스,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예술팀 'Soul Mate'의 <신짜오! 세타기?>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특히 다국어로 읽는 세계인권선언문의 경우 한국어를 비롯한 러시아어, 중국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타갈로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영어 등 모두 10개 국어로 낭독

습, 인권행사 등) 개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총 20여 회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중점 분야인 이주민 인권보호, 노인 인권보호,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보호 사업 등을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민을 위한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의 파트너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인권공동체의 외연 확대에 기여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문화 한마당(12. 10)

부산일보
busanilbo.com

“내 인권을 돌려주세요!”

부산인권위 진정 올해 610건 작년보다 44% 증가
교도소·정신병원 등 많아... 국민 권리의식 높아져

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54건, 2006년 396건, 2007년 422건으로 2006년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점차 다른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침해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기관으로는 교도소를 비롯한 구급시설이 29건(약 4.8%)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이 178건(29.2%)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경찰서(110), 서방자치단체(20건, 3.3%), 주식회사(16건, 2.6%) 등이었다.

진정 사유별로는 구급시설의 경우 '수용환경 불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권 침해(28건), 징벌권 제한(26건), 부당한 강제(22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다수보호시설은 불법 강제수용(28건), 가혹행위(20건), 외부교통권 제한(16건)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경찰은 인권권 침해(22건), 폭행(7건), 불법 체포(4건) 등 인권침해(6건) 등으로 불만을 샀다.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부산 동구영주동 민주공원에서 인권문화마당 '인권아, 놀자'를 개최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이날 '부산증착하여상당도'를 2009년 인권선언문 '수용환경 불량, 서방자치단체' 등으로 불만을 샀다.

국기인권의회의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2009년 인권문화마당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집중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모두 610건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428건에 비해 44% 늘어난 수치

관위는 신체관사를 위한 목격담 공판 내부를 발행했다. 해당 교도소장은 이를 받아냈다.

확실과 가혹행위, 수치상 유방 등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는 교도소를 비롯한 구급시설은 물론 다수인보호시설과 경찰서, 심지어 지자체단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건수가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인권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이 급상당한 반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미흡 노력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기인권의회의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2009년 인권문화마당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집중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모두 610건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428건에 비해 44% 늘어난 수치

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54건, 2006년 396건, 2007년 422건으로 2006년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점차 다른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침해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기관으로는 교도소를 비롯한 구급시설이 29건(약 4.8%)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이 178건(29.2%)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경찰서(110), 서방자치단체(20건, 3.3%), 주식회사(16건, 2.6%) 등이었다.

진정 사유별로는 구급시설의 경우 '수용환경 불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권 침해(28건), 징벌권 제한(26건), 부당한 강제(22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다수보호시설은 불법 강제수용(28건), 가혹행위(20건), 외부교통권 제한(16건)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경찰은 인권권 침해(22건), 폭행(7건), 불법 체포(4건) 등 인권침해(6건) 등으로 불만을 샀다.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부산 동구영주동 민주공원에서 인권문화마당 '인권아, 놀자'를 개최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이날 '부산증착하여상당도'를 2009년 인권선언문 '수용환경 불량, 서방자치단체' 등으로 불만을 샀다.

국기인권의회의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2009년 인권문화마당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집중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모두 610건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428건에 비해 44% 늘어난 수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12. 4)

되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의 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그간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처리한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이 보도되어 인권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연구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2008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이어 2009년에는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실태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내용은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사하구와 사상구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100가구를 선정하여 기본 주거시설과 주거환경, 주거생활의 애로점, 사내 기숙사와 사회기숙사 및 독립주거 등 주거유형별 주거시설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대학교, 부산발전연구원, 이주민과 함께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대안을 내놓은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4일 노동부, 부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도시공사 등 관련기관과 NGO가 참가하여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현실적인 대안을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 언론 및 지역사회의 호응뿐 아니라 IOM(국제이주기구) 등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5. 홍보

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웹페이지, PCRM 활용 강화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캠페인(5. 13)

정책고객시스템(PCRM)을 통해 부산인권사무소의 주요행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난 11월엔 부산인권사무소 블로그(blog.naver.com/human1331)를 개설하여 위원회를 비롯한 부산인권사무소의 주요활동 및 인권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인권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나.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2009년에는 위원회 중점분야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노인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된 노인인권지킴이단(부산모임)과 함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5. 13. 부산광역시청 광장,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학교역)을 비롯하여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영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캠페인(5. 13)

제작하여 TV시민세상(6. 30. MBC TV시민세상)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MBC라디오 <희망배달 캠페인>과 협의하여 매일 2회(8. 15.~31. 총 30회)에 걸쳐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2009부산광역시 실버엑스포 기간 중에는 정책홍보관을 운영(7. 2.~4)하여 노인인권과 차별에 관한 포스터를 전시하고 실버엑스포를 찾은 방문객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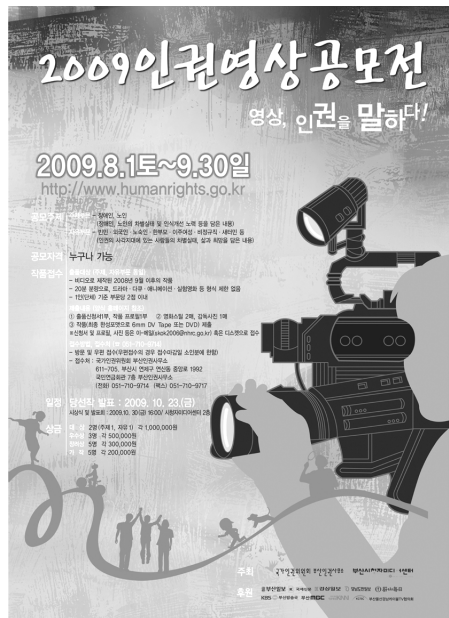


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0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앞서 '2009 부산광역시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연령차별금지법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도 인권순회상담 및 장애인차별인식개선 교육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였다.

다.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2009 인권영상공모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를 지역민이 직접 영상에 담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애환과 희망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차별실태 고발, 장애인차별인식 개선'과 '노인에 대한 차별실태 고발, 차별인식 개선'을 주제부문으로, '그 밖의 인권상황에 대한 영상'을 자유부문으로 하는 '2009 부산·울산·경남 시민 인권영상공모전'을 4회째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주제부문 대상작 <명수, 연애사건>(팽명도 연출)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권상황을 담은 18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자유부문에서는 <다문화시대의 대한민국>(권명국 연출)이라는 다문화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은 DVD로 제작되어 교육청, 교원연수원, 경찰청 등 공공기관 86곳,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복지관 등 190여 곳 등에 배포하여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7-8] 2009 부산울산경남 시민 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

순 위	작 품 명	연 출 자
대상(주제부문)	명수, 연애사건	팽명도
대상(자유부문)	다문화시대의 대한민국	권명국
우수상	인도에선 온 말리	장재현
	달콤한 소리	황성
	육교, 횡단보도 그리고 사람들	오진환
장려상	꿈을 여는 상자	박경배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김태용
가작	새롭게 부르는 노래	이원진
	희생	문동진
	겨울, 잠	강진아

6. 평가

2009년은 지난 어느 해보다 권리구제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전담조사관제 시행, 상담업무 조정, 사건토론회 등을 통한 조사 전문성 향상의 결과로 2008년 128건에 불과하던 사건종결건수가 2009년 말 529건으로 30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9년 4월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조사권의 지역이양으로 전체 사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일수도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조사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수의 인용,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 등 실질적인 구제활동이 이뤄졌다.

사전예방활동으로서의 교육·홍보·협력 분야에서도 위원회 중점사업과 연계한 사업 진행 및 독자적 업무수행을 통해 노인인권 영역의 경우 부산지역실버 EXPO 기간 중 인권지킴이 정책홍보관 운영, 부산MBC라디오 홍보를 병행하여 노인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주인권의 경우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연구로 부산광역시 등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연구 결과 등이 언론매체에 10여 차례 이상 집중보도되면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편의제공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확산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토론회



후원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인권보호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권관련 중점 전략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단체와 연계는 물론 교정기관장과의 업무협약, MOU체결 국립대학교 공조활동 및 구청 주최 인권교육 지원, 부산교통공사와의 MOU 체결 등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국가·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중점사업 외에도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0년은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지 5년차 되는 해로 지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점검을 통해 지역 밀착형 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조사 약진과 인권조례 제정, 위원회 전략사업의 전국화 기여.’

2009년 10월, 개소 4주년을 맞은 광주인권사무소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의 업무는 4월 위원회 조직개편 이후 구체화됐다.

먼저 ‘광주지역사무소’에서 ‘광주인권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업무에서는 관할지역 내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조사권이 광주인권사무소로 이관됐다. 전반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인 분야도 나타났으며, 사무소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도 역량을 쏟았다.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 및 조사 분야는 접수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은 증가했다. 조사 분야는 추가 인력증원 없이 다수인보호시설 조사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리 기간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실질적 구제를 돕는 인용사건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교육·홍보·협력 업무는 위원회 전략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연계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다문화인권 증진, 장애인인권 개선 등의 영역별 인권사업에 교육·홍보·협력 기능을 집중했다.

이런 활동은 사무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이뤄져 위원회 전략사업의 전국화에도 기여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사실상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관련 지자체 및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과의 효율적인 연대를 통해 얻은 결과다. 또한 인권테마열차 사업을 강진군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권테마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인권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라디오방송 고정 출연과 일간 신문의 고정기고를 통한 인권의식 홍보, 지역 내 인권 감수성을 가진 영상매체 제작자들의 축제의 장인 인권영상공모전을 진행했다.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가. 인권상담 네트워크 운용으로 상담 역량 강화

2006년 2월부터 시작한 ‘인권상담 네트워크’는 2009년에는 질적 변화를 꾀했다. ‘인권상담 네트워크’는 인권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유관 기관의 상담원들과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이다. 매회 특정 주제를 지정 후 전문가 강의 청취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 내 인권 현안에 대해 상담원들 간에 의견 교환도 이뤄진다.

‘인권의 이해, 상담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시작한 2009년 ‘인권상담 네트워크’는 총 4회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인권감수성 훈련부터 상담 시 현실 요법 활용 방안 등 폭을 넓혀 실시했다.

[표 2-7-9] 인권상담 네트워크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내용	장소	강사	참석인원
1	2.24	인권의 이해, 상담자의 역할	광주인권사무소	최완욱(광주인권운동센터) 채숙희(광주여성의전화)	22명
2	4.22	현실요법, 생활법률	광주인권사무소	제하림(전문상담위원) 김상훈(전문상담위원)	17명
3	7.14	선택이론, 청소년 노동인권	광주인권사무소	제하림(전문상담위원) 임동현(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명
4	10.27	인권감수성훈련, 아동성폭력관련쟁점	광주인권사무소	신기숙(해바라기아동센터) 박병훈(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명



나. 인권순회상담으로 인권침해 예방효과 도모

‘찾아가는 인권서비스’ 인권순회상담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위원회의 상담 방법이 다양화돼 있지만 직접 마주하고 이뤄지는 대면상담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총 6회에 걸쳐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2009년의 순회상담은 다른 사업들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행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면진 진정과 진정사건 조사 업무와 관련해 위원회와 접촉이 적은 시설 등을 선정해,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권 보장에 대한 실태까지 점검했다. 또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운영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과 연계해 순회상담을 진행했다.

순회상담에는 2008년에 위촉한 전문상담위원들도 함께 참가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전문상담위원은 사회복지사, 노무사, 변호사, 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복지센터 대표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표 2-7-10]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회 차	일 시	장 소	대 상	내 용
1	1.20	광주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상담종결 11건
2	4.20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상 동	상담종결 7건
3	5.26	광주광역시 소재 무료 급식소	상 동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연계
4	7.30	전남 소재 정신의료기관	상 동	상담종결 30건
5	9.24	전남 나주(나주장터)	나주시민	상담종결 20건
6	9.25	전남 목포(시민공원)	목포시민	상담종결 10건, 진정접수5건

다. 진정·상담의 소폭 하락

개소 4주년을 맞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14,300여 건의 진정·상담 등이 이뤄졌다. 2009년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정·상담 건수가 줄어들었다. 진정사건의 경우, 421건으로 전년 대비 3% 정도, 상담은 1,486건으로 11%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적으로 전년 대비 1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 2-7-11]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5	77	104	107	288
2006	182	896	1,261	2,339
2007	373	1,282	1,305	2,960
2008	433	1,674	2,694	4,801
2009	421	1,486	2,087	3,994
총 누계	1,486	5,442	7,454	14,382

※ 총 누계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가. 다수인보호시설 조사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의 업무 중 가장 큰 변화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권이 이관된 점이다. 2009년 4월 위원회의 직제개편이 이뤄진 후, 4월 13일부터 조사국에서 담당하던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를 광주인권사무소가 맡게 됐다. 이로써 광주인권사무소는 기존에 수행하던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9개월여 동안 진행된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는 139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몇 가지 성과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진정사건 중 각하사건 제외) 중 43%를 권고,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 등으로 처리하여 5건 중 2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이뤄낸 셈이다. 이는 사건조사를 진행하면 곧바로 환자를 퇴원시켜버리는 사례(각하)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구제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월에 전북의 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권고한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의 허위서류 작성 등을 밝혀내 감금죄 고발 등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의 경각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교정사건 접수건수는 2008년의 64% 수준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건조사도 있었다. 2009년 11월 관할지역 교도소 내에서 노역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련자 징계권고, 피해자 법률구조요청 등을 권고한 것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

[표 2-7-12]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건수

구 분	구금시설	다수인시설	계
2006년	46	-	46
2007년	202	-	202
2008년	305	-	305
2009년	194	139	333
누 계	747	139	886

※ 교정시설 2006. 9, 다수인보호시설 2009. 4. 조사 시작

나. 면전진정 신청 기관의 변화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업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교정시설 면전진정의 감소와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의 증가로 요약된다. 2008년에 883건이던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은 2009년엔 440건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다수인 호보시설의 면전진정은 2008년엔 118건이었으나 2009년엔 276건으로, 약 2.3배가 늘었다. 교정시설의 경우 시설 측의 운영 방향에 따라 면전진정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다수인보호시설은 면전진정 업무와 진정사건 조사를 병행 처리함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다수인보호시설은 통계에서 보듯, 조사업무가 강화될수록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권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사활동이 증가될수록 더욱 많은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13]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 건수

구 분	교정시설	다수인시설	기 타	계
2005년	112	-	-	112
2006년	615	5	-	620
2007년	798	65	-	863
2008년	883	140	4	1,027
2009년	440	282	2	724
누 계	2,848	492	6	3,346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2009년 초에는 조사관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진정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5월엔 시설별 진정함 관리자 108명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설 550곳을 대상으로 진정함 관리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표 2-7-14] 다수인보호시설 진정권 보장 활동

(단위 : 건)

일 시	내 용	대 상
2~4월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점검 실시	다수인보호시설 77개소
5. 7.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관리자 소집교육	시설 진정함 관리자 108명 참석
11~12월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관리자 자체교육 요청	다수인보호시설 550개소

3. 교육·교류협력 사업

가. 전문영역별 심화교육 추진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의 인권교육은 총 99회에 걸쳐 4,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9년 인권교육의 특징은 전문영역에 대한 심화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었다. 이 교육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 각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광주인권사무소는 소집교육 6회와 방문교육 4회를 추진했다.

2009년 새롭게 시작한 인권교육인 인권테마역사 방문프로그램은 2008년에 개관한 인권테마역사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엔 초·중·고등 학생들과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참여, 총 22회에 걸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권테마역사 방문프로그램에서 장애체험이 이뤄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인권영화 감상, 장애인 공감 프로그램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밖에도 강사단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인권교육 강사단은 워크숍을 진행해 새로운 인권교육의 흐름을 공유했다. 관할지역 내 다문화 관련 인권에 관심이 깊은 교수와 시민사회 대표 3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단 양성과정을 진행해 향후 다문화 인권교육의 수요에 대비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활동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워크숍도 진행했다.



시설생활인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관리자 교육이 이뤄졌다.(5. 7)

[표 2-7-15]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 진행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교정/검/경 공무원	7	11	16	7	41
행정/교육공무원	0	5	4	8	17
사회복무(공익)요원	0	0	65	-	65
다수인보호시설	6	9	14	41	70
학 생	1	2	3	27	33
기 타	3	12	18	16	49
합 계	17	39	120	99	275

나. 시민사회, 지자체 등과의 협력 성과 가시화

출범 4년을 맞이해 협력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들이 나타났다. 그 한 가지는 광주광역시가 사실상의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08년 5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조례에의 인권적 접근 모색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지역 내 전문가그룹, 단체 활동가, 시·구의원을 망라한 '인권조례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이후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자체가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20여 차례의 연구모임을 통해 작성된 조례초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시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09년 9월엔 인권조례 선행 사례 연구를 위해 일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0월엔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가 시 의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전국 최초로 통합적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광주인권사무소의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12월엔 전북 지역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했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인권 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 현황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도 실시했다. 이 연구는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의 조례를 여성, 노인, 아동, 이주, 장애 등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였는데,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 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지자체와의 협력 성과는

인권테마열차 운행에서도 나타났다. 인권테마열차는 광주지하철의 차량(2칸) 내부의 모든 광고 게시판에 인권 콘텐츠를 게재하여 운영하는 열차를 말한다. 이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인권테마열차는 강진군이 군내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인권 증진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참여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권테마열차는 지자체와 공동수행이라는 추진방식뿐만 아니라 인권테마열차를 구성하는 인권 콘텐츠에서도 몇 가지 주의깊게 볼 부분이 있다.



한 이주여성이 인권테마열차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과 글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12. 19)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자체가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5. 16)

무엇보다 강진군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과 초·중·고생들의 직접 참여가 뜻 깊다. 인권테마열차는 강진군에 사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삶을 소재로 삼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글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세계인권조약을 자국어와 한국어로 써서 인권테마열차에 게시했다. 강진군 내 초·중·고 학생들은 인

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은 '인권느낌표'를 작성했는데, 이 역시 인권테마열차에 게시됐다. 인권테마열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 동안, 매일 12회 정도를 운행한다.

2009년 협력사업 가운데는 위원회 전략사업과 맥을 함께한 사업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이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활동가 10명이 함께했다.

모니터링단은 2009년에 지역과제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을, 전국과제로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해서는 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및 연극공연, 장애차별 개선과 인식변화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광주발표회, 광주 장애인부모 인권교실 등이 펼쳐졌다.

노인지킴이단 운영은 위원회 전략사업과 연계한 광주인권사무소의 신규사업이다. 2009년 5월에 총 13명으로 구성된 노인지킴이단을 발족하여, 무료급식 봉사 및 경로당 방문, 독거노인 방문 상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방문 상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와 별도로 '노인인권실태보고와 개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위원회 전략사업과 연계한 광주인권사무소의 신규사업이다.



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해 지역사회의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의 폭도 넓혔다.

이 밖에도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식을 치렀는데, 지난해와 같이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주최하여 시민의 참여 폭을 넓혔다. 이번 기념식은 2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했는데, 2009인권영상공모전 시상식,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의 개막축하 모듬 북 공연과 기념식, 문화단체들의 문화공연과 인권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고, 가수 안치환이 특별출연했다. 또한 2006년부터 실시해오던 지역 인권현안과 관련한 실태조사 목록에 2009년에는 '광주지역 다문화 가정의 인권상황 및 자녀 교육권 실태조사'를 추가했다.

[표 2-7-16] 광주인권사무소 실태조사 현황

연 도	제 목	비 고
2006	• 관할구역 내 인권의식 실태조사	자체실시
2007	•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 새터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태조사	자체실시 자체실시
2008	•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체실시
2009	• 광주지역 다문화 가정의 인권상황 및 자녀 교육권 실태조사	자체실시

4. 홍보

가. 이주인권 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

2009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위원회 전략과제와 연계된 홍보사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영역이 이주인권 분야인데, 사진전과 이주여성 수기공모 두 갈래로 진행됐다.

사진전은 우선 광주전남 지역 이주여성의 삶을 기록사진으로 담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아기 얼굴이 까맣게 태어날까봐 날마다 걱정했다는 이주여성, 남편과 이주여성 아내의 이름이 나란히 걸린 장흥의 한 가정, 아이 피의 반은 베트남인 것을 자랑스



이주인권사진전은 8월부터 10월까지 45일 동안 전남 강진, 전북 전주, 광주, 제주 지역에서 진행됐다.

자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이주여성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일곡도서관, 제주공항에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대중적인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했다.

이주 관련 홍보사업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 효과까지 염두에 두었는데,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기도 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 6개월에 걸쳐 이주여성 수기를 공모하여 이를 발표하는 프로그램(매회 20분, 총 25회)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경험담을 수기형식으로 방송하여 지역민들이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에 기여했다.

러워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어느 남편 등의 모습이 50편의 사진으로 기록됐다.

전시는 <인자 우리 식구여>라는 제목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45일 동안 전남 강진, 전북 전주, 광주, 제주지역에서 진행됐다. 첫 사진전은 8월 8일 강진청자축제장에서 열렸는데, 성공한 지역 축제로 꼽히는 청

[표 2-7-17] 결혼이주여성 사진전 현황(2009년)

기 간	지 역	장 소
8. 8 ~ 8. 1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청자축제장
8. 28 ~ 9. 2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교육문화회관
9. 4 ~ 9.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9. 11 ~ 9.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10. 9 ~ 10. 16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10. 19 ~ 10. 26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나. 인권영상공모전을 통한 홍보

2009년 3회를 맞이한 '인권영상공모전'은 지역 내 영상 콘텐츠 개발과 인권감수성 훈련매체 개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내는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권영상공모전 대상작인 <한나의 하루> 스틸 사진

2009년 인권영상공모전은 아마추어들이 영상촬영부터 편집 등 기본적인 영상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영상교실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공모전에는 총 31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아마추어들의 참여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게 총 19편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200만원의 상금과 국가인권

위원회장이 수여되는 인권상(대상)에는 노동주 씨가 연출한 <한나의 하루>가 선정됐다. <한나의 하루>는 시각장애인인 한나의 외출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노동주 씨는 특히 2008년 인권영상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지역의 영상매체 제작자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최우수작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를 연출한 김영순 씨가 수상했는데,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화물운송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다 생을 마감한 박종태 씨의 삶을 직선적 시선으로 다뤄 주목을 받았다.

[표 2-7-18] 2009 인권영상공모전 수상작

순 위	작 품 명	연 출 자
인권상(대상)	한나의 하루	노 동 주
최우수상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김 영 순
우수상	시골정류장에서 만난 어느 베트남 여인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박 정 구
	The Little Princess	정 우 연
	천하무적 박진희의 일본원정기	임 용 철
	오해	한 누 리
장려상	1337 외 12편	이 동 석

다. 기본 홍보 역량의 강화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흔히 활용되는 게 ‘인권은 □□□□이다’는 문장의 □□□□를 채우는 방식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09년에 이 방식을 ‘인권느낌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했다. 인권느낌표는 ‘인권, 물음으로 싹트고 느낌으로 자란다’는 표어와 심볼을 제작, 다양한 사업에 활용했다. 우선, 강진청지촉 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풍선을 제작하여 나눠줌으로써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북돋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또한 인권테마열차 콘텐츠 제작 시에도 초·중·고생들에게 인권느낌표를 받아 지하철 내에 게시했다.



홍보사업의 변화는 인터넷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기존 블로그를 ‘호주와 남주네’(1331hr.net)로 개편하여 운영했는데, 보도자료, 설명회, 토론회 등의 활동 결과를 게시해, 광주인권사무소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고’ 역할로 변화를 시도했다.

언론홍보 영역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상적 홍보 외에도 신문방송을 통한 고정적인 인권 홍보채널 가동도 병행했다. 먼저, 방송 영역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CBS광주 라디오에 고정 출연해 한 주간의 인권 소식을 생생히 제공했다. 총 42회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문영역에서는 지역 일간지 『광주드림』에 ‘사례로 본 인권’ 연재를 진행했다. 이 연재는 ‘강요된 임의동행은 인권침해’, ‘군복무 중 적절한 치료는 국가의무’,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 ‘전과사실 누설로 인한 차별’ 등 위원회 권고 사례가 실렸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인권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5. 평가



‘광주지역사무소’에서 ‘광주인권사무소’로의 개칭은 광주인권사무소의 내적 변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 지난 3년이 위원회의 지역사무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개소 4주년을 맞는 2009년의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역’이란 공간적 의미를 넘어 ‘인권’의 질을 높이는 내적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위원회의 사명을 호남·제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책임감 있게 실현하는 조직으로 질적 성숙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위원회 전략과제의 전국화를 위해 다문화인권 증진, 장애인인권 개선 등의 영역별 인권사업에 교육·홍보·협력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공간인 인권테마역사의 운영, 인권조례, 인권영상공모전 등 지역에 걸맞은 특성화 사업을 육성 발굴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광주인권사무소가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권 행사, 인권조례 사업 등에서 나타난 가시적 성과, 위원회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의 협력모델을 제시한 인권테마열차 등도 광주인권사무소의 내적 변화 첫 해에 나타난 새로운 가능성으로 평가해 볼직하다.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3년차에 접어들면서(2007. 7. 1. 개소) 대구·경북 지역민 가까이 있는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권상담, 진정접수, 면전진정 처리 등 위원회 업무를 지역에서 충실히 행함과 아울러 인권교육, 홍보,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중점 대상 그룹별로

유관기관 단체 협력, 인권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민의 인권옹호, 권리구제 및 인식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가. 인권상담 및 민원안내 증가

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는 상담과 안내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년에 비해 진정 접수, 상담, 안내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구금·보호시설의 진정권 강화를 위한 활동 결과,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건의 41%를 차지하였고, 진정사건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전히 다수인 보호시설과 구금시설의 밀집지역(10개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직원들은 내외부 상담사례학습, 영어상담 학습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상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표 2-7-19] 대구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상담·안내·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합 계
2007	158	297	236	691
2008	388	773	1,207	2,368
2009	410	900	1,679	2,989
총 누계	956	1,970	3,122	6,048

※ 총 누계는 2007년 7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나. 순회 상담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장애인의 날' 순회상담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접수뿐만 아니라, 지역 정신건강상담센터의 인권교육 요청 접수, 인권위 및 지역사무소 홍보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종합이동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 노인 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상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인권 관련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순회상담(4. 21)

다. 인권상담 지역네트워크 구축

인권상담 지역네트워크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 노숙인, 새터민 등) 관련 단체, 기관의 상담활동가로 구성되어 상담 관련 정보공유,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기관 안내 등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고, 인권상담의 지역 확산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인권상담 서비스 MAP' 제작을 진행 중이고, 2010년에 1차 제작을 완료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라. 면진진정 접수 및 처리

1) 면진진정 접수 및 처리

2009년 면진진정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7-20] 대구인권사무소 연도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신청	종결(%)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평균 소요일수
2007	308	292(100.0)	59(20.2)	75(25.7)	158(54.1)	6.3일
2008	1,154	1,132(100.0)	207(18.3)	229(20.2)	696(61.5)	12일
2009	1,190	1,189(100.0)	209(17.6)	250(21)	730(61.4)	10.2일
총 누계	2,652	2,613	475	554	1,584	9.5일

※ 총 누계는 2007년 7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

2) 다수인 면진진정 활성화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진진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가이드북'을 제작 (2008년 12월) 배포, 1331 상담전화 홍보 스티커 제작 배포,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 진정처리 안내교육 실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다수인보호시설 면진진정신청건수가 2007년 총 24건에서 2008년에는 75건, 2009년 17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면진진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의 업무수행 시 현장해결 등 사전예방 차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4월부터 조사업무를 개시한 이후, 2008년에 284건을 접수하여 193건을 처리하였고, 2009년에는 556건을 접수하여 437건을 처리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은 진정접수건수와 사건처리건수가 2배가량 증가하였고, 인용 및 조사 중 해결건수도 6배 증가하였으며, 대구인권사무소 자체 조사관 모임을 통해 사건처리 관련 규정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조사관의 적극적인 개인별 조사업무 교육지원을 통해 업무절차 습득, 사건 분석 등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인권교육

가. 교육 실시 횟수의 증가

2009년 대구인권사무소는 총 74회 4,329명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8년(총 61회 4,124명)에 비해 교육횟수는 21%, 교육인원은 4%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 자체의 인권교육 수요를 반영함은 물론, 2009년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중점과제(특히 장애, 노인, 이주여성 등)로 추진된 사업에 통일성과 집중성을 기하고 중점과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활동을 한층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대상 및 분야 다양화



정신보건분야종사자 인권교육(11. 25~12. 8)

교육하였으며 이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7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다문화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교육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차별예방'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도출하는가 하면, 전문강사 발굴 및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울러 지역의 전문가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사무소 인권교육강사단의 적극적 활동으로 2009년 대구인권사무소가 실시한 인권교육 74회 중 28회를 인권교육 강사단이 직접 실시하여 민관협력의 사례를 남겼다.

다. 다양한 인권교육 문화행사 전개로 인권감수성 향상

월례인권영화상영회(매월 1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주년 토론회(4월), 아동청소년 인권캠프(5월), 어린이 다문화 캠프(7월), 아동청소년 인권음악회·사진전(10월), 국제조약 국내이행 워크숍(11



아동청소년 인권사진전(10. 21~25)

월), 이주민 인권실태 사례발표회(12월), 다문화 인권교육 사례발표 토론회 (12월) 등을 진행한바, 수많은 시민이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관람·응모 등의 형태로 참여하였고, 지역민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도 인권문화 확산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4. 교류 협력사업

가. 인권교육 거점대학(영남대 인권교육센터)과 협력 활성화

지역 인권교육 거점대학인 영남대 인권교육센터(위원회와 MOU 체결)와 2009년 5월부터 '인권조례 만들기 지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독일, 일본 등 사례 연구활동, 토론회(10월), 연구보고서 발간(12월) 등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조례 제·개정 필요성 함양, 시의회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기반 마련, 인권조례 제·개정 내용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나. 분야별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인권현안 청취 및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주요 인권현안 협력사업(토론회, 워크숍, 인권행사 등) 개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위원회 내부 협력사업 등 총 60여 회의 대내외 협력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장애,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이주 및 다문화 분야는 2008년 구축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기획 및 실행 등 한층 긴밀한 체계가 구축되었고, 그 결과 인권교육 강사역량 발굴 및 구축, 전문성 함양 등 역량강화로 이어졌다. 2009년 신규 분야로서 노인 분야의 경우에는, 인권상담, 위원회 사업 홍보,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네트워크 기반 구축,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5. 홍보

가. 온라인 공간(웹 블로그, 뉴스레터)에서의 시민과 소통

정보화시대,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웹 블로그(<http://blog.naver.com/humandg>)는 2009년 방문자 수가 21만 명을 넘어 (2008년 6만), 일일 평균 300여 명 이상의 네티즌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1330여 명의 적극적인 네티즌(웹 블로그 서로이웃)은 위원회(사무소)의 든든한 홍보협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체 뉴스레터는 정기적인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민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 블로그

나. 인권기자단 운영으로 시민참여형 홍보 활동 전개

2009년 3월부터 11명으로 구성된 제2기 인권기자단은 대구인권사무소 각종 사업의 모니터링, 생활 주변의 인권이슈를 개발해서 총 50회의 기사를 작성하여 웹 블로그 등에 게시함으로써 시민참여형 홍보 활동을 활성화였고, 블로그 콘텐츠 확대 및 온라인 홍보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공동체라디오(성서FM) 고정 코너인 '산소같은 인권, 톡톡'을 개설·진행하며 위원회 및 대구인권사무소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 확충과 더불어 지역민의 인권의식 증진에 기여하였다.

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역량 확보

2009년 8월부터 13명으로 구성된 시민 인권영상제작단은 인권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역량 확보 및 홍보업무의 콘텐츠 확대, 대시민 홍보 활성화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제작한 영상은 대구인권사무소 웹 블로그에 등록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관련 기사] 난민, 자금을 찾아 벼를 낚는 사람들 <http://blog.naver.com/humanday/1007689854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영상제작단

시민인권영상제작단 제작 영상

라. 각종 공모전을 통한 시민참여형 캠페인 전개

2009년 4월부터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 (4~5월), 생활 속 인권찾기 시민창안 공모전(9월), 아동청소년 인권사진 공모전 (8~9월)은 전국적으로 참가 호응도가 높았고, 공모작 수준이 우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권 실천사례집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향후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활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클럽의 정기적 운영과 시민창안공모전을 통해 총 55개의 시민창안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창안사례모음집 발간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인권 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6.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중점 대상(분야)별 성과

2009년 대구인권사무소는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중점 대상 그룹별로 협력,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한바, 이를 통해 지역민의 인권옹호, 권리구제 및 인식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 아동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캠프(5월),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실천방안사례집 발간(5~7월), 어린이다문화캠프(7월) 등을 통해 지역에서 청소년 인권옹호 그룹을 형성하고, 아동인권 의제를 발굴 하였으며, 아동인권 관련 이행 주체들의 아동인권 향상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공모전 시상식(5. 21)

나. 장애인 분야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4월), 장애인권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연구모임 운영 및 자치법규 검토안 마련(6~12월), 장애차별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5월 이후), 정신장애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운영,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8~12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지역 발표회(11월) 등을 통해, 장애차별 관련 구제 제도의 정착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역 인권조례 등 자치법규 개선, 현장 모니터링,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 이주민 다문화 분야

다문화 인권교육강사단 운영(4월), 이주분야 국제기준 국내이행 강화 워크숍(11월), 어린이다문화캠프(7월), 이주민 인권실태·인권교육사례발표회(12월) 등을 통해, 다문화 인권교육 콘텐츠 확보, 지역 이주민 인권 관련 NGO 및 활동가의 역량 개선,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반차별 의식 함양, 지역 이주 인권 실태 파악에 기여하였다.

라. 노인 분야

지역에서 노인 당사자 스스로 노인인권 옹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운영한 '노인인

권지킴이단 활동(4~11월), 노인인권 방문상담, 지역 유관기관 협력 상담 등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노인인권 활동에 대한 옹호그룹을 형성하고, 당사자 참여형 인권옹호활동(상담, 봉사, 독거노인 조력 등)을 전개하였으며, 노인인권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노인인권 이행주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



어린이다문화캠프(7. 23)

7. 평가

효과적인 상담 및 진정사건 처리와 문제해결형의 상담업무 정착을 위해 지역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민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진정사건에 대한 집중처리기간 활용, 조사 전담 인력 배치, 조사관 간담회 활성화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 인권교육의 경우는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 집중 대상 그룹을 설정하여 분야별 홍보와 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웹 블로그 운영 활성화, 인권기자단과 인권영상제작단 통합 운영, 웹 시민 참여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홍보를 더욱 다양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분야는 지자체 및 지역 소재 국기기관, 지역 정치권 등 공공부문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부

특별사업

제 1 장 북한인권 개선

제 2 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제 1 장 북한인권 개선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2003년 4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내 비상설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인권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 활동 전개하였다. 특히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공표하였다. 2007년에는 10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을 설정하였고, 2008년에는 6대 중점사업 과제의 하나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설정하였다. 2009년에는 특별사업으로 지정하였다.

나. 목적

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조사·연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협력 활성화,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회 정례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기구 활동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북한 내부 인권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인권 개선·증진 방안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2. 주요 추진 경과

위원회는 2008년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 북한인권 상황과약을 위해 중국, 일본,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한 해외 현지조사를 벌여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 및 북한인권 관련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포럼’과 국정원, 외교통상부, 통일부가 참여하는 정부기관 간 ‘정책협의회’의 정례회를 통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불어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의 대응역량 강화 및 위원회의 ‘논의 구조’ 활성화를 위해 11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영문자료 번역 및 자료집 출간과 함께 관련 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통해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 문제’ ‘납북피해자 가족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정책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였다.

가. 북한인권 포럼

1) 목적

북한인권포럼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 확대 및 북한인권 관련 정책 지평의 확대를 통해 체계적 북한인권 정책개발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관련 전문



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포럼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 포럼 구성

북한인권 포럼 구성은 공동대표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심양희 한양대 교수, 위원으로는 유호열(고려대 교수), 서보혁(이화여대 연구교수),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림(연세대 교수), 김귀옥(한성대 교수),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학진(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동균(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배명복(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대근(경향신문 국제정치 에디터), 김규호(기독교 사회책임 간사), 한창권(탈북인총연합회 공동대표),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원웅(관동대 교수), 남궁영(외국어대 교수), 김태산(탈북인총연합회 회원), 유욱(변호사), 허영철(대구북한이주민센터소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국장), 조명숙(여명학교 교감), 오완호(인권행동 사무국장), 고경빈(전 하나원 원장, 서울사이버대 교수), 손광주(데일리 NK 편집인)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었다.

3) 주요 활동

위원회는 2008년 5월 ‘북한인권포럼’ 구성을 통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27명)가 참여하여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의 확대 및 북한인권 관련 정책 지평의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개발을 모색해왔다. 2008년에는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했고 2009년에도 제5차 포럼, 북한 주민인권 실태조사 관련 종합토론회(2월), 제6차 포럼, 한국사회의 북한인권정책(4월), 제7차 포럼, 위원회 용역 실태조사 중간보고회(8월), 제8차 포럼, 「2008-2009 인권위의 ‘북한인권포럼’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과제」(11월) 등 총 4차례 개최하였다.

나. 정책협의회 운영

1) 목적

위원회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북한인권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문 연구소 및 국가기관(통일연구원)과 상시적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2) 주요 활동

정책협의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2009년 매월 북한인권 업무 관련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업무협의를 매월 상시 개최하였고, 국가정보원 심문관 북한인권 상황 보고(7. 2), 국회와 지속적인 북한인권 관련 업무 협의, 북한 UPR 관련 외교통상부 정책협의 회의에 참석(11. 13)하였다.

다. 2009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의 대응역량 강화, 북한인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 개발, 북한인권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구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인권특위는 2009년 2월 제3차 북한인권특위를 개최하여 북한인권업무계획을 검토하였고, 제4차(2008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 및 현안 보고, 3. 9), 제5차(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및 북한인권법 논의, 4. 22), 제6차(북한인권법 모니터링 등, 7. 25), 제7차(북한인권법 현황 파악, 8. 24), 제8차로 2009년 10월 26일에 중국(심양) 당국에 체포된 80대 국군포로 억류사건을 논의하였다.

1년 기한의 북한인권특위는 2010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라. 2009년 북한인권 간담회, 토론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위원회는 공동동종합사회복지관(새터민정착지원센터) 간담회(1. 13), 몽골 국회의원 7인, 교육부 차관 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1. 20), Open Society Institute, Tomas Kellogg(office of president) 사무총장 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1. 20), 북한지식인연대 방문 및 간담회(2. 6), 북한인권시민연합 방문 및 간담회(2. 27), 북한인권 단체 방문 및 간담회 관련 '평화네트워크' 및 간담회(3. 12), 북한인권 단체 관련 '탈북인단체총연합' 방문 및 간담회(4. 10),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관련 토론회 부산 출장,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문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5. 27), 국제정치학회 간사협의회 간담회(6. 3), 자유북한방송 방문 및 간담회(6. 10), 북한인권 관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소장과 유남영 상임위원 간담회(6. 12), 탈북자단체 간담회(6. 2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문 및 간담회(7. 15), 중국 요녕성사회과학연구원 김철 교수 전문가 간담회(7. 23), 북한인권 관련 미국대사관 이등서기관 수잔던칸 면담(7. 24), 탈북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 간담회(7. 24), '2009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심포지엄'(7. 29), 하나원, 한겨레학교 방문 및 간담회(8. 4), 북한인권 관련 중국전문가(연변대 김강일 교수) 간담회(8. 25), 북한주민 인권실태조사 영문자료 관련 재외공관 토론회(9. 1),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9. 2),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10. 14), 동북아시아 인권 어젠다와 북한인권, 북한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관련 최종 토론회(11. 22), 미국북한인권위원회 Karlin Lee 위원 간담회(11. 26),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최종발표회 토론회(11.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특별기획 국제심포지엄(12. 2) 등을 개최했다.

마. 국제 동향 파악

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및 탈북자 현황 파악을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국가 방문을 통해 재외공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현황파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9년 호주 북한인권 국제회의의 참석(2009년 3월), 재중 탈북자 문제 관련 현지조사(8. 10~15),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및 정책동향 파악(9. 19 - 28)을 실시하였다.

바. 북한인권 영문 홈페이지 운영

위원회는 영어 사용자에게 대한 위원회의 북한인권 홍보 및 자료제공 활성화, 북한인권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증대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위원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공식 문건, 미국, 일본, EU 등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관련 공식문건,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표명한 공식 문건,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등 INGO의 북한인권 관련 자료,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주요 업무 관련 영문 자료 등 200여 건의 영문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사. 북한주민인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9년 ‘북한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와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탈북여성의 탈북, 제3국체류 및 국내 정착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2009년에는 국내외적 주요 관심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주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9년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긴급사건, 진정사건, 법안검토,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활동을 통해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의견표명 및 권고



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납북자 문제 관련 제주해양경찰청 의견표명(4. 22)

월북자로 분류된 000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 촉구(4. 23)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논평(전원위원회 결정)

다. 임진강 수해 관련 위원장 논평(9.14)

2009년 9월 15일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4. 평가

2009년 위원회는 특별사업으로 지정된 북한인권 사업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위원회는 3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와 3회의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포럼' 운영,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회' 운영, 워싱턴 출장 등 3회의 현장 실태 파악, 탈북여성과 북한정치범 수용소 관련 실태조사 수행,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대내외적으로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컨센서스를 도모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선순환적인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납북자 문제 관련 의견표명,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을 촉구하는 결정, 임진강 수해 관련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인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북한인권 사업은 과거 북한인권에 대한 피동적이

고 무관심하다고 평가받아온 오해를 상당부분 불식시켰고, 이러한 북한인권과 관련한 위원회의 유연하고 폭넓은 행보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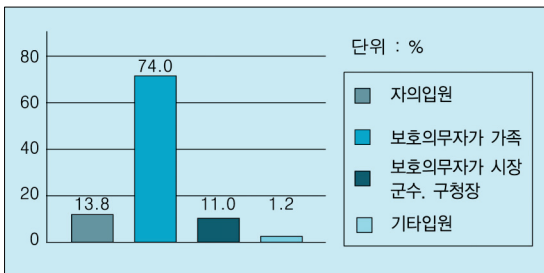
제 2 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1.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및 필요성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기본적인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양도할 수도, 차별할 수도 없는 보편적 권리이다. 정신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서 예외일 수 없으나 현실에서는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박

[그래프 3-2-1] 2008년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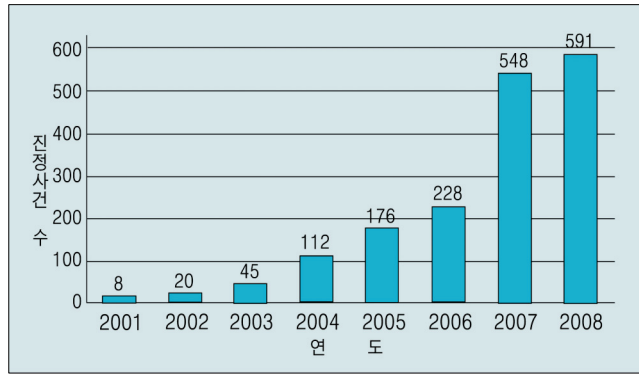
탈, 치료과정에서의 알권리 제한, 시설 내에서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86%(2008년 기준)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53%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자기결정권조차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진정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진정의 주요 내용이 비자의 입원, 퇴원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소통권 제한 등 입·퇴원 과정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인권상황, 현행 법제도와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재활·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그래프 3-2-2]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진정접수 현황

무엇보다도 입원 및 격리치료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 과정

가. 국가보고서 발간 결의 및 준비

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그 인권침해 내용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2월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현황·보호원칙·기본적 권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보고서의 공식명칭을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로 정하고 보고서의 형태, 추진방안, 소요예산 등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나. 추진위원회 결성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7년 12월 위원회 내외부 인사 8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009년 8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방향 및 원칙 등을 논의하였다.

다. 연구위원회 결성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초안 작성 및 해외사례 연구,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 과제 선정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연구위원회는 2008년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7월까지 총 13차례의 연구모임과 1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라.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에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개 주제로 실태조사를 벌여



를 벌여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실태조사 주제는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 '재가 정신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2008. 12. 17) 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등이었으며, 정신보건전문가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12월 17일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마. 토론회 개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와 관련한 토론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토론회에는 전(前)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박사와 전 세계보건 기구(이하 WHO) 보건국장인 노르만 사토리우스(Norman Sartorius) 박사를 비롯하여 국내 정신보건 관계자 1,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 등이었고, 서울·대구·광주·부산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다.



브라이언 버드킨 박사 초청 토론회 (2008. 5. 14)

바. 각종 간담회 개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신보건 분야, 법률 분야, 의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10차례에 걸쳐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 관계자 및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를 방문 혹은 초청하여 총 11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수립한 단기추진계획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의 실효성 여부와 향후 협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 문화행사 및 홍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홍보를 위해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발간하였고, 중앙일간지 및 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정신장애



인 인권실태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필요성에 관한 기획 기사를 다루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문을 열자'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국가보고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3주 간격으로 정신보건 관련 종사자 및 관계인 700여 명에게 국가보고서 추진 상황을 안내하였다. 기타 문화행사로는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정신건강미술제 - 마음을 그린다', '세계보건기구 정신건강과 인권 시리즈 번역', '홍보대사 위촉' 등을 시행하였다.



제2회 정신건강미술제 (2009.4.~ 6.)

3.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국가보고서 개요로 정신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필요성, 목표 및 기대 효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부는 정신장애인 인권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 사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 및 원칙을 살펴보고, 정신보건 국제동향과 해외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소개하였다. 제3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적정절차 보장 및 자기결정권 존중,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화와 최적의 치료환경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동등한 권리 보장 등 5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4부는 동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부는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퇴원 과정의 적정절차 마련

입원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의입원 원칙'을 「정신보건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대상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속입원치료 관련 조항 역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는 환자 중에는 입원 후 방치되어 입원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인권을 보호해줄 공공후견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헌법에서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치료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내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과정 및 환경, 권리 등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신보건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면회·통신·방문 등 외부 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격리·강박 기준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수가를 실질화하여야 한다. 또한 차등수



가제 평가항목에 시설기준 및 지역사회 연계율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치료환경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병원치료가 완료된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생활시설과 재활시설'로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보건소 등이 연계하여 부당한 입·퇴원 반복 및 횡수용화를 방지하고, 미인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 사회에 방치되거나 재입원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원환자와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체계의 강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정신보건 복지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정신분열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병명을 개정하고,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각종 관련 법령들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므로,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홍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에는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어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던 피진정기관이나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한해서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일부를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의 담당자로 지정하여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가. 전원위원회 정책권고 결의

위와 같은 추진 과정을 통해 2009년 10월 26일 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책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범정부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위 국가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필요가 있고,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 국가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기자설명회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 2009년 11월 4일 각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주요 언



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취지와 정책 권고의 내용, 향후 발표회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과 기자설명회 내용은 당일 오후 각 공중파 방송 뉴스 시간에 보도되었고, 각종 일간 신문에도 보도문이 게재되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회

기자설명회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1월 5일에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정식 발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추진 과정이 담긴 영상백서를 상영한 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제2부에서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끝으로 청중을 상대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서울 발표회 (11. 5)

이후 11월 10일에는 광주, 11월 17일에는 부산, 11월 18일에는 대구에서 각각 지역 발표회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5. 향후 과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난 2009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전부개정안은 위원회가 정책권고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

하여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을 만하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여덟 가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 중 세 가지 의견이 수용되어 최종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었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0년에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정신장애인 이송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2.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3. 조직 및 정원
4. 예산
5. 위원회 활동일지
6. 위원회 발간자료
7. 보도자료
8. 한눈에 보는 2009년 인권위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인권위원

구분 / 성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현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 학교 법학대학장 • 한양대학교사무처장 • 한국법학교수회사무총장 겸 부회장 •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한양사이버대학교학장 	대통령 지명 (2009. 7. 17.~ 2012. 7. 16)
 상임위원 최경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 대통령직속빈곤과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 분야 전문위원 	국회 선출 (2007. 9. 21.~ 2010. 9. 20)
 상임위원 유남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 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통령 지명 (2007. 12. 24.~ 2010. 12. 23)
 상임위원 문경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여성전문 기자 • 21세기 여성포럼 운영위원 • 여성부 여성정책 자문위원 •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 서울시 여성위원회 위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 심사위원 	국회 선출 (2008. 2. 4.~ 2011. 2. 3)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 김태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사 • 부산, 인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대한변협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 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법원장 지명 (2006. 8. 10.~ 2012. 8. 9)
 위원 정재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금선사 주지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11~13대 의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 (2007. 2. 8.~ 2010. 2. 7)
 위원 황덕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세계법무법인 변호사 • 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장 지명 (2007. 12. 24.~ 2010. 12. 23)
 위원 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 부분부장 •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현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 지명 (2007. 12. 24.~ 2010. 12. 23)
 위원 최윤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검, 부산지검,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겸 판사 • 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 현 대통령직속 산재보상심사위원 • 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국회 선출 (2008. 9. 4.~ 2011. 9. 3)



구분 /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위원 김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원자탄운동 본부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장애인분과위원장 • 대한장애인 불림협회장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공동대표 • 신망애복지재단, 사랑과평화복지재단 설립 	대통령 지명 (2008. 9. 10. ~ 2011. 9. 9)
 위원 장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KBS 시청자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언론인권센터 이사 	국회 선출 (2009. 12. 29. ~ 2012. 12. 28)

□ 역대 위원장

성명	주요 경력	재임 기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 제82대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 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2001. 11. 25. ~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12. 24. ~ 2005. 3. 23.
 제3대 위원장 조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상임이사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5. 4. 4. ~ 2006. 10. 2.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4대 위원장 안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2006. 10. 30.~ 2009. 7. 6.

□ 역대 위원

구분/성명	주요경력	비고
상임위원 박경서	•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 ~ 2004. 12. 23.
상임위원 유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7. 21.
상임위원 유시춘	•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 ~ 2004. 3. 13.
인권위원 이진강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01. 11. 25. ~ 2002. 11. 30.
인권위원 정강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1. 12. 24. ~ 2004. 12. 23.
인권위원 곽노현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3. 2. 24.
인권위원 조미경	• 아주대 법학부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김오섭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신동운	•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김덕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 ~ 2005. 3. 15.
인권위원 류국현	•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2002. 12. 12. ~ 2003. 2. 23.
인권위원 이흥록	•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5. 1. ~ 2005. 4. 19.
인권위원 김만흠	•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8. 1. ~ 2006. 10. 24.
상임위원 최영애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4. 7. 23. ~ 2007. 09. 20.
상임위원 김호준	•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	2004. 12. 24. ~ 2008. 2. 3.
상임위원 정강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이해학	•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 ~ 2006. 12. 31.
인권위원 신동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6. 12. 31.
인권위원 정인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31.
인권위원 최금숙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31.
인권위원 신혜수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05. 3. 15. ~ 2008. 3. 19.
인권위원 원형은	• 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2005. 6. 1. ~ 2008. 5. 30.
인권위원 나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12. 24. ~ 2006. 6. 29.
인권위원 윤기원	•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06. 10. 25. ~ 2009. 12. 28.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사무총장 김옥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법·고법 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기획조정관 손심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 인권위 차별조사1과장 · 인권위 혁신인사팀장 · 인권위 침해구제본부장
 정책교육국장 이성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 · 국제가톨릭문화지식인운동 팍스로마나(제네바) 사무총장 · 아시아인권개발포럼(방콕) 사무총장 	 조사국장 직무대리 심상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 인권위 혁신인사팀장 · 인권위 정책총괄팀장 · 인권위 인권연구팀장 · 인권위 총무과장

2.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2009년 기준)

□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주요 경력	비고
김선욱	· 전 법제처장, 이화여대 법대교수	2007. 12. 22. 위촉 제2기 정책자문위원
권근술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	
고형일	· 제13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권오성	·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순덕	·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섭	·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김해성	· 목사,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명진	· 봉은사 주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박태규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성명	주요경력	비고
방귀희	·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	2007. 12. 22. 위촉 제2기 정책자문위원
배은심	· 전 유가협 공동의장	
손속	· 제6대 환경부장관	
안성례	· 전 민가협 의장	
윤현	·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이건용	·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경혜	· 부산점자도서관 관장	
이기숙	· 전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이동익	· 신부, 가톨릭대 인문사회외학과 교수	
이배근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이수호	·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양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옥경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운성	·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정택	·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장 교무	
이혜경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수철	·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조용환	·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조흥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혁	·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	
최병모	· 전 민변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용근	· 법무법인 동서남북 대표변호사	
허노목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홍봉선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Werner Kampmeter	· Ebert 재단 대표	2008. 12. 12. 위촉 제2기 정책자문위원
은우근	· 광주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광주민언련 이사	
이중	· 전 송실대 총장, 현 연변과학기술대학 교문	
박배근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성중	· 광주YMCA이사, 한살림 호남대표	



□ 전문위원회

1) 사회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유남영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일반 분과	김선택 · 고려대 법대 교수(헌법)	주거권 분과	김남근 ·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영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운 · 한양대 법대교수(국제법)		홍인옥 · 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숙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유영우 ·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최배근 ·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		남철관 ·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노동권 분과	박수근 · 한양대 법대 교수	건강권 분과	임준 ·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김인재 · 인하대 법대 교수		임상혁 · 원진녹색병원 원장, 노동건강연대
	권영국 · 변호사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장
	은수미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선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강용주 ·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애림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2) 아동인권전문위원회(위원장 : 황덕남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영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수정	· 변호사
이호균	· 굿네이버스 부회장	윤성은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조사연구과장
이용교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국제인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조국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신혜수	·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정경수	· 숙명여대 법대 교수
이양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 한양대 법대 교수
정진성	·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이석태	· 변호사, 전 인권대사
조시현	· 건국대 법대 교수	선미라	· 변호사
홍성필	· 연세대 법대 교수		

4) 인권교육전문위원회(위원장 : 김양원 인권위원)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학교 인권 분과	구정화	· 경인교대 교육학 교수	시민 인권 분과	정길화	· 문화방송 기획조정실 정책협력팀장
	이기규	· 수송초등학교 교사		임대응	·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네트워크 운영 위원
	이인규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		고병현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난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본부장		임순영	·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 연구위원
	박김형준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희은	· 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란주	·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
	이호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공공 인권 분과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공공 인권 분과	이호영	·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형식	·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노섭	·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염형국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최강욱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5) 자유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윤기원 인권위원)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검경 수사 분과	이상돈	· 고려대 법대 교수	교정 분과	이호중	· 외대 법대 교수
	김성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승환	· 고려대 법대 교수
	도재형	· 이화여대 법대 교수		이영기	·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경희	· 호남대 경찰학과 교수		주영수	· 한림대 의대 교수
	최응렬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준형	· 전북평화외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군인권 분과	이계수	· 건국대 법대 교수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의형	· 법무법인 그린 변호사			
	이상영	·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김광식	· 국방연구원 인력개발연구센터장			



6) 고용차별전문위원회(위원장 : 김태훈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박석운	·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준일	· 고려대 법대 조교수
이찬진	·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엄규숙	·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형	· 중앙대 법대 조교수

7) 성차별 전문위원회(위원장 : 정재근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도균	· 서울대 법대 교수	이재희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진	· 이안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란	·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황정미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윤홍식	·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8) 외국인인권 전문위원회(위원장 : 문경란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양혜우	· (전)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소장
김현미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해성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최홍엽	· 조선대 법학과 교수	오경석	· 사)국경없는 마을 상임이사
위은진	· 법무법인 이세 변호사		

9)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최경숙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장애 차별 분과	배용호	장애 시설 분과	장서연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배복주		김명연	·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일		임소연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이선우		김진우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운			
	남찬섭			

10)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 유남영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권건보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향우	·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이창범	·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 조정위원회

1) 차별조정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유길상	·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	·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이석태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광택	· 국민대 법대 교수
정영환	· 고려대 법대 교수	윤진호	·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조주현	·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박광서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최일숙	·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김선수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한충수	· 한양대 법대 교수	임승현	·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 성차별조정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선택	· 고려대 법대 교수	신은주	· 평택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주덕	·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조영희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안정선	·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정춘숙	·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이명숙	· 법률사무소 나우리 변호사
이유정	·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유 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병근	·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김동범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박승희	· 이화여대 사범대 특수교육과 교수	정형표	· 법무법인 인덕 변호사
여상규	·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이상영	·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경우	·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강영심	· 부산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성규	· 서울복지재단 대표	박영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4)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배병호	·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변호사	신창현	· (사)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손명세	·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학부장	황성기	· 서울신문 논설위원
안경옥	· 경희대 법대 교수	문강분	· 위더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각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

□ 기타

1)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 김옥신 사무총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기중	·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안석모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장
경 건	·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김은미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장

2)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현병철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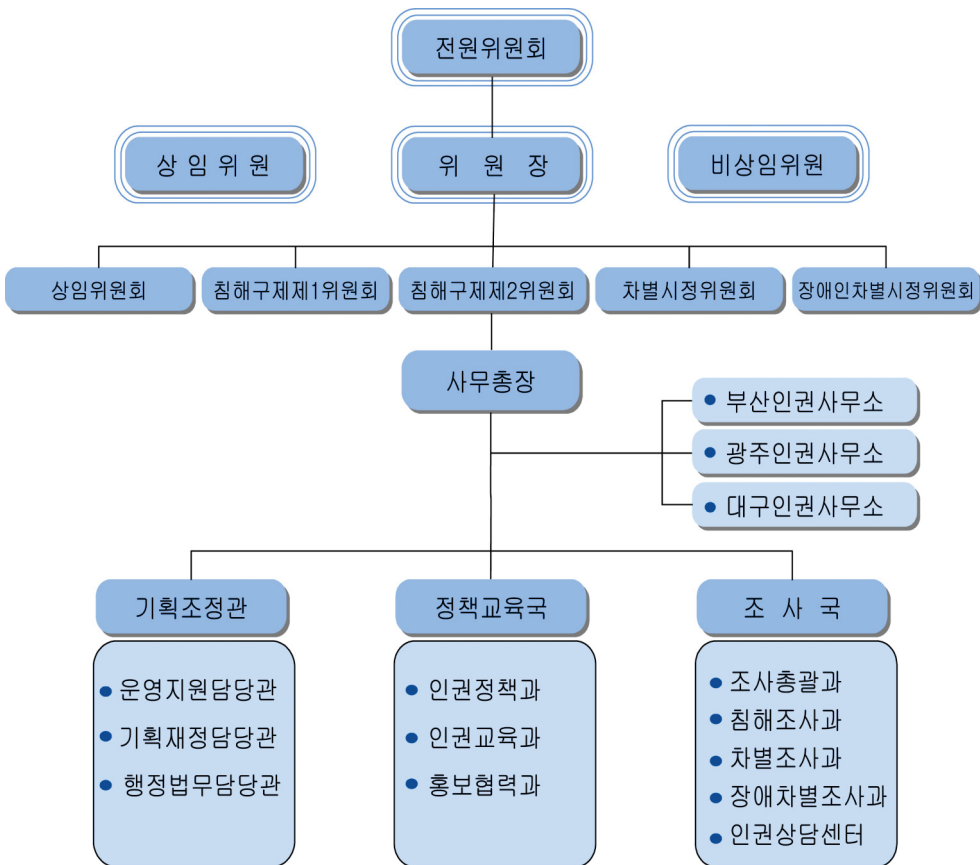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종철	·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김연태	· 고려대 교수
장주영	·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이상희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3.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1명(위원장,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사무총장, 1관 2국 3담당관 8과 3소속기관

○ 정 원 : 164명





4. 예산

가.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	2009 예산	증 감	%	비 고
계	23,349	23,373	24	0.1	
인 건 비	11,117	11,307	190	1.7	
사 업 비	12,232	12,066	△166	△1.4	
•기본사업비	7,264	7,200	△64	△0.9	
•주요사업비	4,968	4,866	△102	△2.1	

나. 인건비 : 11,307백만원

- 2008년 9월 1일 기준 총 221명
 - 정원 208명, 전문계약직 6명, 별도정원 5명, 청원경찰 2명 등 인건비

다. 기본사업비 : 7,200백만원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 3,611백만원
- 인권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운영비 : 452백만원
- 기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 3,137백만원

라. 주요사업비 : 4,866백만원

- 인권의식향상 매체 발간(324백만원)
 - 인권정보 제공(인권정책·권고 등), 인권의식 향상, 인권감수성 심화를 위한 인권 전문지 발행
 - 진정상담 및 진정절차 안내, 구제방법 등에 관한 정보 홍보
-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244백만원)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차별 등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문

화 콘텐츠 개발·보급

-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통한 인권문화 조성
- 인권교육 활성화(544백만원)
 - 인권포럼 구성 및 인권교육지침서 제공 등 인권교육 기반 조성
 - 인권교육훈련센터 운영에 따른 상시적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연수과정 위탁운영, 사이버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
 - 교사, 공무원, 언론인 등 인권옹호집단의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인권교육 평가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을 통해 인권교육 지속 발전
- 인권전문 상담원 운영(290백만원)
 - 인권전문 상담원 배치 및 전문상담원 위촉을 통해 인권 상담 전문성 제고
 - 다양화된 상담경로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업무의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281백만원)
 - 인권 취약 분야의 진정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적·적극적 조사 및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활동
 -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 및 잠재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조사·구제 및 정책개발
- 장애인 인권증진(421백만원)
 -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역할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차별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 증진
 - 정신장애인 등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
- 인권제도 선진화(703백만원)
 -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인권 기초 자료를 확보하



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찾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인권중심의 국가정책수립에 기여

-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331백만원)
 -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의 시각에서 객관적·전문적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인권증진 방안 모색
- 국제교류협력(334백만원)
 - APF, 유엔 주관 회의 및 각종 국제 NGO 회의 등에 참가해 우리나라 인권현황과 주요 국제 이슈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홍보 및 협력체제 구축
 -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
 -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 리더십 제고의 계기 마련
- APF 및 ICC 활동지원(100백만원)
 - APF의 인권활동을 지원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국제연대 및 상호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외국인 노동자, 인종차별 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 수행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292백만원)
 - 인권의식의 저변확대와 생활 속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적인 인권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대국민 인권의식 신장 및 확산
 - 인권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협력관계 구축, NGO들의 전문성 제고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 기반 강화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1,001백만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등의 진정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인권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향상

5. 위원회 활동일지

2009년 1월

- 1월 2일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무식(배움터 1)
- 1월 2일 ·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민사회단체 합동 시무식 참석(국립5·18 민주묘지)
- 1월 5일 · 제1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 1월 7일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회 '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1월 8일 ·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2건)
- 1월 12일 ·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 1월 12일 · 제1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3건)
- 1월 12일 · 제1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15건)
- 1월 13일 · 위원장, 경기도 다문화센터 특강
- 1월 14일 · 제2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31건)
- 1월 15일 ·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1월 15일 · 한국형 기업인권 가이드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 1월 16일 · 2008년도 인권교육 우수실천사례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 1월 16일 · 지역단체 대표 및 원로와의 간담회(국민연금부산회관)
- 1월 20일 · 제4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건 1건)
- 1월 20일 · 광주인권사무소 1차 순회상담(광주 한진노블병원)
- 1월 20일 · 제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11건)
- 1월 20일 · MBC 신입기자 인권교육
- 1월 21일 · 제1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9건)
- 1월 22일 · 기업분야 CSR 관련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1월 22일 ·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1월 22일 · 1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관타나모로 가는 길>
- 1월 22일 · 대구 장애차별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단체 간담회
- 1월 22일 ·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월 29일 · 제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1건)
- 1월 29일 · 통일부와 북한인권정책 실무간담회 개최
- 1월 29일 · 사회권전문위원회 주거권분과회의 개최
- 1월 30일 · 인권현장 방문(노숙인 식사 지원 시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위원장 등)

2009년 2월

- 2월 2일 ·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업무계획 확정
- 2월 2일 ·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 2월 2일 · 제3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북한인권관련 업무계획)
- 2월 2일 · 제2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2건)
- 2월 2일 · 대구경북 정신보건시설 대상 1331 홍보스티커 제작 배포
- 2월 4일 ·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원대상 인권교육(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 2월 5일 ·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 2월 6일 · 심포지엄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과제'(국민연금부산회관)
- 2월 6일 · 제3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64건)
- 2월 9일 · '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 2월 11일 ·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1건)
- 2월 11일 · 제2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6건)
- 2월 12일 ·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4건, 보고 2건)
- 2월 12일 · 울산지역 단체 간담회(울산 장애인부모회 회의실)
- 2월 12일 ·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제출
- 2월 12일 ·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지역 장애단체와의 간담회(배움터)

- 2월 13일 · 인권행정정보시스템(인트라넷 고도화) 개통
- 2월 18일 ·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
- 2월 19~20일 ·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운영자 인권교육(호남권)
- 2월 19일 · 영국대사관 공동 '영국 인권기관 연수' 실시
- 2월 19일 ·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심의 1건, 보고 2건)
- 2월 19일 · 북한주민인권 실태조사 종합토론회 개최
- 2월 19일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2월 20일 · 제4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2건)
- 2월 23일 ·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기자단 모집
- 2월 23일 · 제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0건)
- 2월 23일 · 제3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59건)
- 2월 23일 ·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3건, 의결 2건)
- 2월 23일 · 부산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간담회(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2월 24일 · 광주사무소 제25차 인권상담네트워크(배움터)
- 2월 24일 · 제1차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개최
- 2월 25일 ·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
- 2월 25일 · 제4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81건)
- 2월 26일 · 2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여정>
- 2월 26일 · 제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 2월 26일 · 대구지역 인권상담 지역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 2월 26일 · 제1차 장애차별전문위원회 개최
- 2월 26일 ·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월 27일 · 인권현장 방문(비닐 하우스촌 잔디마을, 위원장 등)

2009년 3월

- 3월 2일 · 제3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77건)
- 3월 4일 · 3.1절 및 3. 8여성의 날 기념 인권영화상영회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 3월 5일 · 제10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 3월 6일 · 무기계약근로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3월 6일 · 인권현장 방문(지역아동센터 꿈터, 최경숙 위원 등)
- 3월 9일 · 제4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2008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 및 현안 보고)
- 3월 9일 · 제4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9건)
- 3월 9일 ·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3월 9일 · 부산지역 장애단체 간담회(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3월 11일 · 제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0건)
- 3월 11일 · 제5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1건)
- 3월 12일 · 북한인권단체방문 및 간담회 개최
- 3월 12일 ·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체벌금지 및 교육적 대안 모색 국제워크숍 개최(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100명)
- 3월 12일 ·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 3월 17일 · 노인인권 지킴이단 선발 지역사무소 담당자 간담회
- 3월 18~23일 · 북한인권 국제회의(호주 멜버른) 출장
- 3월 18일 ·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월 18일 · 인천지역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 3월 18일 · 정신의료기관 방문상담(울산마더스병원)
- 3월 19일 ·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2건)
- 3월 19~20일 ·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수도권 · 충청권)
- 3월 19일 · 대구인권사무소 제2회 평화인권포럼 개최
- 3월 23~27일 · 제22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연례회의 참가
- 3월 23일 ·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건)
- 3월 23일 · 제4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77건)
- 3월 24일 · 광주인권사무소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정책토론회(광주YMCA 백제실)
- 3월 24일 · 성차별 전문위원회 개최(1차)

- 3월 24일 ·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3월 25일 · 경남지역 단체 간담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3월 25일 · 제6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1건)
- 3월 26~30일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 참가
- 3월 26일 · 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기본 계획 수립
- 3월 26일 · 3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행진>
- 3월 26일 · 광주인권사무소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위한 간담회
- 3월 26일 · 인권상담전화 1331 지하철 홍보(부산지하철 1호선, 2개월)
- 3월 27일 · 제6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3월 30일 ·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0건)
- 3월 30일 ·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 3월 31일 · 2009년 제1차 순회상담(서울 관악구 신림동, 독거노인 및 서민)

2009년 4월

- 4월 1일 · 제7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 4월 1일 · 제1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1건)
- 4월 2일 · 제13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 4월 2일 · 인권교육센터 현판식(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4월 3일 · 제14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 4월 3~8일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서울, 부산, 대구)
- 4월 6일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 5본부 22팀 4소속기관 208명 →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64명
 - 위원회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지역사무소 →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 국가인권위 직제령 전부 개정에 따른 각 부서 소관사무 일시 조정
 - 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조사권한 분장 및 개시
 -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4월 6일 ·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 위원회 직제개정 관련 대국민 호소문 채택 및 기자 브리핑
- 인권현장 방문(부랑아 시설 은평의 마을, 위원장 등)
- 4월 7일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간발표 및 공청회(국민연금부산회관)
- 4월 8~10일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상반기) 운영
- 4월 8일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간발표 대구·경북 공청회
- 4월 9~10일 · 직원 연찬회 개최(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4월 10~16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주년 기념 토론회(서울, 광주, 부산, 대구)
- 4월 11~24일 · 2009년 1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공무원, 교사, 시민 대상)
- 4월 13~15일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공모전
- 4월 14일 ·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 개최(5·18 기념재단)
- 4월 15일 · 부산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국민연금 부산회관)
- 4월 15~30일 · 대구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주년 시민참여 퀴즈대회(웹블로그 활용)
- 4월 16일 · 제1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2건)
- 4월 16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주년 기념 토론회 (대구)
- 4월 16일 · 제5차 인권교육포럼 개최(부제: 불교와 인권 등)
- 4월 17일 ·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인권현황토론회(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기념 방문상담(강서체육공원)
- 4월 20일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제정
- 4월 21일 · 노숙인 인권개선 전문가 간담회
- 4월 22일 · 2009년 제2차 인권순회상담(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소득층 장애인)
- 4월 22일 · 광주사무소 인권테마역사 첫 방문프로그램 시행
- 4월 22일 · 제5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및 북한인권법 논의)
- 4월 23일 ·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심의 2건)

- 4월 23일 · 4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줄위의 종달새>
- 4월 23일 · 남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 4월 23일 · 제6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 4월 24일 · 제2차 장애차별전문위원회 개최
- 4월 24일 ·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부산대학교)
- 4월 27일 ·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건, 보고 3건)
- 4월 27일 · 제5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6건)
- 4월 27일 · 제5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92건)
- 4월 29일 · 스포츠와 인권 특강
- 4월 30일 · 제1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 4월 30일 ·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 실태 및 지원정책 모색' 관련 부산 토론회
- 4월 30일 · 개성공단 억류자 관련 위원장 논평

2009년 5월

- 5월 1일 · 제5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4건)
- 5월 1일 · 위원회 사무처 팀장제 운영방안 방침 시행
- 5월 1~21일 ·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 인권교육(총 6회)
- 5월 1일 · 광주인권사무소 5.18기념재단 주최 광주평화포럼 참가(토론회 주관)
- 5월 2일 · <날아라, 펭귄> 전주 국제영화제 상영
- 5월 6일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GRI 공동개최)
- 5월 7일 ·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 5월 7일 · 광주인권사무소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배움터)
- 5월 7일 ·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
- 5월 8일 · 제4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1건)
- 5월 8일 · 여성연예인 인권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월 11일 · 제10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 5월 11일 · 제6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6건)



- 5월 13일 · 노인인권지킴이단 부산출정식(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5월 14일 ·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 5월 14일 · 제7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4건)
- 5월 15일 · ‘노숙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검토’ 인권단체 활동가와의 전문가 간담회
- 5월 15일 · 노인인권지킴이단 노숙인 무료급식 자원봉사(부산진역)
- 5월 15일 · 대구인권사무소 시민인권영상제작단 모집
- 5월 18~19일 · 군의료 종사자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 5월 19~20일 ·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장 연수과정 운영
- 5월 19~22일 · 2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총 2,059명)
- 5월 20일 · 스포츠 인권 특강
- 5월 20일 ·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6건)
- 5월 20일 · 정신장애인국가보고서 관련 전문가 세미나(부산광역시의회)
- 5월 21일 · 제2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5월 21일 · 생활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클럽 구성
- 5월 21일 · 제2차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개최
- 5월 22일 · 제1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개최(5. 22 ~ 5. 28. 소속직원 10명 서면 결의 : 국내서단행본 280종, 서양서 단행본 : 240종, 영상자료 134종 심의)
- 5월 22일 · 피랍탈북인권연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5월 23일 · 춘계 직원체육대회 개최
- 5월 23일 · 대구인권사무소 청소년 인권캠프 개최
- 5월 25일 ·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건)
- 5월 25일 · <시선1318> 언론기자 대상 시사회
- 5월 25일 · 제6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71건)
- 5월 25일 · UNHCR 난민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실시
- 5월 27일 ·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문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월 28일 · 5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인생은 아름다워>
- 5월 29일 · 국립부곡병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국립부곡병원)

2009년 6월

- 6월 2일 · <시선1318> 학생 및 교사 대상 시사회
- 6월 2일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YMCA 지도자 간담회
- 6월 3일 · 지적장애인 인권증진 국제워크숍
- 6월 3일 · 집회시위의 자유 현 상황에 대한 위원장 성명 발표
- 6월 3일 · 제7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3건)
- 6월 3일 ·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인권교육 전담교사 양성과정(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6월 4~27일 · 이라크 공무원단 대상 인권정책개발연수과정 진행(ODA 협력사업)
- 6월 4일 · 제2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 6월 4일 · <시선1318> 특별 시사회
- 6월 5일 · 인권현장 방문(정신요양원 세광정신병원, 위원장 등)
- 6월 5일 · 제8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69건)
- 6월 8일 · 제7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113건)
- 6월 8~9일 · 군 수사 분야 인권 연수과정 운영
- 6월 8일 ·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건, 보고 2건)
- 6월 8일 ·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임시, 의결 1건)
- 6월 8일 · 제7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116건)
- 6월 9일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 6월 9일 · 인권현장 방문(세광정신요양원, 위원장 등)
- 6월 9~26일 · 외국인 고용기업 인권교육(광주·부산)
- 6월 10~11일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6월 10~12일 · 정신장애분야 강사양성 심화과정 운영
- 6월 10일 · 제23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 6월 10일 ·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체벌의 대안, 긍정적 훈육 국제워크숍 개최
- 6월 11일 · 제2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6월 12일 · 제7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9건)



- 6월 13~26일 · 제3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총 2,188명)
- 6월 13일 · 제1기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니터단 발대식(학생50명, 교사34명)
- 6월 15~28일 · 스포츠인권 해외 선진사례 연수 실시(영국, EU)
- 6월 15일 · 제25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 6월 15일 · 위원장, 거창평화인권예술제 특강(거창읍사무소)
- 6월 16일 · 대구 노인분야 방문상담 개시
- 6월 16일 · 이주노동자 자녀 출생등록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6월 17일 · 제2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1건)
- 6월 18일 · 제26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보고 1건)
- 6월 19일 · 제27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 6월 19일 · 국내체류난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 관련 토론회
- 6월 19일 · 대구인권사무소 다문화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 6월 22일 ·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건)
- 6월 22일 · 제8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9건)
- 6월 22일 · 제8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0건)
- 6월 22일 · 전산장비의 광주통합전산센터 이전
- 6월 23일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현황평가 실시
- 6월 23일 · 제9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6건)
- 6월 24일 · 광주사무소 2009 인권공모전 계획안 공표 및 기자간담회
- 6월 24일 · 경남지역 인권강사 양성과정(주 1회, 총 4회, 진주청소년수련원)
- 6월 25일 · 제28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3건)
- 6월 25일 · 제1차 장애시설 분야 전문위원회 개최
- 6월 26일 · 6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누들>
- 6월 26일 · 광주인권사무소 2009 상반기 인권강사단 워크숍(아모레퍼시픽 4층)
- 6월 26일 · 사회권심포지엄 개최
- 6월 26일 · 제3차 장애차별전문위원회 개최
- 6월 26일 · MOU 체결대학 실무협의회 개최
- 6월 27일 · 2009년 제3차 인권순회상담(서울 강북구, 학생 및 청소년)

- 6월 29일~7월 1일 · 군법무관 인권 연수과정 운영
- 6월 29일~7월 3일 · 미국 로스쿨학생대상 인권연수과정(산타클라라 인권연수) 진행
- 6월 29일 · 재사용 의류 수집 전달(493점, 은평천사원)
- 6월 29일 · 대구인권사무소 시민인권영상제작단 교육과정 운영
- 6월 29일 · 사회권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 6월 29일 · MBC TV시민세상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방송
- 6월 30일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사직서 제출
- 6월 30일 · '10년 예산요구서 제출
- 6월 30일 · 제4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2009년 7월

- 7월 2~3일 · 노인분야 인권교육 평가 워크숍
- 7월 2일 · 제2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7월 2~4일 · 2009부산실버엑스포 정책홍보관 내 노인인권관련 홍보부스 운영(부산백스코)
- 7월 3일 · 제8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9건)
- 7월 6일 · 제9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6건)
- 7월 6일 · 제9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6건)
- 7월 6일 · 7월 직원조회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7월 6일 · 안경환 위원장 사직서 수리
- 7월 6일 · 제13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1건)
- 7월 6일 · 제9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6건)
- 7월 6일 · 제9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7건)
- 7월 8일 · 안경환 위원장 이임식
- 7월 8일 · 제3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 7월 11~24일 · 제4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총 2,241명)
- 7월 12일 · 일본 후쿠오카현 지방변호사회 간담회(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7월 13~15일 · 군 인권교관 인권 연수과정 운영



- 7월 14일 ·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국민연금부산회관)
- 7월 14일 · 노인학대 전문가 간담회
- 7월 15일 · 북한인권단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7월 15일 · 울산지역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울산대학교)
- 7월 16일 · 신입기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 7월 16일 · 제31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 7월 16~17일 · 3개 인권사무소 합동 워크숍(부산인권사무소, 해운대 일원)
- 7월 17일 · 제5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취임
- 7월 17일 · 제10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5건)
- 7월 20일 · 제5대 현병철 위원장 취임식
-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 7월 20일 · 제10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4건)
- 7월 21일 · UPR 이행모니터링 시민사회 간담회
- 7월 22일 · <시선1318> 국회 상영[국회 아동인권 포럼(대표 최영희, 이주영) 공동 개최]
- 7월 22~23일 · 대구인권사무소 어린이다문화 캠프 개최
- 7월 22일 · 제1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0건)
- 7월 22일 · 진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경상대학교)
- 7월 23일 ·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7월 23일 · 7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월-E>
- 7월 23일 · 노인인권정책자문단 회의
- 7월 23일 · 제2차 성차별 전문위원회 개최
- 7월 24일 ·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7월 25일 · 제6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북한인권법 모니터링 등)
- 7월 28~31일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영상교실 운영
- 7월 28일 · 제1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0건)
- 7월 29일 · ‘2009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심포지엄’ 개최
- 7월 29일 · 사형제 폐지 의견제출
- 7월 30일 · 제3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 7월 30일 · 고용허가제 5주년 시행 토론회 개최
- 7월 30일 · 인권현장 방문(남양주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위원장 등)
- 7월 30일 · 제11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30건)
- 7월 30일 · 부산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 7월 31일 · 제2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개최(7. 31. ~ 8. 10. 소속직원 10명
인권분야 전문가 8명, 서면결의 : 국내서단행본 300종, 서양서단행본
135종 영상자료 85종 심의)

2009년 8월

- 8월 1일 · 2009 인권영상공모전 공고
- 8월 3~13일 · 교원 대상 하계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 8월 3~6일 · 제14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APF) 연례회의 참가
- 8월 4일 · 하나원, 한겨레 중고등학교 인권교육 도입 협의
- 8월 5일 · 제34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8월 6~7일 · 인권친화적 교과서 학생모니터단 하계 캠프 개최
- 8월 7일 · 제6차 인권교육포럼 개최
- 8월 7일 · 제9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104건)
- 8월 7일 ·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대상 인권영화상영회(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 8월 8~16일 · 광주인권사무소 이주인권사진전 개막(전남 강진)
- 8월 10일 · 김태훈 인권위원 재임명
- 8월 10~14일 · 재외 탈북자 현황 파악을 위한 중국(연변) 출장
- 8월 10일~9월27일 · 아동청소년 인권사진 공모전
- 8월 11일 · 은퇴 후 일자리 관련 간담회
- 8월 12일 · 시설입소 노숙인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8월 12일 · 인권현장 방문(미혼모 시설 애란원, 문경란 위원 등)
- 8월 13일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정보 공표목록 마련



- 8월 15~31일 · 부산MBC라디오 노인인권지킴이단 캠페인(1일 2회 방송)
- 8월 17~18일 · 인권 친화적 축구대회 개최
- 8월 17~18일 · 울산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울산대학교)
- 8월 17일 · 2009년 을지연습 추진
- 8월 17~18일 · 대구경북 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8월 17일 · 제1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9건)
- 8월 19일 · 대구 하나센터(탈북청소년) 인권교육
- 8월 19~21일 · 경남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경남대학교)
- 8월 20일 · 제35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보고 2건)
- 8월 21일 · 제1차 인권침해구제조정위원회 개최(1건)
- 8월 24일 · 제1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 8월 24일 · 제11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115건)
- 8월 24일 · 제7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북한인권법 현황 파악)
- 8월 25일 · 기초생활수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판정노인 간담회
- 8월 25일 ·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워크숍(아미정신건강센터 회의실)
- 8월 27일 · 다문화 인권교육 기본계획 보고
- 8월 27일 · 제3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2건)
- 8월 27일 · 8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이글아이>
- 8월 27일 · 제7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 8월 28일 · 제10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0건)
- 8월 28일 · 제4차 장애차별전문위원회 개최
- 8월 31일 · 제12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61건)

2009년 9월

- 9월 1일 · 생활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 공모전 (- 9.23)
- 9월 2일 · 한겨레 중고등학교(탈북청소년) 인권교육
- 9월 3일 · 제3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3건)

- 9월 4일 · 위원장, 국회의장 예방·면담
- 9월 4일 · 대구경북 지역 장애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족 워크숍 개최
- 9월 4일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생점 토론회
- 9월 4~5일 · 인권조례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워크숍(한화리조트)
- 9월 8일 · <날아라, 펭귄> 언론 시사회
- 9월 8일 · 신종플루 관련 토론회 개최
- 9월 9일 · 제3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보고 1건)
- 9월 9일 · 광주인권사무소 다문화가정 모자의 인권 및 적응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아모레퍼시픽)
- 9월 9일 · 제4차 인권순회상담 실시(서울 노인인권)
- 9월 9일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차)
- 9월 10일 · 군대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9월 11일 · 사회권규약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사회권·아동권 전문위원회 개최
- 9월 12~25일 · 제5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총 2,218명)
- 9월 14일 ·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심의 1건, 의결 3건)
- 9월 14일 · 제39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심의 1건, 보고 1건)
- 9월 14일 ·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 기준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개최
- 9월 14일 · 제2차 인권침해구제조정위원회 개최(1건)
- 9월 14일 · 제12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55건)
- 9월 14일 · 제13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18건)
- 9월 16~20일 · 광주인권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조례 현황 연구 관련 일본 연수
- 9월 16일 · <날아라, 펭귄> VIP 초청 특별시사회
- 9월 16일 · 제1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3건)
- 9월 17일 · 인권현장 방문(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교남소망의집, 위원장 등)
- 9월 17일 · 행복지수 국제비교 토론회 개최
- 9월 18일 · 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안 국회 심사 및 의결



- 9월 18일 · 제17차 전원위원회(임시) 개최(심의 1건)
- 9월 18일 · 다문화 교육정책과 인권적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 9월 18일 · 제11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7건)
- 9월 19~28일 · 재외 탈북자 현황 파악 관련 미국(워싱턴 D.C) 출장
- 9월 20일 · 재사용 의류 수집 전달(650점,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9월 20일 · 제5차 인권순회상담 실시(의정부 이주노동자상담)
- 9월 21일 · 제40차 상임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보고 1건)
- 9월 22일 · 하나원 직원 대상 인권교육
- 9월 23일 · 그린마일리지와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개최(경남교육정보연구원)
- 9월 24일 · 제4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심의 1건)
- 9월 24~30일 · 다문화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부산권 · 서울권)
- 9월 24일 · <날아라, 펭귄> 극장 개봉
- 9월 24일 · 9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페르세폴리스>
- 9월 28일 · 군병원 정신과 방문조사(○○병원)
- 9월 29일 · 인권친화적 10대 언론보도 발굴 관련 1차 심사위원회 개최
- 9월 30일 · '10년 예산안 국회 제출(정부)
- 9월 30일 ·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상과 역할 국제심포지엄 개최
- 9월 30일 · 제1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8건)
- 9월 30일 · 인종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 실시
- 9월 30일 · 제2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1건)

2009년 10월

- 10월 1일 · 제4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2건)
- 10월 5일 · 김옥신 사무총장 취임
- 10월 5일 · 제14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7건)
- 10월 6일 · 몽골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후속작업 주한몽골대사관 간담회 개최
- 10월 6일 · 제3차, 제4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개최(10. 6. ~ 10. 15. 소속직원 10

명, 인권분야 전문가 8명, 서면결의 : 국내서 단행본 140종, 서양서 단행본 123종 영상자료 60종, 외국학술지 225종, 일본서 단행본 150종 심의)

- 10월 7~17일 · 노인인권 관련 일본 및 스웨덴 국외출장
- 10월 8~9일 · 다문화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경상권)
- 10월 8일 · 제4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심의 1건, 보고 1건)
- 10월 8일 ·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국내이행관련 국제토론회 개최(고문방지소위 위원등 국제전문가 4인)
- 10월 8~16일 ·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 실시(부산 해운대 일대)
- 10월 9일 · 장애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외 2개소)
- 10월 9일 · 제12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3건)
- 10월 12~15일 · 제6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총 2,047명)
- 10월 12일 ·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3건)
- 10월 12일 · 제13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0건)
- 10월 14일 · 제6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10월 15일 ·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10월 16일 · 제3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상정안건 1건)
- 10월 16일 · 대구 노인 종합이동상담 인권상담부스 운영(- 11. 6, 경상감영공원)
- 10월 19~20일 ·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10월 19일 · 제14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7건)
- 10월 21일 · 제3차 수도권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
- 10월 21일 · 고용차별 전문위원회 개최
- 10월 21~25일 · 대구 아동청소년 인권사진전
- 10월 22일 · 제4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보고 3건)
- 10월 22일 · 10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인권에 관한 이야기(Stories on Human Rights)>
- 10월 22일 · 부산인권사무소 개소4주년 기념 인권단체대표와의 간담회(국민연금 부산회관)
- 10월 22일 · 대구 인권조례 만들기 토론회 (대구시의회)



- 10월 23일 · 장애인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순회상담(부산 밀리오레)
- 10월 23~24일 · 대학교 인권과목 담당교수 워크숍
- 10월 23일 ·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음악회 개최
- 10월 26일 · 제19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3건)
- 10월 26~30일 · 아태지역 8개국(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아프가니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타이) 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 10월 26일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 10월 26일 · 제14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61건)
- 10월 26일 · 제15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3건)
- 10월 26일 · 제8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 10월 28~29일 · 다문화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전라권)
- 10월 28일 · 광주사무소 다문화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양성교육(전남 화순)
- 10월 28일 · 인권현장 방문(노숙인 이용시설 햇살보금자리상담센터, 위원장 등)
- 10월 29일 · 제4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 10월 30일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테마역사 개관 1주년 기념 콘서트

2009년 11월

- 11월 1일 · 2009 울산인권마라톤대회 홍보부스운영(울산 태화강 둔치)
- 11월 2일 · 고용허가제 후속 모니터링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
- 11월 2일 · ‘영화 속 인권 들여다보기’ 시민강좌 운영(주2회)
- 11월 3일 ·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1.3~11.29, 부평 기적의 도서관, 아동도서 240권 전시 및 각종 부대행사 실시)
- 11월 3일 · 사회권지표개발 관련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 11월 4~6일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하반기) 운영
- 11월 4일 · 인권친화적 10대 언론보도 2차 심사위원회 개최
- 11월 4일 · 의료시설 이용자 권리장전마련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1월 4일 · 2009년도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사례 워크숍(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11월 5일 · 경남지역 인권강사 양성 심화과정운영(주 1회, 초 4회)
- 11월 5~26일 · 부산 · 경남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봉생병원 등 8회)
- 11월 5~18일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회(서울,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11월 5일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2차)
- 11월 6일 ·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감정노동 및 건강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1월 6일 · 제13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94건)
- 11월 8~13일 · 제43차 사회권규약위원회(제네바) 출장
- 11월 9일 · 제20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 11월 9일 · 제15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2건)
- 11월 9일 · 제15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40건)
- 11월 10~14일 · 제6차 아세안지역 국가인권기구 연례회의 참가
- 11월 11일 ·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11월 12일 · 진주교도소 인권특강 및 간담회
- 11월 12일 · 제8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 11월 13일 · 위원회 국정감사
- 11월 13일 ·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교사 간담회 개최
- 11월 14~27일 · 제7차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총 2,773명)
- 11월 16~18일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 참가
- 11월 16일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 보장방안 토론회
- 11월 16일 · 제16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5건)
- 11월 17~19일 · 다문화 종사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 11월 17일 · 정신장애인국가보고서 지역 설명회 개최(국제신문 4층 중강당)
- 11월 18일 · 제4차 수도권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
- 11월 18일 · 외국인 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11월 18일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대구경북 발표회
- 11월 19일 · 제4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심의 2건, 보고 2건)



- 11월 19~20일 · 이주인권 국제조약 국내이행 강화 워크숍
- 11월 19일 · 2009 인권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시청자미디어센터)
- 11월 22일 · 제22차 전원위원회(임시) 개최(의결 1건)
- 11월 23일 · 제2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5건)
- 11월 23일 · 광주사무소 차별금지법 관련 지역간담회(배움터)
- 11월 23일 · 제16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15건)
- 11월 23일 · 제6차 인권순회상담 실시(강원 태백 진폐환자 집중상담)
- 11월 24일 · 제4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전상정 1건)
- 11월 24일 · 기업인 대상 인권교육
- 11월 24일 ·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위원회 방문(위원회 독립성 문제 등 논의)
- 11월 24일 ·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 개최
- 11월 24일 · 인권친화적 10대 언론보도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11월 24~26일 ·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 11월 25일 · 위원회 설립 제8주년 행사 - 인권현장활동 실천대회 개최 -
- 11월 25일 · 2009년 집회시위자유 관련 쟁점 토론회 개최
- 11월 25일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정책관계자 간담회 개최(1차)
- 11월 25일 · 하나원 탈북자 인권교육 정례화 실시
- 11월 26일 · 제4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보고 1건)
- 11월 26일 · 대구인권사무소 차별금지법 간담회
- 11월 26일 ·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제2차 실무협의회
- 11월 27일 · 인권상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1차, 장추련 등 3개 장애인 단체)
- 11월 27일 · 제14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4건)
- 11월 27일 · 제5차 장애차별전문위원회 개최
- 11월 27일 · 탈북 여성 인권 실태조사 최종 토론회 개최
- 11월 28일 · WHO지침서를 통해본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30일 · 국회운영위, 위원회 '10년도 예산안 의결 및 예결위 회부
- 11월 30일 ·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인권연구센터소장 내방 및 전문가 간담회

2009년 12월

- 12월 1~31일 ·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시민홍보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이제는 인권 선진국입니다.”
- 12월 1일 · 인권논문·에세이·실천사례 공모 시상 및 발표회 개최
- 12월 1일 ·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 2차 간담회(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 12월 1일 · 제16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70건)
- 12월 1~22일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부산자동차고등학교 등 12회)
- 12월 2~8일 ·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2차 실시
- 12월 2일 · 북한이탈주민 특별기획 국제심포지엄 개최
- 12월 2일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12월 3일 · 대통령 특별보고
- 12월 3~4일 ·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2월 3~4일 · 영남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12월 3일 · 제4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보고 2건)
- 12월 3~15일 ·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김포시 통진도서관, 아동도서 240권 전시 및 각종 부대행사 실시)
- 12월 3일 ·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 3차 간담회(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중 5개 기관 및 단체)
- 12월 4일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 (사하구청)
- 12월 4일 · 제4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전상정 1건)
- 12월 4일 · 연예홍행비자(E-6) 필리핀 여성 성매매 관련 간담회 개최
- 12월 4일 ·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 4차 간담회(노동부 직업상담원)
- 12월 4일 ·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 12월 4일 · 제7차 인권교육포럼 개최(전북대 인권센터 공동주최)
- 12월 4일 ·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12월 6~13일 · 세계인권선언기념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 개최(전국 11개 지역 55개 도



- 서관에서 <별별 이야기 2> 상영함
- 12월 7일 · 제17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42건)
 - 12월 8~9일 · 제3기 인권연구학교 종합발표대회 개최
 - 12월 8~9일 · 호남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12월 8일 · 미국무부 여성인권대사, 위원회 직원 대상 ‘女權과 인권’ 관련 강연
 - 12월 8일 · 아동급식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12월 9일 · 제50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2월 10일 · 광주사무소 2009 인권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행사(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인권문화한마당 개최 (민주공원)
 - 12월 11일 · 대구인권사무소 장애인권 친화적 자치법규 연구팀 워크숍
 - 12월 11일 · 사관학교 입학연령제한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2월 12일 · 제8차 인권교육포럼 개최(한국 법과 인권교육 학회 공동주최)
 - 12월 14일 · 제2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2건)
 - 12월 15일 ·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 발간
 - 12월 15일 · 대구 장애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주민자치센터 외 2개소)
 - 12월 15일 · 제5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12월 16일 ·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2월 16일 · 나이차별 판단기준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간담회
 - 12월 16일 · 북한의 화폐개혁과 주민 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2월 17~18일 · 군대분야 교정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 12월 17일 · 제5차 수도권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
 - 12월 17일 · 제5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보고 1건)
 - 12월 17일 ·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 학부모 인권교실 진행
 - 12월 18일 · 부산교통공사 MOU체결식(부산교통공사)
 - 12월 18일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테마열차 발차식

- 12월 18일 · 대구경북 이주민 인권실태 사례발표회
- 12월 18일 · 제15차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9건)
- 12월 21~22일 · 로스쿨 인권동아리 워크숍 개최
- 12월 21일 · 제17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2건)
- 12월 22일 · 국군장병 위문 방문(공군 제3훈련비행단 위문금 10,000천원 전달)
- 12월 22일 · 광주사무소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광주광역시 의회)
- 12월 22일 · 비주택거주민 인권개선 정책토론회
- 12월 23일 · 제3기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28명)
- 12월 23일 · 고용허가제 모니터링 관련 노동부 업무협의 간담회
- 12월 23일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조례 분야별 현황 연구보고서 발표회(배움터)
- 12월 23일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주년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 12월 23일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정책관계자 간담회 개최(2차)
- 12월 24일 · 제5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3건, 심의 2건)
- 12월 24일 · 12월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레몬트리>
- 12월 28일 · 인권현장 방문(아동 복지시설 경생원, 위원장 등)
- 12월 28일 · 제2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 12월 28일 · 제17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 개최(총 122건)
- 12월 28일 · 제18차 침해구제 제1위원회 개최(총 54건)
- 12월 28일 · 제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 12월 28일 · 윤기원 인권위원 임기만료
- 12월 29일 · 장주영 인권위원 임명
- 12월 29일 · 대구인권사무소 다문화인권교육 사례발표 및 토론회
- 12월 29일 · 2009년도 제1차 인권자료운영자문단 개최(심의 1건)
- 12월 31일 ·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관련 방문간담회
- 12월 31일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간담회
- 12월 31일 · 2010년 업무계획 사무처(안) 확정
- 12월 31일 · 2009년도 종무식



6. 위원회 발간자료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일
연간보고서	1	연간보고서 2008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09. 6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2008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09. 8
결정례집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제3집)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시정분야(제3집)	조사국 차별조사과	2009.12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제3집)	조사국 조사총괄과	2009.12
	6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조사국 차별조사과	2009.11
실태조사보고서	7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8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실태조사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12
	9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10	다문화 가정 모자의 인권 및 적응 실태조사	광주인권사무소	2009. 9
	11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11
	12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광주인권사무소	2009. 7
	13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 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14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15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와 검토(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사무소	2009. 3
	16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2009. 2
	17	임금차별 판단기준 연구	조사국 차별조사과	2009.12
	18	정보인권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0
	19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 모델 구축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 4
	20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광주지역사무소	2009. 3
21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0. 1	
22	Surve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6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일	
교육 자료	23	2008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2009. 3	
	24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	조사국 인권상담센터	2009.12	
	25	2009년 부산울산경남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부산인권사무소	2009. 8	
	26	군의료분야 인권교육 교재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	2009. 3	
	27	수사와 인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09.11	
	28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대구인권사무소	2009.11	
	29	인권교육실천 우수사례집 2009년도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09.12	
	30	인권에세이 수상집 2009년도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09.12	
	31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부교재	대구인권사무소	2009. 8	
	32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교재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	2009. 3	
	33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09.12	
	34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 경영 입문 - 개정판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09.11	
	기타 보고서	35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부산인권사무소	2009.11
		36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조사국 침해조사과	2009.12
37		인권논문 수상집 2009년도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09.12	
38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11	
자료 집	39	09년 사회권지표(노동권분야)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1	
	40	2009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심포지엄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7	
	41	2009 사회권심포지엄 경제위기와 사회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6	
	42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대구인권사무소	2009. 7	
	43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9	
	4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조사국 조사총괄과	2009.10	
	45	고용허가제 시행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7	
	46	구금시설 내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1	
	47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6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일
자료 집	48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 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5
	49	동아시아 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0
	50	무기계약적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2009. 3
	51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부산인권사무소	2009.12
	52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자료집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53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2009. 4
	54	비주택 거주민 인권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55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인권사무소	2009. 5
	56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2009. 3
	57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8
	58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9
	59	이동급식 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60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61	유럽인권협약과 기본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5
	62	유엔글로벌컴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9
	63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2009. 4
	64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9
	65	인권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자 워크숍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2009. 4
	66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네트워크 모색	광주인권사무소	2009. 5
	67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6
	68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12
	69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현황과 과제(한.일 심포지엄)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12
7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2009. 4	
7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 보장방안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11	
72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2009. 4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일
자료 집	73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정책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74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2009. 3
	75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 현주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9
	76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일반단행본	77	제1회 생활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 사례모음	대구인권사무소	2009.12
	78	2008 기사모음집	광주지역사무소	2009. 3
	79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1
	8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9
	81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2009.11
	82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83	유엔 건강권특별보고관 보고서 모음집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84	이스탄불 의정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8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2009. 9
	86	NGO를 위한 건강권 매뉴얼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2
	87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11

7. 보도자료

보도일자	제 목
2009. 01. 05	저임금근로자 보호 위한 최저임금제 지역별 차등, 고령자 감액은 부당
2009. 01. 05	인권위,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 강압수사한 경찰 징계 권고
2009. 01. 06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강요는 인권침해
2009. 01. 07	세관 휴대품 검사 시 개인신상정보 누출은 인권침해
2009. 01. 09	인권위, 국내 주요 기업 인권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09. 01. 09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환영
2009. 01. 16	인권교육 우수 실천사례 시상식 개최
2009. 01. 20	교정시설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및 과일수용은 인권침해
2009. 01. 28	만성B형 간염 수용자에 대한 진료 소홀은 인권침해



보도일자	제 목
2009. 01. 29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 차별
2009. 01. 30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2009. 02. 02	ATM,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2009. 02. 05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설은 인권침해
2009. 02. 06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2009. 02. 09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2009. 02. 10	응급환자 외부병원 이송조치 지연은 인권침해
2009. 02. 17	인권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2009. 02. 18	'사형 집행' 논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2009. 02. 18	중증장애인 부당 결박 등 인권 침해한 시설에 대해 개선 권고
2009. 02. 19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 02. 23	투표소 선정시 장애인의 접근성 등 고려 않은 것은 차별
2009. 02. 24	인권위, 시민참여형 스포츠 인권 정책 추진
2009. 02. 2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
2009. 03. 04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자의적 확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2009. 03. 04	사이버모욕죄 신설, 친고죄로 규정해야
2009. 03. 06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9. 03. 09	피의자 얼굴에 비닐봉지 씌운 것은 인권침해
2009. 03. 10	3.10. 동아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 03. 10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2009. 03. 12	인권위,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09. 03. 12	'체벌 금지, 어떻게 가능한가?' 국제워크숍 개최
2009. 03. 12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철저히 보호돼야
2009. 03. 12	인권위, '북한주민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9. 03.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설명자료
2009. 03. 18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09. 03. 19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는 인권침해
2009. 03. 20	A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퇴 요구 N정책관 경고조치 불수용 공표
2009. 03. 23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강행 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의견표명
2009. 03. 24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발표회 개최
2009. 03. 2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2009. 03. 27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2009. 03. 30	인권위, 오늘 직제 개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접수

보도일자	제 목
2009. 03. 30	인권위, 30일 10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09. 04. 02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2009. 04. 02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검토 토론회 개최
2009. 04. 02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공청회
2009. 04. 06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09. 04. 15	한림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2009. 04. 20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09. 04. 20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2009. 04. 21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실외운동 미실시는 인권침해
2009. 04. 22	인권위, 난민 신청자 강제퇴거 개선 권고
2009. 04. 27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2009. 04. 28	2009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선정
2009. 04. 29	개성공단 근로자 역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2009. 04. 30	인권위, '부산·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2009. 05. 01	경찰청, 전의경 직권조사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2009. 05. 04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로 볼 수 없어
2009. 05. 06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하는 인권
2009. 05. 07	노인 스스로 노인인권을 지키다
2009. 05. 12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은 차별
2009. 05. 21	인권위, 피의자에게 재갈(수건) 물려 사망케 한 해당 경찰관 검찰에 고발
2009. 06. 02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2009. 06. 03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2009. 06. 03	인권위, 이라크 인권정책개발과정 초청연수
2009. 06. 03	인권위, '지적장애인 인권증진 국제워크숍' 개최
2009. 06. 04	인권위 기획·제작 영화 <사선1318> 시사회 개최
2009. 06. 04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2009. 06. 05	부당한 계구사용은 인권침해
2009. 06. 09	인권위,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 06. 11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2009. 06. 12	교과서 안 인권 찾기



보도일자	제 목
2009. 06. 12	외부병원 호송 시 수갑과 포승을 한 수용자의 얼굴 노출은 인권침해
2009. 06. 16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공람일 아닌 실제 사업일로 해야
2009. 06. 17	채용 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는 차별
2009. 06. 17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
2009. 06. 18	난민법 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2009. 06. 22	‘특허권’ 보다 환자 ‘생명권’ 이 우선
2009. 06. 22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2009. 06. 25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09. 06. 26	경제위기하에서 사회권 더욱 보장돼야
2009. 06. 30	안경환 위원장 사퇴의 변
2009. 07. 01	‘허위표현 금지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009. 07. 02	전기통신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관련 Q & A
2009. 07. 02	2009.7.2. 조선일보 사설 중 사실관계에 대하여
2009. 07. 08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임사
2009. 07. 16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제공해야
2009. 07.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2009. 07. 28	인권위, 고용허가제 5주년 토론회 ‘이주노동자 기본권 점검’
2009. 07. 28	인권위,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2009. 07. 30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등 긴급구제권고 결정
2009. 07. 30	인권위, ICC 차기 의장 후보 내지 않기로
2009. 07. 30	김태훈 인권위원 연임
2009. 08. 04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
2009. 08. 05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권고
2009. 08. 05	교과서 학생 모니터단 하계인권캠프
2009. 08. 05	1심 무죄 선고 받은 휴직군인 복직 권고
2009. 08. 10	인권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교육 실시
2009. 08. 17	더 즐거운 스포츠 위한 인권행동 지침 마련
2009. 08. 18	발달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2009. 08. 20	인권위, 「대구 북한이주민센터」 인권교육 실시
2009. 08. 24	인권위, 정신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청소 등 작업시켜온 의료기관 개선조치 권고
2009. 08. 25	경찰이 뒷수갑 채운채 용변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2009. 08. 31	2009.8.27. 동아일보 사설 중 사실관계에 대하여
2009. 09. 02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은 차별

보도일자	제 목
2009. 09. 03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2009. 09. 07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역시 성차별
2009. 09. 08	신종인플루엔자, 인권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다
2009. 09. 08	서울지역 노인을 위한 인권·건강·법률 상담
2009. 09. 15	정신과 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입원은 인권침해
2009. 09. 16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 관련 논평
2009. 09. 16	인권위, 부랑인 복지시설 쇠창살 등 환경 개선 권고
2009. 09. 17	경기북부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개최
2009. 09. 17	군학사장교 모집 시 신원진술서 요구는 인권침해
2009. 09. 21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 해당
2009. 09. 22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2009. 09. 23	휠체어장애인 방패로 폭행한 경찰관들 검찰 수사의뢰
2009. 09. 24	친권의 책임 강조, 아동의 권리보호 조치 필요
2009. 09. 30	독립적 정보보호 기구 설립 필요
2009. 10. 06	김옥신 신임 사무총장 임명
2009. 10. 06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워크숍
2009. 10. 0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은 인권 선진국 진입의 시작
2009. 10. 13	숙살을 노출하며 단속한 출입국 직원, 주의조치 및 직원교육 권고
2009. 10. 15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입장
2009. 10. 15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2009. 10. 19	인권위, '군내 불온서적 차단' 관련 현재 의견제출
2009. 10. 20	경찰, 피의자 동의없는 방송 촬영협조는 인권침해
2009. 10. 21	순찰차 호송 중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2009. 10. 22	응급구조사 없는 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
2009. 10. 23	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2009. 10. 26	인권위, 「영화속 인권 들여다보기」 시민강좌 개설
2009. 10. 27	쌍용차 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 10. 30	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2009. 11. 02	제3회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 개최
2009. 11. 0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대안 담은 보고서 발표
2009. 11. 09	국가인권위원회 선정 '2009년 10대 인권보도'
2009. 11. 10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2009. 11. 11	미등록외국인근로자 과잉 단속 관행 등 개선 권고
2009. 11. 16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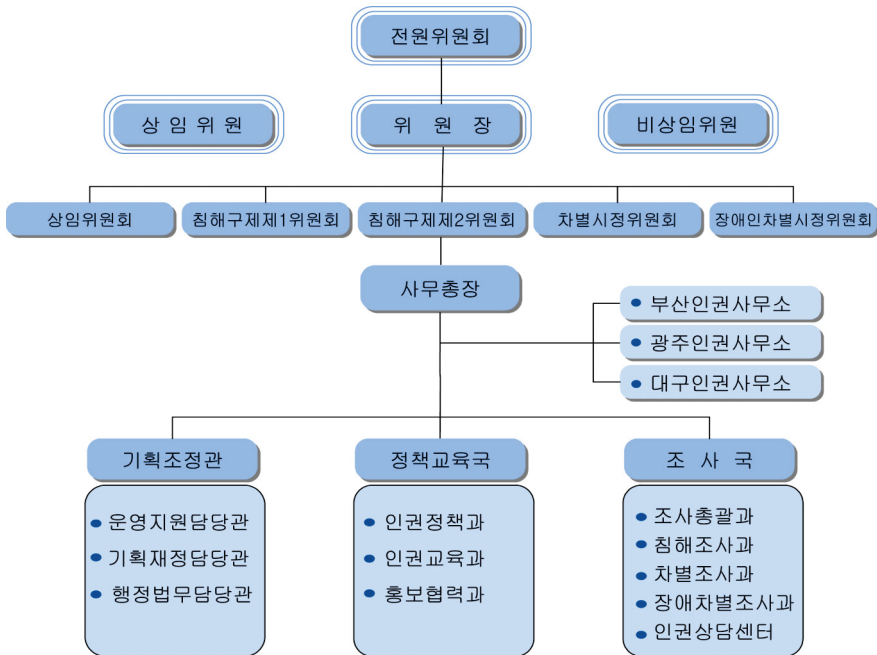
보도일자	제 목
2009. 11. 17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2009. 11. 19	인권위, 경찰 권고 일부불수용 공표
2009. 11. 20	인권위, 태백시민.진폐 장애인 인권상담
2009. 11. 20	출신교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2009. 11. 23	직급·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2009.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8주년 맞아
2009. 11. 24	인권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토론회
2009. 11. 25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2009. 11. 26	인권위, '새터민 여성 탈북·정착과정 인권실태' 토론회
2009. 11. 26	사내 하도급근로자 인권 개선 필요
2009. 11. 30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 발간
2009. 12. 01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여전히 미흡
2009. 12. 01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개최
2009. 12. 01	2009년 인권논문·에세이·인권실천 우수 사례
2009. 12. 0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맞아
2009. 12. 02	군 안보의식설문에 인적사항 기재는 양심의 자유침해
2009. 12. 03	인권위,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2009. 12. 04	'제 7차 인권교육포럼' 학술대회 개최
2009. 12. 0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2009. 12. 08	인권교육실천 시범 연구학교 종합발표회
2009. 12. 08	아동급식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의 자리 마련
2009. 12. 09	공안사범 관련 규정 신설, 인권침해 소지 있어
2009. 12. 10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2009. 12. 11	'제 8차 인권교육포럼' 학술대회 개최
2009. 12. 11	인권위, 서울구치소장 권고 불수용 공표
2009. 12. 14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2009. 12. 16	인권위, 출입국 무성의로 체류시한 위반자 된 외국인 구제 권고
2009. 12. 21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2009. 12. 22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유통 방지 위해 종합적 개인정보 보호 방안마련 시급
2009. 12. 28	인권위, 학생지도과정에서 인권침해한 교사 경고조치 권고
2009. 12. 29	08-09 「인권상담사례집」 발간
2009. 12. 29	장주영 인권위원(비상임위원) 임명
2009. 12. 30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2009. 12. 31	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전면시행
2009. 12. 31	인권위, 검찰 권고 불수용 공표

8. 한눈에 보는 2009년 인권위

가. 조직 및 정원

구 분		2009. 4. 5 이전	2009. 4. 6 이후	증감(%)
조직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11명 (위원장,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7), 사무총장	좌 동	-
	국	5본부 (인권정책, 행정기획, 침해구제, 차별시정, 인권교육본부)	1관 2국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 조사국)	△2 (△40%)
	과	22팀 (운영지원팀 등)	3담당관 8과 (운영지원담당관 등)	△11 (△50%)
	소속기관	4소속기관 (부산, 광주, 대구지역사무소 및 인권자료실)	3소속기관 (부산, 광주, 대구인권사무소)	△1 (△25%)
정 원		208명	164명	△44 (△21%)

나. 위원회 기구도표





다. 2009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계		23,349	23,373	24 (0.1)
인 건 비		11,117	11,307	190 (1.7)
사 업 비		12,232	12,066	△166 (△1.4)
내 역	기본경비(소계)	7,264	7,200	△64 (△0.9)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3,496	3,611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557	452	
	-기타 업무수행 경상경비	3,211	3,137	
	주요사업비(소계)	4,968	4,866	△102 (△2.1)
	-인권제도 선진화	588	703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1,206	1,001	
	-인권교육 활성화	706	544	
	-국제교류 협력	483	334	
	-장애인 인권증진	350	421	
-인권의식향상	468	324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	142	331		
-기타 주요사업	1,025	1,208		

라. 2009년도 결산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비 고
총 계	20	77	74	3	0	
기타 재산수입	10	0.1	0.1	0	0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통장 이자
벌금	0	3	0	3	0	진정사건 조사불응 과태료
가산금	0	0.15	0	0.1	0	과태료미납 가산금
위약금	0	18	18	0	0	연구용역 지체상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0	3	3	0	0	호봉정정 급여정산 등
잡수입	10	53	53	0	0	차량매각대금 및 문화콘텐츠 판매수익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전년이월포함)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23,653	21,008	412	2,233
인 건 비		11,307	9,739	0	1,568
사 업 비		12,346	11,269	412	665
내 역	기본경비(소계)	7,408	6,745	412	251
	-운영비(청사 임차료 등)	5,687	5,332	228	127
	-직무수행경비	491	387	65	39
	-기타 업무수행 경상경비	1,230	1,026	119	85
	주요사업비(소계)	4,938	4,524	0	414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	703	648	0	55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1,001	985	0	16
	-인권교육 활성화	544	509	0	35
	-국제교류 협력	334	267	0	67
	-장애인 인권증진	480	427	0	53
	-인권의식향상	324	291	0	33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	344	318	0	26
-기타 주요사업	1,208	1,079	0	129	

마. 위원회 진정·상담·민원 현황

1) 연도별(2007~2009) 진정·상담·민원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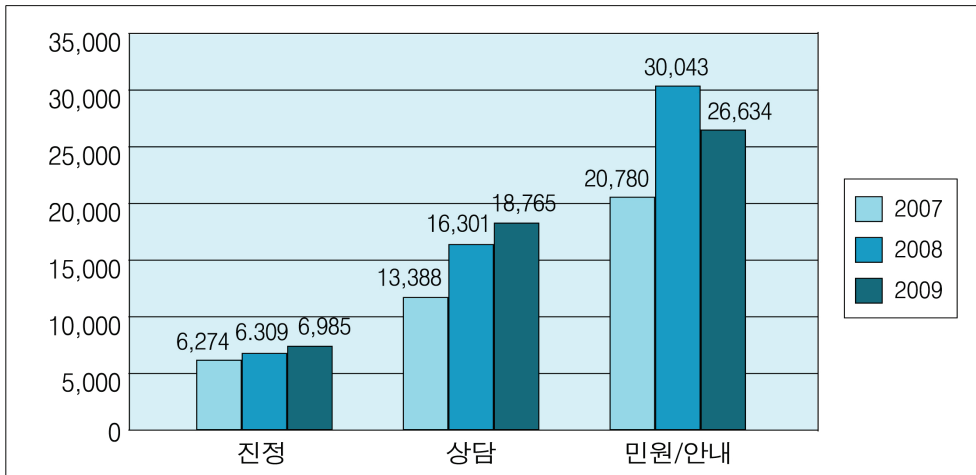
구 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총 누계	42,148	82,654	148,605	273,407
2009	6,985	18,765	26,634	52,384
2008	6,309	16,301	30,043	52,653
2007	6,274	13,388	20,780	40,442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건수 포함).



2) 연도별(2007~2009) 진정·상담·민원 현황 증감 추이

(단위 :건)



바. 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현황

1) 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건)

구분	접 수	종 결	인 용								미 인 용			
			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및 합의권	합의 종결	법률 조정 요청	조정 기조 조사 해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계	42,148	40,331	2,372	71	83	8	1,587	593	10	20	10,402	872	26,376	309
침해	33,276	31,967	1,631	71	80	8	1,059	400	10	3	8,879	800	20,390	267
차별	7,065	6,558	714	0	3	0	506	188	0	17	1,444	62	4,299	39
기타	1,807	1,806	27	0	0	0	22	5	0	0	79	10	1,687	3

※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

2)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연도별(2007~2009)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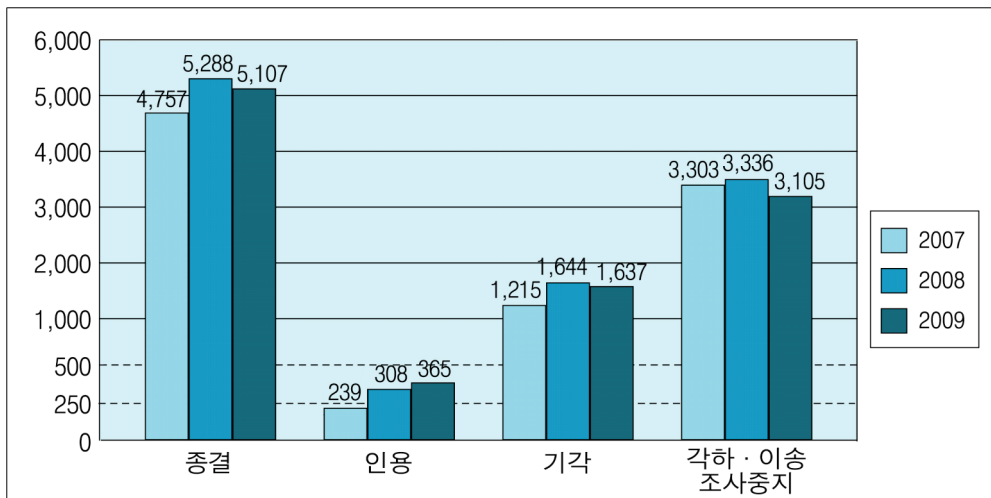
(단위:건)

구분	접 수	종 결	인 용								미 인 용			
			소계	고발 수사의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및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초초 사해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합계	33,276	31,967	1,631	71	80	8	1,059	400	10	3	8,879	800	20,390	267
2009	5,282	5,107	365	5	5	1	235	118	0	1	1,637	78	2,973	54
2008	4,892	5,288	308	12	30	2	213	48	1	2	1,644	99	3,177	60
2007	5,067	4,757	239	13	16	0	147	61	2	0	1,215	116	3,152	35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

나) 인권침해 진정사건 연도별(2007~2009) 처리 추이

(단위:건)





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차별행위 진정사건 연도별(2007~2009)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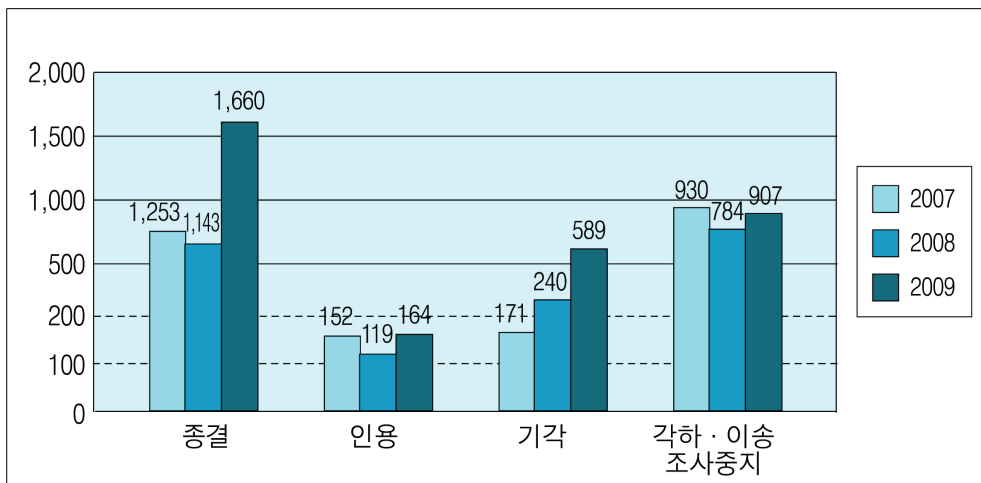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미 인 용			
			소 계	권 고	징계 권고	합의 중결	조 정	기 각	각 하	이 송	조 중 사 지
합계	7,065	6,558	714	506	3	188	17	1,444	4,299	62	39
2009	1,685	1,660	164	78	0	85	1	589	880	9	18
2008	1,380	1,143	119	88	2	27	2	240	765	14	5
2007	1,159	1,253	152	111	1	37	3	171	901	22	7

※ 총 누계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임

나) 차별행위 진정사건 연도별(2007~2009) 처리 추이

(단위 : 건)



사.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주요 권고·의견표명 현황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법률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 도입하더라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하여야 함	2. 5	국회의장,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검토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 사이버모욕죄도 국회 문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동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함	2. 5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비정규직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5. 21	국회의장	검토중
법원의견제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할 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공간의 특성, 그리고 본 규정이 초래하는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인권침해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6. 8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기타
법원의견제출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	7. 29	헌법재판소	기타
사내 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사내 하도급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사내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야 함	9. 3	노동부	검토중



권고(의견표명) 제목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 여부
「주재관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령안 제3조의2에서 주재관 업무 수행기간 3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연령의 공무원의 경우에도 주재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정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동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 21	외교통상부	수용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권고	동 운용기준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새롭게 마련되어야 함	10.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령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1. 5	행정안전부	일부 수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은 공안사범에 대한 정의규정 및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 관련자료를 별도로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하는바 그 표현이 막연하고 중요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과잉 제한하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음	11. 26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검토중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지침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12. 3	교육과학기술장관	검토중

아. 인권침해 관련 주요 권고 현황

1) 검·경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경찰의 가혹 행위 등	지구대 내에서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일선 지구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취자의 자해예방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25	일부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00지구대 피의자 뇌사사건	1. 검찰총장에게 00경찰서 00지구대 경위 김00와 경사 최00을 형법 제 268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함 2.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00지방경찰청장에게 가해자들의 소속 기관장인 00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를, 00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0000과장 및 해당 지구대장에게는 각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5. 14	1. 수용 2. 일부수용 3. 일부수용
행정착오 등에 의한 인권침해	벌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착오로 인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었고 형사범으로 12일 동안 수감된 것에 대해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00지방검찰청00지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00지방법원장 및 00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6. 5	일부수용
선임 의경의 구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의경 운용부서와 당직 근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복무 부적응 등의 애로사항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피진정 경찰관 주의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전·의경순경공상심의위원회 개최 권고	6. 5	수용
밤샘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일간 심야에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어린 자녀(만 1,3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진권을 침해한 것임. 경찰청장에게 원칙적으로 심야 감찰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00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내용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6. 23	수용
00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00지방경찰청장에게, 2009. 8. 5. (주)00자동차 00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	8. 5	검토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경찰서 유치장 산모, 임산부 보호 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 유치장 입감자들이 유치장 내 CCTV 설치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안내 및 고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수사책임자인 피진정인 박00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0.26	수용
색소 물대포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경찰청장에게 색소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용기준, 절차, 교육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12.28	검토중

2) 지자체, 학교 등 기타 기관 등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이중국적자 외국인 학교 복학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외국인학교에 휴학 중이던 피해자가 복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8. 24	수용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사망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경고조치하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서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감독기관인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각서 사용 등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10.12	수용
과잉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1.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미등록 외국인인 진정인을 단속하는 과정에 긴급보호서를 호송 차량 안에서 제시한 행위, 필요이상의 과잉진압을 한 행위, 주거를 무단 진입하여 단속한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됨으로 이를 시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미등록 외국인 단속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10.12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 신상 노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해당 학교장)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	10.26	수용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원고인 진정인에게 “버릇없다” 라는 발언을 한 OO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11.23	수용
국적변경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중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OO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2.1	수용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OO고등학교교장에게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2.1	수용
전학동의서 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OO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교장에게, 피해자의 전학동의서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줄 것을 권고	12.28	수용
학생 두발 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OO중학교교장에게, 현재 두발 단속 시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강제이발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권고	12.28	검토중



자. 차별행위 주요 권고 현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00금고 직원의 성희롱	직원단합대회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자고있는 방에 들어가 잠든 진정인을 끌어안으려고 시도한 것, 연애감정을 표현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것, 진정인의 다이어리를 몰래 훑쳐보고 진정인과 남자친구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묻는 것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00금고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00금고 연합회 회장에게 그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권고	2. 23	수용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 및 나이에 의한 차별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및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향후 행정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및 나이제한을 두지말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향후 시행되는 각급 기관의 행정인턴 모집과정에서 학력제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 및 운영가이드를 수정할 것을 권고	3. 9	불수용
경찰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에 의한 차별	30세를 넘긴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 및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요구되는 우수한 자질과 강인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3. 11	불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8. 7	수용
남성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성만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부부 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남성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발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관행 개선 권고	8. 17	검토 중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광장 맞은편 공설시장과 ○○거리 사이의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9. 18	수용
국가정보원의 직원 채용 시 나이 차별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인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님.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한 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9. 30	검토중
외국인을 이유로 한 인터넷 전화가입 차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금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진정인에게 요금납부시 외국인에 대하여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거부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	12. 21	검토중
색각이상자에 대한 경찰·해양경찰 채용차별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분야와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 별표5의 신체조건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11. 9	검토중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학교장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하는 것임. ○○학교장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7. 6	수용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가족마일리지 합산대상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마일리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 친조부모, 친손자녀와 달리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8. 17	수용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교칙개정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교칙개정활동, 촛불집회 참여 등의 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및 아동 권리협약,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폄훼이 불량하다거나 타의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12. 14	검토중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거부	단순히 B형간염 항원 양성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임. 피진정인에게 채용검진비 등 실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9. 16	수용

차. 2009년 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사이버 교육	오프라인 교육		계
		방문프로그램	교육과정 등	
횟수	60	109	131	300
인원	13,573	3,043	7,056	23,672

1) 연도별 사이버 인권교육현황(2007~2009년)

연도	합계		공직자		교사		일반시민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7년	37	9,435	9	4,895	2	1,430	9	783	17	2,327
2008년	31	12,394	7	4,199	13	7,011	7	884	4	300
2009년	60	13,573	27	5,592	18	7,338	12	534	3	109
계	128	35,402	43	14,686	33	15,779	28	2,201	24	2,736

2) 연도별 방문프로그램 현황(2007~2009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횟수	46	66	109	
인원	1,673	1,972	3,043	

3) 인권 교육과정 현황(2009년)

구분	강사양성 과정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워크숍 등	계
횟수	7	109	15	131
인원	217	6,057	782	7,056

국가인권위원회 2009 연간보고서

-
-
- 인 쇄 일 : 2010년 6월
 - 발 행 일 : 2010년 6월
 - 발 행 인 : 현 병 철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무교동길 41)
우 100-842
전화 / (02) 2125-9700 / 대표전화 1331
팩스 / (02) 2125-9811~2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인 쇄 처 : 서린기획 (02) 2263-2704
-
-

비매품